



글렌데일

통합

교육구

223 North Jackson Street

Glendale, California 91206

818-241-3111

학부모/후견인

및

학생을 위한

정보

2020-2021



## GLENDALE UNIFIED SCHOOL DISTRICT

“Preparing our students for *their* future”

223 North Jackson St., Glendale, California 91206-4380  
Telephone: 818-241-3111, Ext. 1215 • Fax: 818-548-9041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 2020-2021 학사년

학부모 및 후견인께:

새 학사년도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본 안내서는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서 귀하와 자녀의 권리 및 책임과 관련된 글렌데일 통합교육구의 방침, 규정 및 절차에 관한 중요한 정보들로 가득합니다. 시간을 내어 본 안내서에 포함된 정보를 검토하고 동봉된 위임 양식 모두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귀 자녀의 학교는 모든 가정이 본 안내서를 받고 검토하였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가정이 서명하고 제출해야 할 4가지 양식에 있습니다.

- 양식 1 “학부모 통고 요건에 대한 확인”
- 양식 2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 연례 통고”
- 양식 3 “양육권에 관한 법 통고”
- 양식 4 “전자정보 서비스(EIS) 사용자/학부모 또는 후견인 책임 약정”
- 양식 5 “안전한 총 보관에 관한 학부모/후견인의 법적 의무에 대한 정보”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모든 학급에 유자격 교사가 배치되도록 전념하고 있습니다. 교육구는 모든 학년 및 과목에서 최고의 교사를 모집, 채용 및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연방 정부 타이틀 1 기금 수령 기관으로서 교육구는 연방 정부의 **모든 학생 성공 법안**에 정의된 대로 **모든** 학교의 **모든** 교사들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대체 경로에서의 모든 요건들을 포함하여 해당 주 정부 자격증 및 면허 요건들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할 것이 기대됩니다.

추가로, 타이틀 1 학교 출석 학생들의 학부모는 자녀 학급 교사의 전문 자격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고 받아볼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학급 수업에 도움을 제공하는 보조 교사의 전문 자격에 관한 정보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가 타이틀 1 학교에 출석하고 자녀 교사의 자격 정보를 원하는 경우, 자녀의 학교 교장에게 연락하십시오.

자녀 교육에 대한 귀하의 관심 및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함께 모든 학생이 대학, 직업 및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Vivian Ekchian, 교육학 박사

교육감

## 목차

---

양식	페이지
양식 1 – 학부모 통고 요건 확인	6
양식 2 –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 연례 통고 수령 확인	6
양식 3 – 양육권에 관한 법 통고	7
양식 4 – 전자 정보 서비스(EIS) 사용자/학부모 또는 후견인 책임 약정	8
양식 5 – 안전한 총 보관에 관한 학부모/후견인의 법적 의무에 대한 정보	10
양식 6 – 24 시간 약 복용 스케줄	11
양식 7 – 수업 면제 요청	11
양식 8 – 학생의 이름, 사진, 비디오 영상물을 웹 페이지 및 다양한 출판물에서의 공공 사용 허가	12
양식 9 – 고등학교 11/12학년생 정보를 군대, 고용주, 대학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양식	13
양식 10- 부모가 현역 군인 또는 풀타임 주 방위군으로 있는 학생	14
학부모 및 학생의 권리 및 책임	15
차별 금지에 관한 진술	15
가주 청소년 보건법	16
가주 보건 서비스	16
뇌진탕 정보지	23
학생 보험 플랜	24
고등 교육 운동 프로그램을 탐색하는 시합 운동선수	24
학생의 체육 면제(고등학교만 해당)	24
거주지 학교 선택	24
학부모 및 가족 참여	26

---

직업 상담 및 과정 선정	27
영어 학습자 (EL) 정보	27
이주자, 새로 도착한 이민자 및 군인 가족 학생	28

	<b>페이지</b>
평등 교육	28
학생 비용/기부/기금 모금활동	28
영양 서비스	29
학교 출석	30
보안 카메라	31
학생 품행	31
전자 신호 기기	37
폭력 범죄 피해자	37
정신 건강 서비스	37
자살 방지 정책	37
긍정적 행동 중재 및 지원(PBIS)	37
양육권 법에 관한 통고	38
흡연 예방 교육(TUPE)	38
캠퍼스 외부에서의 점심 식사	38
대안 학교	38
성 희롱	39
노숙 학생 교육	43
위탁 청소년 교육	45
고등학교 졸업장 소급: 지역을 떠난 학생 및 추방 학생	45
연방 학생 보조	45
칼 그랜트 프로그램	45
학교 모임 및 면담에서의 학부모 참여	46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 방침	46
예의 방침	57
배움을 위한 안전한 장소 법	57

학교 책임 보고서 카드(SARC)	57
학생의 사진촬영 및 비디오 녹화	58
건강한 학교	
인터넷 접속/전자 정보 서비스 및 수용 가능한 사용 방침	59

	<b>페이지</b>
인터넷 안전 정보	63
가주 교육법 학부모 통고 요건	65
학교와 관련된 긴급상황 및 학교 안전	70

## 양식 1 – 학부모 통고 요건에 대한 확인

2020-2021

양식 1은 글렌데일 통합교육구에 등록된 모든 학생들의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하고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에 의해 제출해야 합니다. (1) 본 양식을 학생의 학교 사무실에 제출한다. 또는 (2) 온라인에 학부모 연결(ParentConnection)에서 연례 학생 정보 업데이트 섹션을 작성한다.

학생 이름(정자로 기재)

학번

학교

학년

본 양식을 (30)일 이내에 서명하여 귀 자녀의 학교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는 거주 법(교육법 §48982)에 규정된 대로 귀하께서 학부모 및 학생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해 통고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서명은 어떤 특정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귀하께서 법이 요구하는 대로 어떤 규정에 대해 통고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부모 또는 후견인의 서명

날짜

모든 학생은 본 통고서의 수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신의 부모 또는 후견인에 의해 서명된 본 양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양식 2 –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에 대한 연례 통고 수령 확인

2020-2021

양식 2는 글렌데일 통합교육구에 등록된 모든 학생들의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하고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에 의해 제출해야 합니다. (1) 본 양식을 학생의 학교 사무실에 제출한다. 또는 (2) 온라인에 학부모 연결(ParentConnection)에서 연례 학생 정보 업데이트 섹션을 작성한다.

학생 이름(정자로 기재)

학번

학교

학년

본 양식을 30 일 이내에 서명하며 자녀의 학교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는 귀하께서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윌리엄스에 대한 연례 통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서명은 어떤 특정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귀하께서 법이 요구하는 대로 어떤 규정에 대해 통고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부모 또는 후견인 서명

날짜

모든 학생은 본 통고서의 수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신의 부모 또는 후견인에 의해 서명된 본 양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양식 3 – 양육권에 관한 법 통고

2020-2021

**양식 3은 글렌데일 통합교육구에 등록된 모든 학생들의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하고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에 의해 제출해야 합니다. (1) 본 양식을 학생의 학교 사무실에 제출한다. 또는 (2) 온라인에 학부모 연결(ParentConnection)에서 연례 학생 정보 업데이트 섹션을 작성한다.**

학생 이름(정자로 기재)

학번

학교

학년

캘리포니아 법(가족법 3010 항) 하에, 각 부/모는 자신의 자녀 양육권에 대해 동등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가족법 3010 항을 준수하는 글렌데일 통합교육구의 방침에 따르면 어느 부/모라도 적절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학교에서 자녀를 데려갈 수 있으며 그 외에 자녀의 건강, 교육 및 안녕에 관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법 3025 항은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와 관계된 학교 기록에 대한 접근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부/모 중 누구라도 학교가 소지한 의료 기록을 포함하여 자녀의 학교 기록을 보는 것을 허용할 것입니다.

법원이 아동 방문 또는 양육 및/또는 아동에 관한 정보 접근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한 경우, 각 자녀의 학교에 판독이 가능한 도장이 찍힌 법정 명령서, 판사가 서명한 사본을 즉시 제공하는 것은 양 부/모의 책임입니다. 법원 명령서의 사본은 명령을 내린 법원 사무실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서명된 법정 명령서의 확인없이 한쪽 부/모의 구두 또는 서면 주장은 학교가 다른 쪽 부/모에게 아동 및/또는 아동의 기록에 대한 접근을 거절할 이유로 충분치 않습니다.

글렌데일 통합교육구의 학교들은 가장 최근에 제공된 양육권 법정 명령을 따를 것이나 명령의 부재 시,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부/모에게 동등한 양육권을 부여합니다.

자녀 양육권 분쟁에 학교 직원을 관련시키지 말도록 학부모들께 요청드립니다. 학교가 양육권에 관련된 최신 정보를 갖고 있는지 확실치 않은 부/모는 학교가 판독이 가능한 가장 최근 법정 명령서의 사본을 제공받았는지의 확인을 위해 자녀의 학교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본인은 위의 통보를 읽고 이해했습니다.**

학부모 / 후견인의 이름

서명

날짜

**모든 학생은 본 통고서의 수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신의 부모 또는 후견인에 의해 서명된 본 양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양식 4 - 전자 정보 서비스(EIS)

### 수용 가능한 사용 동의 및 책임(학생)으로부터 교육구 면제

2020-2021

**양식 4는 글렌데일 통합교육구에 등록된 모든 학생들의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하고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에 의해 제출해야 합니다. (1) 본 양식을 학생의 학교 사무실에 제출한다. 또는 (2) 온라인에 학부모 연결(ParentConnection)에서 연례 학생 정보 업데이트 섹션을 작성한다.**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학생들이 교육 목적으로 필요에 따라 교육구가 소유하거나 제공한 테크날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교육구 테크날러지의 사용은 교육구의 재량에 따라 허용되는 특권이며 이는 적용 가능한 교육위원회 방침, 행정 규정 및 본 수용 가능한 사용 동의서에 명시된 조건 및 규제가 적용된다. 교육구는 어떤 이유로든 사전 통보 없이 언제든지 접속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교육구는 모든 학생들이 잠재적인 문제 및 책임을 피하기 위해 책임감 있게 테크날러지를 사용하기를 기대한다. 교육구는 학생이 시스템을 통해 접속할 수도 있는 사이트, 자료 및/또는 정보에 대해 합리적인 규제를 설치할 수 있다.

교육구 테크날러지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은 각 학생 및 그의 부모/후견인은 이 동의서를 읽고 이해했다는 표시로 본 수용 가능한 사용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정의: 교육구 테크날러지는 컴퓨터, 서버 및 무선 컴퓨터 네트워킹 테크날러지(wi-fi)를 포함하는 교육구의 컴퓨터 네트워크, 인터넷, 이메일(9-12학년만 해당), USB 드라이브, 무선 접속 포인트(라우터-네트워크에서 데이터의 전달을 촉진하는 중계 장치), 테블릿 컴퓨터, 스마트폰 및 스마트 기기, 전화, 휴대 전화, 개인 디지털 보조기, 페이지, MP3 플레이어, 착용형 테크날러지, 비상 무선을 포함하는 모든 무선 통신 장치 및/또는 학교의 내부 또는 외부 또는 교육구 소유 또는 개인 소유 장비나 장치를 통한 접속을 막론하는 미래의 기술 혁신을 포함하나 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의 의무 및 책임: 학생은 안전하고 책임있게 그리고 교육적 목적으로만 교육구 테크날러지를 사용할 것이 기대된다. 교육구 테크날러지 사용자 이름이 발부된 학생은 항상 적절한 사용에 대해 책임이 있다. 학생은 자신의 배당된 온라인 서비스 계정 정보, 비밀번호 또는 신원 확인 및 허가의 취지로 사용된 기타 정보를 공유해서는 안되며 자신에게 배당된 계정 하에서만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학생은 교육구 테크날러지의 사용을 포함하나 이에만 국한되지 않는 부적절한 목적을 위해 교육구 테크날러지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1. 차별, 비방, 명예 훼손, 음란, 성적으로 노골적인 또는 방해적인 자료에 접속, 게시, 전시 또는 기타 사용
2. 타 학생들, 교직원 또는 기타 개개인(사이버 폭력) 약자 괴롭히기, 희롱, 위협 또는 협박
3. 해당 학생을 협박, 위협, 희롱 또는 조롱하려는 의도로 다른 학생, 교직원 또는 다른 사람의 개인 신원 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 사회 보장 번호 또는 기타 개인적 정보와 같은 사항들)의 공개, 사용 또는 유포
4. 저작권, 면허, 상표권, 특허권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에 대한 침해
5. 교육구 테크날러지 또는 기타 교육구 운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훼손(교육구 장비 파괴하기, 교육구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설치하기, 교사 또는 기타 교육구 인사의 허가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추가 또는 삭제하기, 공유 컴퓨터의 설정 변경과 같은 일들)
6. 승인되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설치
7. 교육구 또는 다른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한 시스템 "해킹"
8. 비 윤리적이거나 법규 또는 교육위원회 방침, 행정 규정 또는 교육구 관행을 위반하는 행위에 가담 또는 홍보

개인 정보 보호: 교육구 테크날러지의 사용은 교육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학생은 교육구 테크날러지의 사용에 있어 어떠한 개인 정보 보호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교육구는 인터넷 또는 소셜 미디어에 대한 접속, 교육구 테크날리지로 전송하고 받은 의사소통 또는 기타 사용을 포함하나 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교육구 테크날리지의 모든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기록할 권리를 보유한다. 이러한 모니터링/기록은 기록 보존과 배포 및/또는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또는 금지된 활동의 조사를 포함하나 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법적 목적을 위해 사전 통고없이 언제든지 발생 할 수 있다.

학생들은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교육구 테크날리지의 사용(웹 서취 및 이메일)을 지우거나 삭제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교육구 테크날리지에 생성 또는 사용된 모든 비밀번호들은 교육구의 단독 재산이다. 교육구 테크날리지에 학생의 비밀번호 생성 또는 사용은 개인 정보 보호의 기대치를 합리적으로 창출하지 않는다.

개인이 소유한 기기: 학생이 교육구 테크날리지 접속에 개인 소유 기기를 사용할 경우, 그는 적용 가능한 모든 교육 위원회 방침, 행정 규정 및 본 수용가능한 사용 동의서에 의한 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개인 소유기기의 사용은 합법적인 소환장 또는 공공 기록 공개 요청에 따라 기기의 내용과 기기에서 발신 또는 수신한 모든 통신 내용을 공개 할 수 있다.

보고(신고)하기: 학생이 어떤 보안 문제(로그인 또는 계정 정보의 기밀 유지 내용과 같은) 또는 교육구 테크날리지의 오용을 알게 되는 경우, 즉시 교사 또는 다른 교육구 직원에게 이러한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위반의 결과: 법규, 교육위원회 방침 또는 본 약정의 위반은 학생의 교육구 테크날리지 접속의 철회 및/또는 정학 또는 퇴학까지 포함하는 징계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추가로, 법규, 교육위원회 방침 또는 본 약정의 위반은 적절한 경우 법 집행 기관에 신고될 수 있다.

학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의 승인(인정): 본 학생의 부모/후견인으로서, 본인은 본인의 학생이 수용 가능한 사용 약정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조건)을 읽고 이해하며 동의한다. 본인은 본 약정서에 서명함으로써 본인의 학생이 교육구 테크날리지 사용 및/또는 학교의 컴퓨터 네트워크 및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본인은 교육구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공격적이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모든 자료들에 대한 접속을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한다. 본인은 본인 학생의 교육구 테크날리지 사용 또는 교육구에 의해 사용되는 어떤 테크날리지 보호 조치의 실패로 초래될 수 있는 모든 청구, 손해 및 비용에 대해 학교, 교육구 및 교육구 인사에 대하여 책임, 손해 배상으로부터 면제하고 보호(손해가 생겨도 책임을 면제)하는데 동의한다. 더 나아가, 본인은 이러한 접속이 학교 환경에서가 아닌 경우, 본인 학생의 계정 접속 사용 감독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받아들인다.

---

학생 이름 ( <b>인쇄체로 기재하시오</b> )	ID 번호	학교	학년
학부모 또는 후견인의 서명			날짜

---

**4-12 학년의 모든 학생은 학사년 시작 시, 본 통고서의 수령 확인을 위해 서명하도록 자신의 사본을 받게 될 것이다.**

## 양식 5 – 총기 안전 보관에 관한 학부모/후견인 법적 의무에 관한 정보

2020-2021

**양식 5는 글렌데일 통합교육구에 등록된 모든 학생들의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하고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에 의해 제출해야 합니다. (1) 본 양식을 학생의 학교 사무실에 제출한다. 또는 (2) 온라인에 학부모 연결(ParentConnection)에서 연례 학생 정보 업데이트 섹션을 작성한다.**

안전한 교육 환경을 글렌데일 통합 교육구의 학생 및 직원에게 제공하는 것은 계속 우리의 최우선 순위의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변 지역사회 및 전국에서 일어나는 본인 자신을 향한 위해 또는 총기 폭력의 사건들을 알고 있습니다. 매년 캘리포니아에서는 18 세 미만의 평균 27 명의 아동들이 총으로 자살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총기 관련 사건의 대부분에서 미성년자는 합법적으로 구입한 총을 자신의 거주지 또는 친척의 거주지에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lawcenter.giffords.org).

상원 의원, Anthony Portantino 씨에 의해 제정된 상원 법안 172 (2019 년 10 월 12 일)은 총기가 안전하게 또는 총기 안전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올바르게 보관하고 잠금 장치 없이 미성년자가 있는 집에 장전 또는 장전되지 않은 총기를 보관하는 것을 캘리포니아에서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California Penal Code Section 25100(A))

가정에서 안전하지 않은 총기는 본인 자신에게 위해가 되거나 총기 폭력을 넘어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위험을 초래합니다. 매년, 18 세 미만의 어린이 거의 350 명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총을 발사합니다. 이는 대략 하루에 한번 의도하지 않은 총격입니다 . (everytownresearch.org).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87%의 아동이 부모의 총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알고 있으며 60%는 이를 만졌다고 합니다(Baxley and Miller, 2006). 연구에 따르면 안전한 총기 보관 관행은 어린이와 십대들 사이에 자해 및 의도하지 않은 총기 부상 위험의 85%까지의 감소와 관련있음을 보여줍니다(everytownresearch.org). 총기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은 집에 사는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교육구 및 지역사회의 어린이들을 보호합니다.

어린이 안전 예방 조치는 귀하가 자녀가 없거나 또는 성인이 된 경우 일지라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조카, 조카 딸 또는 이웃의 자녀가 방문할 수도 있으니 항상 총기 안전과 총기의 안전한 보관을 실행하여 주십시오.

어린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가정에서 총기의 부적절한 보관으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선 모든 총기를 언로드(탄약없이) 총기 안전 장치와 함께 잠금 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합니다. 탄약은 총과 다른 장소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귀하는 [BeSMARTforKids.org/resources](https://www.be-smartforkids.org/resources). 에서 안전한 보관 자료(보고서), 총기 및 아동 총기 자살에 대한 사실 및 자원에 관해 자녀와 대화하기 위한 안내서를 포함하여 더 많은 정보를 배우고 유용한 자료들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학생 이름(정자로 기재)

ID 번호

학교

학년

---

학부모 또는 후견인 서명

날짜

## 양식 6 – 24 시간 약 복용 스케줄

2020-2021

양식 6은 가정에서 약을 복용하는 아동의 모든 부모에 의해 작성되어 출석 학교의 보건실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학생 이름( 정자로 기재)

ID 번호

학교

학년

약명

복용량

복용 목적

복용 시간

1. \_\_\_\_\_

\_\_\_\_\_

\_\_\_\_\_

\_\_\_\_\_

2. \_\_\_\_\_

\_\_\_\_\_

\_\_\_\_\_

\_\_\_\_\_

처방 의사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본인은 본인이 아는 한 상기 정보가 정확함을 보증합니다. 본인은 학교 간호사가 상기 약물의 가능한 효능, 부작용, 복용 누락 또는 과다 복용의 징후와 증세에 관하여 아이의 주치의와 의사 소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학부모 또는 후견인의 서명

날짜

주소

전화번호

학교에서 약을 복용해야 할 경우, 귀하의 의사는 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HS25, “**학교시간 동안의 약복용 요청(Request for Medication to be Taken During School Hours)**” 이라는 양식을 작성하고 서명해야 하며 약, 복용량 또는 복용 시간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새로운 요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양식 7 – 수업 면제 요청

2020-2021

양식 7은 인간의 생식을 다루는 학습 단원에서 자녀가 수업을 면제 받기 원하는 학부모에 의해서만 작성되어 학교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은 본인의 아이가

학생 이름 ( 정자로 기재)

ID 번호

학교

학년

주제(topics): \_\_\_\_\_ 를(을) 다루는

교과과정(courses): \_\_\_\_\_ 에서 수업 면제되기를 요청합니다.

본인은 상기 수업에서 면제된 학생들은 그 시간 동안에 도서관 또는 자습실로 가야 됨을 이해합니다.

학부모 또는 후견인의 서명

날짜

# 양식 8 – 웹페이지 및 다양한 출판물에 학생 이름, 사진, 영상의 공공 사용에 대한 허가서

비디오

2020-2021

**본 허가서의 세트는 학생이 글렌데일 통합교육구에 다니는 동안 유효합니다. 양식 8 허가는 학부모 연결에 로그인하거나 학생의 학교에 연락함으로써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학생 이름(정자로 기재)

ID 번호

학교

학년

이 양식은 교육구/학교, 뉴스 매체 또는 기타 교육구가 승인한 그룹에 의해 촬영된 회보, 학교/교육구 웹페이지 및 소셜 미디어 또는 다양한 출판물(예, 학교 신문)에 학생의 이름, 사진 및/또는 비디오 영상 사용의 허가 또는 배제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간혹 교육 프로그램, 행사 및 활동들에 관해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알리기 위해 언론 매체에 의해 사진 및/또는 비디오로 촬영됩니다. 학생들은 또한 학업 성취 인정 또는 표창, 학교 또는 교육구 학습 프로그램을 강조하거나 행사 홍보를 목적으로 학교 또는 교육구 웹사이트, 회보, 소셜 미디어, 마케팅 자료 또는 공공의 발표를 위해 사진 및/또는 비디오가 촬영될 수도 있습니다.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학생과 학생 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아래의 상자 중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귀하의 허가 수준을 표시해 주십시오.

예, 모든 것에 대해 완전 허가합니다: 본인은 상기 언급된 대로 모든 출판물들에 본인 학생의 전체 이름, 사진 및/또는 비디오 영상이 사용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예, 학교 출판물들에만 한해서 허가합니다: 본인은 일반 대중이 접근 가능하지 않는 학교 출판물(앨범, 학교 신문)에만 한하여 본인 학생의 전체 이름, 사진 및/또는 비디오 영상이 사용되는 것을 허락합니다(즉, 앨범, 학급 발표 또는 인쇄된 학교 회보)

아니오, 학생의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마시오: 본인은 앨범 및 학교 신문을 포함하여 모든 출판물 또는 대중 매체에 본인 학생의 이름이 사용되거나 사진 또는 비디오로 촬영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학부모 또는 후견인 서명

날짜

주의: 본 양식을 작성하지 않으면 학교/교육구에 모든 출판물 및 매체에 귀 자녀의 이름, 사진 및 비디오 영상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양식 9 – 군대, 고용주, 칼리지/대학에 11 및 12 학년생 정보제공 금지 양식 2020-2021

모든 학생 성공 법안(ESSA)은 교육구가 군 모병관, 장래의 고용주 및 대학 신입생 모집 인사들로부터 요청이 있을때 **고등학교 11 및 12 학년생** 모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녀가 고등학교 **11 및/또는 12 학년생이며** 글렌데일 통합교육구가 귀하의 11 및/또는 12 학년생에 대한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모든 정보를 기재하고 서명하여 **본 양식을 자녀 학교의 교장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18 세 이상인 경우엔 부모 또는 후견인이 아닌 학생 자신이 본 양식에 서명해야 합니다. 10 학년 또는 그 이하의 학년에 속한 학생의 정보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아래 양식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청된 모든 정보는 **2020년 10월 9일, 금요일**에 군 모병관에게 제공되므로 아래 양식을 **2020년 10월 2일, 금요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문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학생지원 서비스부, 818-241-3111, 내선 1285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고등학교 11 및 12 학년생 정보 보유 요청

요청된 **모든** 정보를 아래에 정자로 명료히 기재하십시오:

\_\_\_\_\_  
학생 이름( **정자로 기재**)

\_\_\_\_\_  
ID 번호

\_\_\_\_\_  
학교

\_\_\_\_\_  
학년

본인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 본인 아이의 이름,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다음 중 어느 곳에도 제공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또는 모두에 체크**):

미국 군대

고용주

칼리지 및/또는 대학

학부모 서명: \_\_\_\_\_

\*학생 서명: \_\_\_\_\_

(18 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 양식 10 - 부모가 현역 군인 또는 풀타임 주 방위군으로 있는 학생

2020-2021

양식 10은 부모가 군인인 경우에만 작성해야 하며 학교 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Please print) Name of Student ID Number School Grade

모든 학생 성공 법(ESSA)은 현역으로 군대(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또는 해안 경비대) 또는 풀 타임 주 방위군으로 복무 중인 학부모 또는 후견인의 학생에 대한 책임있는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귀하께서 군인인 경우, 하단의 한 곳에 체크하시고 입대일과 예정된 제대일(알고 있는 경우)을 밝혀주십시오.

- 육군
- 해군
- 공군
- 해병대
- 해안 경비대
- 주 방위군

입대일:

제대일(알고 있는 경우)

학부모 또는 후견인 서명

날짜

#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 및 책임

2020-2021

주 및 연방법은 교육구들이 매년 학생, 학부모, 후견인 및 성인 학생들에게 그들의 특정 권리와 책임에 대해 통고할 것을 요구한다. 가주 교육법 제 48982 조는 학부모들이 이 조항들에 대해 통고 받았음을 서면으로 알려 줄 것을 요구하며, 학부모의 서명은 자녀의 어떤 특정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법에 따라 통고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모든 학부모들은 양식 1 및 2 및 기타 모든 양식(본 안내서 시작 부분에 있음)에 서명한 후, 자녀를 통해 학생이 등교하는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자녀의 학교에 연락하도록 한다

## 차별 금지에 관한 진술

차별 금지에 관한 진술(1964 공민권 법 타이틀 VI, 1972 교육 수정법 타이틀 IX 및 1973 재할법 504조): 교육위원회는 교육구의 모든 학교 및 학교 활동에서 학생의 실제 또는 인식하고 있는 인종, 피부색, 혈통, 출신국, 국적, 민족성, 인종 그룹 특성, 연령, 종교, 혼인 여부 또는 부모의 지위, 심·신 장애, 성, 성적 지향, 성별, 성별 인식 또는 성별 표현, 또는 이러한 특성 중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실제로 표현하거나 갖고 있다고 인식되는 개인이나 그룹과의 교류에 근거하여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차별적인 괴롭힘, 위협 및 약자 괴롭힘을 포함하여 불법적인 차별을 금지한다. 교육구는 영어 소통 능력 부족이 교육구 프로그램 등록 및 참여에 장벽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다. 본 차별 금지 방침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불만은 Dr. Lena Richter(하단의 연락 정보 참조)에게 연락한다. 교육구의 일관적 불만제기 방침의 복사본은 (818) 241-3111 내선 1457에 연락함으로 가용하며, 교육구의 타이틀 IX 조정관은 Dr. Kelly King, (818) 241-3111, 504 조정관은 Mr. Hagop Eulmessekian, (818) 241-3111로 연락한다.

다음은 교육구 행정관 및 그들이 책임을 맡고 있는 프로그램 목록이다:

부교육감(교육 서비스)

504 계획  
평가 및 책임  
운동  
기술직 직업 교육(CTE)  
카테고리컬 프로그램  
학생 복지 서비스  
카운슬러  
이중언어 몰입/플렉 프로그램  
조기교육 및 학습연장 프로그램  
교육적 테크날러지 및 정보 서비스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일반 교과과정  
지방 콘트롤 책무안(LCAP)  
마그넷 학교  
체육  
유아원  
안전 계획안, 비상 계획안  
특수 교육  
학생지원 서비스  
교육 및 학습 부서  
타이틀 IX(학생 관련)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
인사 및 운영 최고 책임자	504조(직원 관련) 고용 및 직원 타이틀 IX
비즈니스 및 재정 최고 책임자	비즈니스 사무실 시설 및 운영지원 재정 서비스 영양 서비스 계획 및 수립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약속한다. 교육구 프로그램, 활동 및 관행은 실제 또는 인식된 인종, 피부색, 혈통, 국적, 출신국, 민족성, 인종 그룹 특성, 연령, 종교, 혼인 여부 또는 부모의 지위, 심·신 장애, 성, 성적 지향, 성별, 성별 인식 또는 성별 표현 또는 이러한 특성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을 실제로 표현하거나 갖고 있다고 인식하는 개인이나 집단과의 교류에 근거한 차별을 포함하여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는다. 불법적인 차별에 대한 불만은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에 따라 조사하게 된다. 이러한 불만은 주장되어지는 차별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 불만제기 양식 또는 추가 정보에 대한 도움을 위해선 (818) 241-3111 내선 1457, 카테고리컬 프로그램 사무실의 Dr. Lena Richter에게 연락한다.

### **캘리포니아 청소년 보건법**

캘리포니아 청소년 보건법은 학생들에게 적어도 중학교에서 1회 및 고등학교에서 1회 통합적이고 포괄적이며 정확하고 편견이 없는 성 건강 및 HIV 예방교육을 제공하도록 교육구에 요구한다. 이는 7-12학년 학생들에게 다음의 필요한 지식 및 기량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의도되었다. 1) HIV, 기타 성병 감염 및 의도하지 않은 임신으로부터 자신의 성적 및 생식 건강 보호; 2) 청소년 성장 및 발달, 신체 이미지, 성별, 성적 취향, 관계, 결혼 및 가족에 관한 건강한 태도 개발 그리고 3) 건강하고 긍정적이며 안전한 관계 및 행동. 이는 또한 인간 발달의 정상적인 부분으로 성에 대한 이해를 촉진한다.

학부모 또는 후견인은 다음의 권리가 있다:

1. 종합적인 성 건강 및 HIV 예방 교육에 사용되는 서면 및 시청각 교육 자료의 검사.
2. 자신의 자녀가 종합적인 성 건강 또는 HIV 예방 교육을 받지 않도록 서면으로 요청
3. 캘리포니아 청소년 보건법인 교육법 51930 - 51939 사본
4. 종합적인 성 건강 및 HIV 예방 교육이 교육구 직원 또는 외부 컨설턴트에 의해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받는다.
5. 학사년도 시작 후 수업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교육 제공 최소 14 일 이내에 우편 또는 다른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통지를 받는다.
6. 교육구가 외부 컨설턴트나 종합적인 성 건강 및 HIV 예방 교육을 가르치기 위해 초청 연사와 함께 집회 개최를 선택한 경우 a) 교육 날짜 및 b) 각 초청 연사의 조직 또는 소속 이름을 통보받는다.

### **캘리포니아 보건 서비스**

**일시적 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한 교육 -교육법, 섹션 48206.3, 48207, 48208**



정규 수업 학급에 출석할 수 있는 일시적 장애가 있는 학생 또는 학생의 등교가 불가능 하거나 추천되지 않아서 대체 교육 프로그램에 있는 학생은 학생의 가정에서 하루에 한 시간씩 개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더 상세한 정보를 위해 보건 서비스 부서에 연락한다.

주정부 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기타 주거 보건 시설에 있는 일시적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해당 병원이 위치한 교육구 학교 등교를 위한 거주지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병원 또는 기타 거주 보건 시설이 위치한 교육구에 일시적 장애 학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학부모 또는 후견인의 책임이다. 통고를 받으면 교육구는 근무 일로 5 일 이내에 교육법 48206.3 에 따라 학생이 개별화된 수업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렇다면, 근무 일로 5 일 이내에 수업을 제공한다.

일시적 장애가 있는 학생은 거주지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 등록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병원 환경으로 제한되지 않은 경우, 양 학교 모두에 등록되어 있는 총 수업일이 최대 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필요한 경우, 거주지 교육구는 일시적 의사 지시에 따라 병원 환경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날에는 가정에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출석 관리인은 학생이 정규 학교 프로그램에 복귀할 수 있을 때까지 정규 학교 프로그램 결석으로부터의 면제를 보장해야 한다.

일반 졸업장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명예 고등학교 졸업장은 거주지 교육구, 카운티 교육부 또는 차터 스쿨 이사회로부터 불치병을 걸려있는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

### **임신 및 육아 학생 – 교육법, 섹션 46015, 48205, and 48980**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성별에 상관없이 임신부 및 십대 아버지 모두에게 동일한 편의를 제공한다. 십대 부모는 임신, 출산, 가상 임신, 임신 중절 또는 산후 조리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클래스 또는 과외 활동으로부터 제외될 수 없다. 학업을 계속하기 위한 신체 및 정서적 능력은 의사 또는 임상 간호사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다. 임신 또는 육아 중인 학생은 개인적인 선택을 제외하고, 미성년자 임신 프로그램이나 대체 프로그램 참여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육아를 위한 권리는 교육구나 차터 스쿨에서 모든 일반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연례 또는 학기별 통지, 환영 패킷, 오리엔테이션, 온라인 또는 인쇄물, 또는 독립적인 학습 패킷에서 가용한 옵션이다.

아기 출산 준비, 십대 부모의 정신 및 신체 건강 필요를 위한 산후 조리 및 유아와의 유대를 위해 8 주간 육아 휴가 또는 유아나 부모 보호를 위해 의학적으로 승인된 추가 시간이 허용된다. 의사 또는 임상 간호사의 처방한 바와 같이 의료적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추가 시간이 허용된다. 임신부 또는 육아 중인 십대는 자격이 있는 휴가의 전체 또는 일부를 택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휴가는 허가된 결석으로 독립적인

학습과 유사한 특정 법령으로 교육구 또는 차더 스쿨 출석부 수퍼바이저에 의해 승인된다. 그러나 휴가 동안에는 어떠한 학업도 요구되지 않는다. 복귀 시, 자녀를 양육 중인 십대는 휴가 전에 등록한 학교 과정으로 복귀할 자격이 있다. 보충 수업 계획 및 재등록은 휴가 이전과 같이 모든 활동들에 전반적으로 참가할 기회를 갖도록 카운슬러 또는 행정관과 면담을 통해 마련된다. 필요한 경우, 자녀를 양육 중인 십대가 대안 학교 환경에 등록되었던 경우, 그 해당 환경으로의 복귀는 졸업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대로 사용 가능해야 한다. 학생은 가용한 이 편의제공을 사용하는데 있어 학업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양육권이 있는 육아 십대에게는 아픈 자녀의 질병에 대해 의사로부터의 메모가 요구되지 않는다. 부모는 출석 수퍼바이저에 의해 결석이 허가된다.

#### **의료 서비스 비밀 보장 – 교육법, 섹션 46010.1**

학교 당국은 학생의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없이 의료 서비스 비밀을 보장할 목적으로 학교에서 7-12학년의 학생을 면제할 수 있다.

####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응급 치료 – 교육법 섹션 49414**

교육구는 학교 간호사 및 훈련된 직원에게 에피네프린 자동 주사기를 제공해야 하며, 알려진 내력과 상관없이 아나필락시스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학생에게 에피네프린 자동 주사기를 사용하도록 승인한다. 아나필락시스는 음식, 의약품, 곤충 물림, 라텍스 또는 운동과 같은 알레르기 촉발을 맞이한 후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하고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반응이다. 증상은 기도 협착, 발진 또는 두드러기, 메스꺼움 또는 구토, 약한 맥박 및 현기증을 포함한다. 아나필락시스 반응의 약 25%는 이전에 음식이나 기타 다른 알레르기 진단을 받지 않은 학생들에게서 학교 시간 동안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시 에피네프린을 투여 후 응급 의료 서비스를 요청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 빨리 인식하고 치료할 수 있으면 생명을 구할 수 있다.

#### **투약 실시 – 교육법 49480**

정규 수업일 동안 의사에 의해 처방된 약 복용이 필요한 모든 학생은 교육구가 해당 약 복용에 있어 의사 소견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처방약 복용에서 학생을 돕도록 학교 간호사 요청, 약 복용법, 복용량 및 시간 일정을 자세히 설명하는 의사의 서면 지시서 모두를 받은 경우, 학교 간호사 또는 지정된 학교 직원에 의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교육법 49423** 이 요청은 또한 학부모/후견인이 서명해야 한다. 교육구가 복용해야 할 해당 약 복용법, 복용량 및 시간 일정을 자세히 설명하는 의사의 서면 지시서 및 학부모 또는 후견인으로부터 학생이 스스로 관리할 것을 요청하는 서면 진술서 두 가지를 받을 경우, 학생은 자동 주사가 가능한 에피네프린 또는 흡입 천식 약을 가지고 다니고 스스로 투여할 수 있다. 모든 요청은 사용 이전에 학교 간호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귀하의 자녀가 특별한 약을 복용하는 경우, 양식 6를 작성하여 동교 학교 양호실에 제출한다.*

### 유의 사항:

1. 자녀가 학교에 있는 동안 약을 복용할 필요가 없도록 의약품의 복용 스케줄을 자녀의 의사와 상담한다.
2. 자녀가 지속적인 의료 문제로 인해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경우, 비록 집에서만 복용하더라도 매 학사년 초, 학교 간호사 또는 기타 지정된 교직원에게 서면으로 메모를 전해야 하며, 그 메모에는 약 목록, 현 복용량 및 처방한 의사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법 49480).
3. 자녀가 학교에 있는 동안 약을 복용해야 할 경우, 학부모, 자녀의 의사 또는 거주 면허를 소지한 기타 의료인은 학교에 서면으로 메모를 제출하도록 한다. 매 학사년 초, 그리고 약품, 주의사항 또는 의사 변경 시 최신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교육법 49423).
4. 학부모 또는 후견인으로서 귀하는 자녀가 수업일 동안에 복용하는 모든 약품을 제공해야 한다. 귀 자녀가 자신이 약을 소지하고 복용하는 것이 허가되지 않은 이상, 귀하 또는 다른 성인이 학교에 약품을 전달해야 한다.
5. 리탈린 같은 모든 통제 약품은 학교 전달 시, 수량을 파악하고 약품 일지에 기재되어야 한다. 학교에 약품을 전달하는 학부모 또는 다른 성인은 일지에 서명함으로 수량을 확인해야 한다.
6. 자녀가 학교에서 제공해야 하는 각 각의 약은 미국에서 허가된 약사에 의해 라벨이 부착된 별도의 용기에 들어 있어야 하고, 각 용기에는 자녀의 이름, 의사의 이름, 약 이름, 약 복용 시기 및 복용량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7. 학사년이 끝나기 전에 중단된, 사용 날짜가 지나간 및/또는 미 사용 의약품을 모두 픽업한다.
8. 자녀 학교의 의약품 방침을 알고 따른다. 교육위원회는 공개 위원회 회의에서 어떤 이유로 든 정책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 아동 건강 및 장애 방지 프로그램 CA HSC 124100 & 124105

아동 건강 및 장애 방지(CHDP)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1 학년에 입학하기 전에 완전한 건강 검진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 이 건강 검진은 유치원 시기에 받을 수는 있지만 1 학년에 입학하기 18 개월 이전에 받은 것은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메디칼 수혜 자격이 있는 학생에게 이 검진은 무료이며, 의료 보험이 없는 아동들은 지역 카운티 보건소로부터 아동 건강 및 장애 방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 구강 건강 검사 – 교육법, 섹션 49452.8

아동은 5 월 31 일까지 과도기 유치원/유치원 또는 1 학년 중 공립학교의 첫 해에 구강 건강 평가를 받을 것이 요구된다. 법은 이 평가가 유 면허 치과의사 또는 유면허 또는 등록된 기타 치과 보건 전문인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동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 12 개월 이내에 받은 구강 건강 검사도 이 요건을 충족시킨다. 아동을 평가에 데려갈 수 없는 경우, 요구되는 서식의 섹션 3 을 작성하여 이 필수 요건으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다.

### 의무적 건강 검진– 교육법, 섹션 49451

학부모는 매년 교장에게 자녀의 건강 검진 면제를 요청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가 인지된 전염성 또는 감염성 질병을 앓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자녀는 학교 출석에서 제외된다. 학교 간호사는 과도기 유치원/유치원, 2, 5, 8 및 11 학년에서 의무적으로 시각 및 청력 검사를 실시하고 여학생은 7 학년 및 남학생은 8 학년에 척추 측만증 검사를 실시한다.

### 예방 접종 - 교육법, 섹션 49403, 48216, HSC 120325, 120335, 120365, 120370, 120375

학생들은 특정 전염병에 대해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하며 연령과 학년에 대한 예방 접종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한 학교 출석이 금지되어 있다. 교육구는 학령기 아동들의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필요한 조치에 대해 지역 보건 당국과 협력해야 한다. 교육구는 기금, 자산 또는 인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의사 또는 간호사로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부모가 서면으로 동의한 모든 학생에게 예방약을 투여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2016년 1월 1일부터, 모든 학교에서 학생의 부모는 더 이상 현재 요구되는 백신에 대해 개인 신념에 따른 면제 제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2016년 1월 1일 이전에 학교에 제출된 개인 신념에 따른 여학생 면제는 학생이 유치원(과도기 유치원 포함) 또는 7학년에서 다음 학년에 입학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

학생들은 그들이 가정에 기반을 둔 사립학교 또는 독립 학습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교실에 기반을 둔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예방 접종을 받을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학부모는 이 학생들에 대한 예방 접종 기록을 그들의 학교에 계속 제공해야 한다. 예방 접종 요건은 학생들이 특수 교육 및 그들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 필요한 관련 서비스 접근을 금지하지 않는다.

완벽히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학생은 해당 아동이 특정 질병에 노출되고 예방접종 상황의 증명서에 위에 설명된 전염병 중 하나에 대한 예방접종의 증명이 보이지 않는 경우, 학교나 다른 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될 수 있다.

#### **주 법은 자녀가 학교에 다니기 전에 다음과 같은 예방접종을 요구한다:**

(a) 과도기 유치원 - 12학년의 모든 신입생은 글렌데일 통합교육구에 소아마비,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및 수두 예방접종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b) 모든 과도기 유치원 및 유치원 학생들은 또한 B형 간염 예방접종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c) 모든 7학년 학생들은 두 번째 홍역이 들어있는 백신 및 백일해 추가 백신의 증거를 또한 제공해야 한다.

학생 예방접종에서 의료 면제 또는 개인 신념에 따른 면제 정보는 [www.shotsforschools.org](http://www.shotsforschools.org) 에서 가용하다.

#### **제 2형 당뇨병 통지 – 교육법, 섹션 49452.7**

가주 교육부는 가주 공공 보건부, 미국 당뇨 협회, 가주 학교 간호사 단체 및 오렌지 카운티 아동 병원과 협력하여 제 2형 당뇨병에 관해 다음의 정보를 수립하였다. 2010년 7월 1일부터 7학년생 학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제공된다.

#### **설명:**

제 2형 당뇨병은 성인에게 가장 흔한 유형의 당뇨병이다.

1. 몇년 전까지 제 2형 당뇨병은 아동에게 드물었으나 이젠 통상적이 되고 있으며 특히 비만 십대에게 빈발한다.
2. 미국 질병 통제 및 예방(CDC) 센터에 의하면 2000년 이후에 태어난 미국 아동 3명 중 1명이 자신의 일생 동안 제 2형 당뇨병을 앓게 된다고 한다.

제 2형 당뇨병은 신체가 에너지를 위해 설탕(포도당)을 사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1. 신체는 음식의 탄수화물을 신체 세포의 기본 연료인 포도당으로 전환한다.
2. 췌장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을 생산한다.
3. 제 2형 당뇨병에서 신체 세포는 인슐린에 저항하여 혈액의 포도당 수치가 상승한다.
4. 시간이 경과하면 혈액의 포도당 수치가 위험하게 높아져 혈당 과다증이 된다.
5. 혈당 과다증은 심장병, 실명 및 신장병같은 건강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제 2 형 당뇨병과 관련된 위험 요소:** 제 2 형 당뇨병과 관련된 위험 요소 및 경고 징후를 보이거나 앓고 있는 학생은 검진받을 것이 권고된다. 연구자들은 어떤 사람이 제 2 형 당뇨병을 앓고 어떤 사람은 앓지 않는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나 아래 위험 요소들은 아동의 제 2 형 당뇨병 증대와 연관되어 있다:

1. **비만.** 아동의 제 2 형 당뇨병의 단일 최대 위험 요소는 과체중이다. 과체중 아동이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은 2 배 이상이다.
2. **가족의 당뇨 병력.** 영향을 받은 많은 아동 및 청소년들은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부모가 적어도 한 명 있거나 주목할 만한 가족 병력을 갖고 있다.
3. **무활동.**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신체의 인슐린 반응력을 더욱 감소시킨다
4. **특정 인종/민족.** 미 본토인, 흑인, 라틴계 또는 아시아/태평양 제도인은 타 민족 그룹에 비해 제 2 형 당뇨병에 더 취약하다.
5. **사춘기.** 사춘기 아동은 급성장 및 신체 발달단계 동안 아마도 인슐린 저항을 가져올 수 있는 호르몬 수치의 정상적 상승으로 인해 어린 아동보다 제 2 형 당뇨병을 앓을 가능성이 높다.

**제 2 형 당뇨병과 관련된 경고 징후 및 증세:** 아동의 제 2 형 당뇨병과 관련된 경고 징후 및 증세는 서서히 나타나며 초기에는 증세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인슐린 저항 또는 제 2 형 당뇨병을 가진 모두가 이러한 경고 징후를 보이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증세를 보인다고 해서 제 2 형 당뇨병을 앓는 다고도 할 수 없다.

1. 식사 후에도 배고픔 증가
2. 원인불명의 체중 감소
3. 갈증 증대, 건조한 입, 빈번한 방뇨
4. 심한 피곤감
5. 흐린 시야
6. 잘 낫지 않는 흙 또는 상처
7. 특히 목 뒤 또는 겨드랑이 피부 일부가 검고 매끈하거나 볼록함
8. 어린 여성의 경우, 월경불순, 무월경 및/또는 과다한 얼굴 및 신체 체모
9. 고혈압 또는 비정상적인 콜레스테롤 수치

**제 2 형 당뇨병의 예방법 및 치료:** 건강한 생활 방식 선택은 제 2 형 당뇨병 예방과 치료를 도울 수 있다. 가족의 당뇨 내력이 있더라도 적정량의 건강식 섭취 및 정기적인 운동은 정상 체중 및 정상 혈중 포도당 수치 달성 또는 유지를 도울 수 있다.

1. **건강식 섭취.** 음식을 현명하게 선택하여 저 지방 및 저 칼로리 음식을 먹는다.
2. **신체 활동의 증대.** 매일 적어도 60 분 이상 신체 활동을 늘린다.
3. **약물 치료.** 음식 및 운동으로 병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약물로 제 2 형 당뇨병을 치료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제 2 형 당뇨병 치료의 첫 단계는 의사 방문이다. 의사는 아동이 자신의 나이 체중 및 신장에 비해 과체중인지 결정하며 또한 아동이 당뇨 또는 당뇨 전 단계(제 2 형 당뇨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태)인지 보기 위해 아동의 혈당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가용한 당뇨병 테스트 유형:**

1. **그리케이티드 헤모글로빈 (A1C) 테스트.** 2, 3 개월에 걸쳐 평균 혈당 수준을 측정한다. 두 회의 별도 A1C 테스트에서 6.5 퍼센트 또는 그 이상은 당뇨병 을 의미한다.

2. **무작위 (비 공복 상태) 혈당 테스트.** 아무 때나 혈액을 채취하여 데시리터(mg/dL) 당 200 밀리그램의 혈당 또는 그 이상은 당뇨이다. 이 검사는 공복 상태 혈당 테스트로 확인되어야 한다.
3. **공복 상태 혈당 테스트.** 야간 공복 후 혈당을 측정하여 데시리터 당 100 밀리그램 이하이면 정상. 100-125 사이이면 전 단계. 두 별도의 테스트에서 126 또는 그 이상이면 당뇨이다.
4. **구강 포도당 내성 테스트.** 야간 공복 후, 설탕물을 마시고 다음 몇 시간 동안 주기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혈당 측정 테스트로서 2 시간 경과 후, 데시리터 당 200 밀리그램 이상은 당뇨를 의미한다.

제 2 형 아동 당뇨병은 예방/치료가 가능한 병이며 본 정보를 통해 제공된 안내는 이 병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기 위한 것이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자녀 학교 간호사, 학교 행정관 또는 의료인에게 문의한다.

**참조 :**

- 미국 당뇨 협회 임상 회보
- 당뇨 아동의 성공을 돕기: 학교 인사를 위한 안내
- 아동 보건
- 메이요 클리닉
- 국가 의료 도서관 (NLM) 및 국가 보건 연구소 (NIH) 메드라인
- 미국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질의 : 학생 서비스 – [www.cde.ca](http://www.cde.ca) – (916) 319-0284**

**뇌진탕 및 머리 부상 –교육법, 섹션 49475**

뇌진탕은 머리에 가해진 충격, 타격 또는 갑작스런 흔들림이 가해지거나 신체의 다른 부분에 가해진 타격이 머리로 전달되어 생길 수 있는 두뇌 상해이다. 비록 대부분의 뇌진탕은 경미한 것 일지라도, 모든 뇌진탕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것으로서 적절히 인식하고 관리되지 않으면 뇌 손상 및 사망을 포함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선택한 교육구, 차터 스쿨 또는 사립 학교는 해당 활동 동안에 뇌진탕 또는 머리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의심되는 운동 선수는 해당 일의 나머지 시간 동안에 학교가 후원하는 운동 활동에서 즉시 퇴장시켜야 한다. 그 운동 선수는 면허가 있는 의료 제공자에 의해 평가되고 서면 허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활동으로 되돌아올 수 없다. 면허가 있는 의료 제공자가 운동 선수가 뇌진탕 또는 머리 부상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운동 선수는 또한 면허가 있는 의료 제공자의 감독 하에 최소 7 일 간의 경기 복귀 규정을 완료해야 한다. 매년 운동 선수가 연습 또는 시합을 시작하기 전에 뇌진탕 및 머리 부상에 대한 정보지가 운동 선수 및 운동 선수의 부모 또는 후견인에 의해 서명되어 제출되어야 한다. 이 요건은 정규 수업일 동안 또는 체육 과목의 일부로 운동에 참여하는 운동 선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통제 물질: 아편 – 교육법, 섹션 49476**

학교 당국은 매 학사년 운동 선수에게 아편 사용의 위험 및 부작용에 관한 사실을 제공해야 한다. 학부모 및 학생은 매년 이 서류 수령 확인서에 서명해야 한다.

**의료 또는 병원 서비스 – 교육법, 섹션 49472**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학교 관련 활동이나 출석과 관련된 사고로 상해를 입은 학생을 위해 의료 및 병원 서비스를 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 뇌진탕 정보지 2020-2021

글렌데일 통합 교육구  
뇌진탕 정보지

(2020-2021 학사년도에만 적용)

### 사실:

뇌진탕이란 머리에 가해진 충격이나 타격 또는 신체의 다른 부분에 가해진 타격이 머리로 전달되어 생긴 일종의 두뇌 상해이다. 뇌진탕은 약함에서 심각함의 범위에 걸칠 수 있으며 두뇌의 정상적 작용을 방해할 수 있다. 비록 대부분의 뇌진탕은 약한 것이지만 **모든 뇌진탕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것으로서 인식 및 치료되지 않으면 뇌손상 및 사망을 포함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뇌진탕은 알아보기 어려우며 대부분의 스포츠 뇌진탕은 의식을 잃지 않은 상태로 발생한다. 뇌진탕의 징후 및 증세는 다양하며 상해 후 바로 나타나거나 몇 시간, 며칠 후에 완전히 나타날 수도 있다. 자녀가 어떤 뇌진탕 증세를 호소하거나 당신 자신이 증세 또는 징후를 보게 되면 즉시 의료인에게 보여야 한다. .

### 증세:

- 두통
- “머리 압박감”
- 메스꺼움 또는 구토
- 목통
- 균형 문제 또는 현기증
- 흐린 또는 이중 시야
- 빛 또는 소리에 민감
- 느리거나 둔화된 느낌
- 몽롱하거나 울적한 느낌
- 졸림
- 불면증
- “컨디션이 안 좋음”
- 피로감 또는 무기력
- 우울
- 신경 불안 또는 불안
- 짜증
- 감정적
- 혼동
- 집중 또는 기억 문제(게임 룰 망각)
- 동일 질문/말 반복

• 수면 패턴 변화

**뇌진탕 상태에서 너무 빨리 운동하거나 경기를 다시 하는 경우의 위험성:**

뇌진탕 징후 또는 증세를 보이는 선수는 즉시 경기를 멈추어야 한다. 지속하는 경우, 젊은 선수는 더 큰 상해에 특히 취약하다. 특히 운동선수가 첫 뇌진탕으로부터 회복되기 전 두 번째 뇌진탕을 입을 경우, 뇌진탕 발생 후 한 동안 뇌진탕으로부터 심한 상해를 입을 위험이 증가한다. 그럴 경우, 참담한 그리고 치명적일 수도 있는 결과와 함께 회복이 더디거나 뇌가 심하게 붓기도 할 수 있다(2차 충격 증후군). 사춘기 또는 십대 운동선수들은 상해 증세를 종종 줄여서 보고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뇌진탕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행정관, 코치, 학부모 및 학생에 대한 교육은 학생 운동선수의 안전에 열쇠이다.

**자녀가 뇌진탕을 입었다고 생각할 경우**

가주 학교 대항 연맹(CIF)은 연습 또는 게임 도중 뇌진탕이나 머리 상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학생 선수는 사건 발생시, 그리고 나머지 날 동안 경기로부터 빼내어 몇 시간 계속 면밀히 관찰할 것을 요구한다. 경기로부터 빼내어진 학생 선수는 뇌진탕 평가 및 치료 훈련을 받은 유면허 건강 관리인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다시 경기로 돌아가도 좋다는 승인서를 받을 때까지 경기에 다시 임할 수 없다.

또한 학부모는 자녀가 뇌진탕을 입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코치에게 알려야 한다. 시즌을 놓치는 것보다는 한 게임을 놓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상기하도록 한다. 의심이 가는 경우엔, 벤치에 앉아 있도록 한다.

뇌진탕에 관한 최신 정보 웹 사이트 : <http://www.cdc.gov/ConcussionInYouthSports>.

**학생 보험 플랜**

**캘리포니아 교육법 섹션 49472**

교육구는 정규 수업일, 학교 후원 행사 또는 장소 이동 중 발생하는 학생의 상해에 대해 사고 보험을 제공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자료가 신 학사년의 첫 주 동안에 유치원 -6 학년의 각 학생 편으로 가정에 전달되며 그 이후 모든 신규 등록생들의 학부모에게 주어진다. 중, 고등학교의 경우, 각 학교에서 신청서를 구할 수 있으며 학부모에게 이 매일을 보낸다. 또한 학생 보험 정보는 교육구의 웹 사이트([www.gusd.net](http://www.gusd.net)) 비즈니스 서비스 부서(Business Services Department) 란에 게시된다. 보험 가입비는 학부모 또는 후견인이 부담한다.

**경쟁력이 있는 운동선수들은 더 높은 운동 교육 프로그램을 구한다**

**가주 교육법, 섹션 67455**

주 법률 하에, 고등 교육 운동선수 단체에 의해 용납된 어떤 부정 행위의 피해자이거나 증인 학생은 신고, 항의 제기 또는 그 외에 프로그램, 참가자 또는 직원과 관련하여 학생 운동 선수의 권리 위반의 신고를 지원하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보고를 할 수 있는 권리는 “**학생 운동 선수 권리 법**”에 의해 보장되며, 그 신고가 선의와 진실성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징벌이나 어떤 혜택으로부터 제외되는 결과를 낳지 않을 수 있다.

**학생 체육 면제 (고등학교 만 해당)**

지방 교육 기관 (LEA)은 학생이 캘리포니아 교육법(EC) 섹션 51241 에 따라 면제 또는 제외되지 않은 한 수업일 매 10 일 {교육법 섹션 51222(a)} 동안에 최소 400 분의 체육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체육 출석 출석 요건으로부터 면제된 10-



12학년의 모든 학생은 다양한 선택 체육 과정이 제공된다. 각 선택 체육 과정은 적절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진행하며 수업일 매 10 일 동안에 최소 400 분의 체육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법 섹션 33352[b][6], 51222(b), 51241[b][2].

LEA의 교육위원회는 학생이 요청한 면제에 대해 교육법 및 교육위원회 방침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 하에서 체육 면제를 제안하고 승인할 수 있다. 학생 면제 요청 양식은 부록에서 찾거나 학교의 웹사이트 또는 카운슬러로부터 받을 수 있다. 면제는 매년 점검되며 GUSD의 고등학교 졸업장을 위해 2년 체육 요건에서 학생을 면제시키지 않는다. 학생들은 GUSD 졸업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체육에서 2년(20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면제를 요청하길 원하는 모든 학생은 GUSD 면제 요청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 **거주지 학교 선택**

1. 6-18세 사이의 미성년자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면제되지 않은 이상 학부모/법적 후견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교육구에 속한 학교에 등록해야 한다.
2. 학생은 다음의 경우, 교육구 내의 출석 학교에 대한 주거 요건을 양자택일적으로 준수할 수 있다: 복지 및 기관 법하의 배치에 따라 교육구 내의 위탁 가정 또는 유 면허 아동 시설에 배치된 학생, **자신이 본래 다니던 학교에 남아있는 위탁 양육 가정 학생**, 교육구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독립된 학생, 교육구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성인 보호자 집에 사는 학생 또는 교육구 관할구역 내의 주정부 병원에 거주하는 학생 또는 군인이나 이주자 가족의 학생.
3. 과거 수년 동안 학생들의 등교 지역은 교육 시설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이웃 학교 개념에 근거하여 설정되어 으며 교육구는 출석 허가에 대한 요청을 앞으로도 계속 고려할 것이다. 교육구는 다음과 같은 선택을 제공한다.
  - A. **교육구 내 전학 허가** – 이 요청은 적응 문제, 이사 계획, 교육구 취업, 앞서 다니던 학교, 사적으로 마련한 탁아, 형제자매 및 특별 교과과정을 포함하여 개인적 필요 사유에 대해 고려될 것이다 교육구 내 전학 허가 신청서는 [gusdpermits.com](http://gusdpermits.com) 에서 받을 수 있다.
  - B. **교육구 내 전학 선택- 교육법 § 35160.5(b)**  
교육구의 거주자는 교육구 내에서 동일한 학년 수준을 제공하는 다른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정보는 교육구 웹사이트에 제공된다. 현재 학교의 출석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은 출석 지역 외부로부터 전학하는 학생으로 인해 교체될 수 없다. 약자 괴롭히기(왕따)의 피해자인 학생은 같은 학년 수준에 자리가 있을 경우 전학할 수 있도록 교육구 내 전학 허가가 허용된다. “교육구 내”에 출석할 자리가 없을 경우, 학생은 거주지 교육구로부터의 방출 지연없이 다른 교육구에 “타 교육구로부터의 전학” 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나 외부 교육구에 입학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 C. **타 교육구와의 전학 허가- 교육법 46600**  
학부모 또는 학생의 법적 후견인은 타 교육구 학교로 전학을 위해 거주지 교육구에 방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허가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에 대해 고려될 수 있다: 이사 계획, 기회, 앞서 다니던 학교, 사적으로 마련한 탁아 선택(과도기 유치원-8학년), 형제자매, 부모 취업(과도기 유치원-8학년). 타 교육구와의 전학 허가는 거주지 교육구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거주지 교육구와 받아들이는 교육구 양쪽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한다. 교육구들은 1명 또는 그 이상 학생에 대해 최대 5년 동안 타 교육구와의 전학 허가에 동의할 수 있으며 이것은 전학의 승인 또는 거부에 대한 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재 신청 기준을 포함하고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합의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학생은 타 교육구로의 전학을 재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등록 교육구는

학생이 등록된 학교에 계속 출석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합의서가 존재하는지 또는 허가가 발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지의 교육구는 해당 교육구가 전학 신청서를 승인하는 경우, 현역 군 복무 수행 중인 부모의 자녀 학생의 제안된 등록 교육구로의 전학을 금지할 수 없다. 약자 괴롭히기의 피해자에게 교육구 내 전학 허가 옵션이 가용하지 않을 경우, 교육구는 타 교육구와의 전학 허가 방출을 금지할 수도 없다. 타 교육구 전학 허가 거부에 대한 재심 청구는 학생지원 서비스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재검토 후에도 계속 거부되는 경우, 재심 청구는 교육감이나 대리에게, 그 다음에는 카운티 교육위원회에 한다.

#### **거주지 대신 직장 (알렌 법안) - 교육법, 섹션 48204**

일부 교육구는 주거지 대신에 직장으로 허용할 수 있다. 교육구는 적어도 학생의 부모/후견인 중 한 사람이 학교 수업 주간 동안에 최소 10 시간을 해당 교육구 경계선 안에서 물리적으로 고용된 경우, 교육구 학교 출석 거주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일단 거주로 허가를 받으면 부모가 교육구의 경계선 내에서의 취업을 중단한 경우에만 학생의 전학이 취소될 수 있다. 거주자로서, 학생은 전학이 유효하다는 것에 대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 **군인 가족- 교육법, 섹션 46600**

타 교육구와 간의 허가는 거주지의 교육구로부터의 방출에 대해 거절되지 않지만 원하는 교육구로부터 동일한 입학 요건이 요구될 수도 있다. 전근 명령 대기 중인 현역 군인 가족의 경우, 가족이 이사한 후 문서 작성(처리)에 10 일이 소요될 수 있다. 명령이 문서화되면 그들은 등록 절차를 시작하고 지연을 피하기 위해 계획한 거주지 교육구 또는 차터로 발송할 수 있다. 현역 군인의 아동들에게는 교과 과정 및 졸업 요건이 면제된다. 주의: 이러한 구체적인 규약은 거주지 그리고 졸업에 대한 고등학교 요건 하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 D. **던스모어, 제퍼슨, 몬테 비스타, 뮤어, 알. 디. 화이트 및 버두고 우들랜즈의 비 마그넷 이중언어 플렉 프로그램** – 초등학교 플렉 프로그램 학교 중 한 곳에 다니길 원하는 글렌데일 교육구 주민은 플렉 프로그램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입학될 경우, 필요한 모든 등록 서류를 해당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글렌데일 교육구 주민은 자신의 거주지 학교가 아닌 학교의 플렉 프로그램 출석에 대해 교육구 내 전학 허가서 취득이 요구되지 않으나 타 교육구 거주 신청자는 플렉 프로그램에 입학될 경우, 등록 절차를 마치기 위해서 자신의 거주지 교육구로부터 방출서를 받을 것이 요구된다. 이 방출서는 **등록 확인서** 및 타 교육구 전학 허가 신청서와 함께 학생지원 서비스 부서에 제출되어야 한다. **플렉 프로그램의 지속은 학생의 학교 출석 및 품행 기대치 달성에 달려있으며 이러한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학생 자신의 거주지 학교 또는 거주지 교육구로 돌아가야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 E. **서리토스, 에디슨, 프랭클린 및 케펠 마그넷 초등학교(마그넷 학교들의 플렉 프로그램 포함)** -초등 마그넷 학교 중 한 곳에 다니길 원하는 글렌데일 교육구 주민은 마그넷 학교 입학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입학될 경우, 필요한 모든 등록 관련 서류를 해당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글렌데일 교육구 주민은 마그넷 학교의 출석에 대해 교육구 내 전학 허가 요청서 취득이 요구되지 않으나 타 교육구 거주 신청자는 마그넷 학교에 입학될 경우, 등록 절차를 마치기 위해서 자신의 거주지 교육구로부터 방출서를 받을 것이 요구된다. 이 방출서는 **등록 확인서** 및 타 교육구 전학 허가 신청서와 함께 학생 지원 서비스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마그넷 프로그램의 지속은 학생의 학업 수행, 학교 출석 및 품행 기대치 달성에 달려있으며 이러한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학생 자신의 거주지 학교 또는 거주지 교육구로 돌아가야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 F. **과도기 유치원** – 글렌데일 통합교육구의 모든 학교가 유치원을 제공하는 것은 아님으로 인해 과도기 유치원에 자격이 있는 학생(9월 2일-12월 2일 사에 또는 그 당일에 5세가 되는 아동)은 그들의 주거지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과도기 유치원에 배정된다. 자신의 거주지 학교가 아닌 학교의 과도기 유치원에 배치된 학생은 그 다음 해 유치원을 위해 자신의 거주지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법안 AB 1156은 학생이 그가 속한 교육구 또는 전학하려는 타 교육구 인사에 의해 자신이 속한 교육구 학생에 의한 약자 괴롭히기 행위의 희생자라고 판정된 경우, 기존 타 교육구 전학 동의서 하에서 타 교육구 전학에 우선권이 주어지거나 동의서가 없을 경우엔 학생의 법적 후견인의 요청에 따라 타 교육구 전학 동의서 작성을 위해 추가적 고려가 주어져야 한다.

본 통고서에 설명된 출석 선택에 관한 추가 정보를 원하는 경우, (818) 241-3111 ext. 1283 학생지원 서비스 부서에 연락하도록 한다.

### **학부모 및 가족 참여**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유대는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시키고 학생 성공 기회를 증대시키며 학생의 가족은 학생의 학업에 필수적인 파트너이다. 학교와 교육구 프로그램들에서 학생 가족의 적극적 참여는 학생의 성취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다. 학부모/후견인은 자녀의 교육에 보람된 방식으로 참여하고 학교와 교육구에서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할 기회들을 가지며 학부모/후견인은 참여 활동 및 기회들에 대해 통신문, 자동 녹음, 전화 전자 전단지, 학교 웹사이트 및 교육구 웹사이트([www.gusd.net](http://www.gusd.net))를 통해 통고된다.

학부모는 교육구의 지방 콘트롤 책무안(LCAP) 모임 및 자녀 학교의 운영위원회(SSC) 및/또는 영어 자문위원회(ELA)에 참여할 것이 권장된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특정 프로그램 및 계획들의 효율성에 대한 조언을 위해 소집되는 자문위원회이다. ELAC 은 또한 영어학습자의 학업 문제 및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 자문위원회이다. 학부모는 또한 교육구 영어학습자 자문위원회 (DELAC) 에도 참여할 수 있다.

GUSD 학부모 및 가족 참여 방침은 학부모 및 가족 참여에 대한 기회와 함께 [www.gusd.net/Page/12405](http://www.gusd.net/Page/12405) 에서 찾을 수 있다.

### **직업 상담 및 코스 선택**

캘리포니아 교육법, 섹션 221.5(d): 7 학년을 시작으로, 학교 인사는 학생의 성별이 아닌 학생의 관심 및 능력에 기초한 코스 선택 또는 직업 상담, 경력의 가능성 탐색 또는 경력으로 이어지는 코스들에 학생들을 지원해야 한다. 학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들은 이러한 상담 세션 및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지된다.

### **영어 학습자 (EL) 정보**

글렌데일 통합교육구의 목적은 모든 학생들에게 표준에 근거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영어 학습생에 대한 이중 목표는 그들이 영어 능숙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발달시키고 모국어가 영어인 동년배 또는 동일 학년 학생들과 동일한 학업 진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영어 학습생들은 그들의 영어 능숙성을 발달시키기 위한 적절한 지도를 통해 학년 수준의 교과목 내용 수업을 받는다. 모든 영어 학습생들은 높은 능숙도 및 읽기/쓰기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영어 발달(ELD) 및 교과 과목 수업을 받는다

캘리포니아 교육법, 섹션 52164.1 에 따라 영어 외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모든 등록생들은 적절한 영어 개발 프로그램에 배치를 위해 영어 실력 테스트가 주어지며, 그의 모국어 또한 평가될 수 있다.

주정부가 승인한 영어 평가는 캘리포니아 영어 능숙도 평가(ELPAC)이며, 등록 시에 그리고 그 후 매년 모든 영어 학습생들에게 실시된다. 학부모/후견인은 평가 결과, 학생의 영어 능숙도 및 ELD 프로그램에 있어서 배치 수준에 대해 통고받는다.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최소한 구조화된 집중 영어(SEI)** 프로그램 옵션을 제공할 것이 요구된다. (교육법 섹션 305[a][2]). GUSD 에서 제공되는 언어 습득 프로그램의 설명이 아래에 열거되어 있으며, 학부모는 자신의 아동에게 가장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20 6[e][3][A][iii],[v])

- \* **구조화된 영어 몰입 (SEI) 프로그램 1:** 거의 모든 학급 수업이 영어로 제공되지만 영어를 배우는 학생을 위해 고안된 커리큘럼 및 설명이 있는 영어학습자를 위한 언어 습득 프로그램. 학업 지도는 ELD 및 학년 수준의 내용 표준을 기반으로 한다. **프로그램 1의 학생들은 영어에 대해 영어개발(ELD)에 만 성적을 받는다.**
- \* **영어 주류/(ELM) 프로그램 2:** 학생은 교육구가 채택한 교과서 및 보충 교재물들을 사용하여 ELD 및 기타 핵심 과목들을 배우는 영어학습자를 위한 언어 습득 프로그램. 학업 지도는 ELD 및 학년 수준의 내용 표준을 기반으로 한다. **프로그램 2의 학생들은 영어 개발 및 영어 성적을 받는다**
- \* **이중 언어 몰입(DLI) 프로그램(영어/아르메니아어/프랑스어/독일어/이탈리아어/일본어/한국어/스페인어):** 영어 원어민 및 다른 언어의 원어민을 대상으로 높은 학업 성취, 제 1 언어 및 제 2 언어 숙달 및 문화 간의 이해를 목표로 언어 학습 및 학업 지도를 제공하는 언어 습득 프로그램. 이중 언어 몰입 프로그램 참가는 신청서 및 자리의 가용성 여부에 달려 있다.

학교 당 30 명 또는 그 이상 학생의 학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이 또는 어느 학년 중 20 명 또는 그 이상 학생의 학부모/법적 후견인이 언어 교육을 제공하도록 고안된 언어 습득 프로그램을 요청하는 학교는 가능한 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미합중국(U.S.C) 20 항 섹션 6312[e][3][A][viii][III]); (*교육법 섹션 310[a]*). 위에 나열된 것과 다른 언어 프로그램 요청을 위해선 학교 사무실에 구두 또는 서면 요청서를 제출한다.

### **이주 및 새로운 이민자 및 군인 가족 학생: 졸업 요건, 지속적인 교육 옵션-교육법 51225.1 및 51225.2**

통고서는 이주 30 일 이내에 학부모 및 학생이 이해하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학생이 주 정부의 최소 교과과정 요건을 완료하고 졸업장을 받을 자격이 되면 학생에게 다음의 모든 교육적 권리를 알린다: 외국이나 다른 교육구로부터 고등학교 3 학년 또는 4 학년에 전학한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 요건을 완료한 경우, 거주지 교육구가 발급하는 졸업장에 대한 학생의 권리. 거주지 교육구는 학생이 이전에 출석한 학교뿐만 아니라 미국 외의 국가로부터의 만족스러운 교과과정을 수용하고, 전학 후 출석한 최종 학교 졸업장을 발급해야 한다.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은 교육위원회 또는 차터 스쿨에 의해 채택된 교과과정 및 기타 요건을 수강하는 방법 및 전학 시에 계속하는 학습은 중등 과정 이후 교육 기관의 입학 허가를 얻기 위한 학생의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설명한다.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를 통해 가용한 편입 기회들에 대한 정보. 학생 또는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사람은 해당되는 경우, 학생이 달성 가능한 졸업장 요건 성취를 위해 고등학교 5 년차에 추가로 학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옵션.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이 시기 적절히 통고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최초의 전학 이후에 통고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일단 통고되었으면 학생은 졸업장을 받을 자격이 있다. 추가로 주 전체의 최소 학과 과정 및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의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다음의 두가지 기타 요건 모두를 수행해야 한다: 학생에게 교육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교과과정 및 기타 요구 사항을 택할 수 있는 옵션을 알린다. 학생이 18 세나 이상인 경우 학생의 동의 하에, 또는 학생이 18 세 미만인 경우, 그 학생에 대한 교육 결정권을 가진 인사와의 동의 하에 교육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교과과정 또는 기타 요건들을 고등학교 5 년차에 추가 과목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학생이 18 세나 그 이상 또는 학생이 18 세 미만인 경우 그 학생에 대한 교육 결정권을 가진 인사에게 지방 교육 기관 또는 차터 스쿨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에 등록을 고려하도록, 지속적인 교육으로부터의 혜택 및 고등학교로부터의 유효한 졸업장을 받고 졸업함에 대해 조언한다. 새로운 이민자 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이 지역 졸업 요건으로부터 면제된 경우, 이 면제는 학생이 학교에 등록되어 있거나, 차터

스쿨을 포함하여 다른 학교로 다시 전학하거나 또는 고등학교의 3 년차 또는 4 년차 동안 교육구에 있는 동안 “신입생(뉴커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의 정의를 더 이상 충족시키지 못한 후에도 계속 적용된다. 이주 아동의 학부모 및 학생은 단지 이 면제 자격을 얻기위해 전학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

귀하가 군인 가족인 경우, 귀하의 자녀는 캘리포니아 주 필수요건 외의 지방 졸업 과정 요건으로부터 면제될 자격이 있을 수도 있다. 학교 카운슬러와 졸업에 관한 자녀의 옵션들의 검토를 위해 예약 시간을 잡는다.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외부의 다른 학교에서 완료한 모든 과목들은 전체 또는 일부가 인정된다.

### **교육적 평등 – 교육법, 섹션 66251, 66260.6, 66270, and 66270.3)**

고등 교육 평등법은 모든 사람은 장애, 성별, 성별 정체성, 성별 표현, 국적, 인종 또는 민족, 종교, 성적 취향 또는 헤어 스타일과 같은 모든 기타 특정 특성에 관계없이 평등권 및 기회 그리고 고등 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을 신청할 기회를 추가하며 또한 공평해야 하며 신청서는 학생의 이민 신분에서 따라 거부되지 않음을 명시한다. 이는 어떤 최종 자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차별없이 모든 다른 학생과 마찬가지로 재정 보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학생 비용/기부금/기금모금**

글렌데일 통합교육구에 등록된 학생은 법에 의해 허용된 것을 제외하고 학교 또는 교육구가 제공하는 교육 활동 참여 비용, 보조금 또는 기타 어떤 비용도 일체 부담하지 않는다. 기부금과 기금모금은 다양한 활동과 비품 마련을 위해 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학급과 활동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기부금 및 기금모금은 자발적인 일이다.

주 법은 GUSD 에게 공립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무상 공립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것은 예외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GUSD 가 학교 활동에 대해 학생이나 그 가족에게 교재, 비품, 장비 또는 유니폼을 구입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GUSD 학교들은 귀 자녀가 양질의 교육 경험을 쌓는데 모든 필요한 물자를 제공한다. 따라서

학급에 필요한 비품 추천 목록이 있지만 이것은 자발적인 일이다. 어떤 학생도 학교에 비품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학교 활동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급식 서비스**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급식 서비스 부서는 전국 학교 점심 프로그램(NSLP), 학교 아침식사 프로그램(SBP), 방과 후 간식 프로그램, 계속되는 여름 급식 옵션(SSFO) 및 신선한 과일 및 야채 프로그램 (FFVP)에 참여하며 과일, 야채 및 우유가 매 식사에 제공된다.

### **2020-2021 무상 및 할인가 급식 신청서**

온라인 신청서: 무상 및 할인가 급식 신청서는 온라인 [mealapp.gusd.net](http://mealapp.gusd.net) 에서 가용하다.

서면 신청서: 초등 학생 – 신청서는 첫 등교일 패킷에 들어있다. 중.고등 학생-신청서는 등록 패킷의 일부로 우송된다. 신입생 신청서는 223 N. Jackson Street, Glendale, CA 91206 에 위치한 웰컴 센터; 학생의 학교 및 349A West Magnolia Avenue, Glendale, CA 91206 에 위치한 영양 서비스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다. 근무 시간은 오전 7:00 – 오후 4:00 까지이며, 전화번호는 (818) 552-2677

가족 당 신청서 한(1) 장을 제출한다. 추가 신청은 처리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 서면 신청서는 학생의 학교 또는 급식 서비스 사무실에 제출한다. 급식 신청서가 처리되는 대로 학생의 급식 자격 현황에 대한 서한을 받게 된다. 신청서를 완전히 그리고 읽기 쉽게 작성한다. 완성되지 않은 신청서는 처리를 지연시킨다. 급식 신청서의 작성 설명은 영어,

아르메니아어, 한국어 및 스페인어로 가용하다. 각 신청서는 고유의 바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서류 신청을 하지 않도록 한다.

급식 비용: 아침식사는 \$1.25 점심은 \$2.75 이다. GUSD 영양 서비스는 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을 위하여 온라인 선지불 시스템을 제공하며 웹사이트 <https://www.ezschoollpay.com> 에서 접속할 수 있다. 학교 카페테리아 또는 영양 서비스 사무실에서 현금 또는 수표로 선지불을 할 수 있다.

급식 계좌에 잔액이 부족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후견인에게 통고된다. 초등 학생인 경우 계좌의 잔고가 마이너스(-) \$10.00, 중고등 학생인 경우 마이너스(-) \$2.75 에 도달하면 학부모/후견인들은 전화/이메일로 요금 지불을 상기시키는 연락을 받을 것이다. 학생의 계좌 잔액이 마이너스(-) \$20 에 도달하는 경우, 학부모/후견인은 우편으로 요금 지불을 상기시키는 메모를 받을 것이다.

## **급식 요금 방침**

무료로 급식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을 제외하고, 학생들은 매 급식을 기준으로 지불하거나 사전에 지불할 수 있다.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학교 급식 구입을 위해 각 학생으로부터 받은 지불금을 나타내는 계정을 유지해야 한다.

학사년도 초 및 학사년 동안 학생이 등록할 때마다, 학부모/후견인은 교육구의 급식 지불 방침을 통보받고 가능할 때마다 급식 비용을 미리 지불하도록 권장된다. 이 정보는 교육구의 “학부모/후견인 및 학생을 위한 정보” 책자에 게시되어 있다.

교육구는 학교 급식 비용 미지급 징수를 위해 학생에게 직접 어떤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성적표, 졸업장, 학교 행사 또는 활동에 참여를 보류할 수 없으며 급식 요금을 미지불 가정에 지불을 위해 인센티브로 사용될 수 없다. 학생들은 어떤 이유로도 급식이 거부되지 않으며 급식 부채와 상관없이 대체 급식이 아닌 상환 가능한 급식을 제공 받게 된다. 학생들은 무료 또는 할인가 급식 혜택을 받거나 체납 부채가 있다는 것이 공공연히 확인되어져선 안된다. (Education Code 49557.5)

## **2017 아동 기아 예방 및 공정한 대우 법**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학교 급식 비용의 전액 또는 할인가를 지불하는 학생이 급식 구입을 위해 현금이나 자신의 계정에 충분한 지불금이 없는 것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급식 요금 방침을 갖고 있다. 급식 요금 방침은 <https://www.gusd.net/Page/13136> 에서 검토하거나 정책의 사본을 위해선 영양 서비스 (818) 552-2677 로 문의한다.

##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지역 복지 정책**

글렌데일 통합교육(GUSD) 지역 복지 정책 (BP 5030 and AR 5030)은 학교 캠퍼스에서 학생 건강에 관한 연방 및 주 규정을 포함한다. 이는 영양 증진 및 교육, 신체활동 그리고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기타 학교 중심의 활동 목표를 포함하고, 학교 캠퍼스에서 가용한 모든 식품 및 음료에 대한 영양 지침을 설명한다. 또한 교육구 복지 리더 쉽, 학교 공동체의 참여, 정책 수준 평가 및 대중에게 정책 및 평가 정보의 가용성에 대해 다룬다. 이 정보는 교육구 복지 위원회에 참여할 방법에 대한 정보를 비롯하여 GUSD 웹 사이트의 정책 및 규정 부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학교 출석**

자녀가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달성하기 위해선 정기적인 학교 출석이 중요하다. 새 학사년이 시작됨에 따라 우리는 학부모가 **매일** 자녀의 학교 출석에 가외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권한다.

**가주 규정법, 타이틀 5, 섹션 421 및 교육법, 섹션 48205:** 교직원이나 의사의 확인 하에 학생은 그의 질병, 격리 수용, 의료 예약(치과, 검안의 포함), 직계 가족원의 장례식 참석 또는 배심원 출두로 인해 결석할 수 있다.

학부모 또는 후견인이 학생의 결석을 서면 요청하고 교장이나 대리가 승인하는 경우, 법정 출두, 자신의 종교 휴일이나 의식 준수, 피정 참여 또는 취업 면담을 포함한, 그러나 이것들에 만 국한되지 않은 정당한 사적 이유로 결석할 수 있다. 종교적 수련회 참여는 학기 당 4 시간을 초과해선 안 된다.

**가주 교육법, 섹션 48980(j):** 상기 타당 사유들로 결석한 학생은 평점 삭감이나 학점 상실을 받지 않으며 적절히 제공되는 결석 동안 놓친 모든 과제 및 테스트를 받을 기회가 주어지고 적절한 기간 안에 만족스럽게 끝나치며 학점을 다 받을 수 있다. 학생이 결석한 과목의 교사가 학생이 벌충할 과제와 그것을 완성할 시간을 정하며 그 테스트와 과제는 학생이 결석 동안 놓친 테스트 및 과제와 어느 정도 동일하나 반드시 똑같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가주 교육법, 섹션 48260:** 풀타임 의무 교육이나 보습 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으로서 타당한 사유없이 한 학사년에 3 일 결석하거나 한 학사년에 3 번에 걸쳐 타당한 사유없이 수업일 동안 30 회 이상 지각, 수업 불참 또는 이것들의 어떤 결합 형태로 수업에 불참하는 학생은 무단 결석으로 간주되며 출석 감독관이나 교육감에게 보고된다.

#### **타당한 사유의 결석 -교육법§ 48205**

- a) 섹션 48200에도 불구하고 학생은 다음의 경우, 결석이 허용된다:
  1. 발병
  2. 카운티 또는 시 보건 관리 지시에 따른 격리
  3. 의료, 치과, 안과 또는 척추 지압 치료
  4. 직계 가족 장례식 참석을 위해 가주에서의 장례식은 1일, 캘리포니아 외부에서의 장례식의 경우 3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5. 법으로 규정된 방식의 배심원 의무 수행
  6. 학생이 양육 부모인 아동의 학교 시간 동안 발병 또는 의료 예약
  7. 학부모 또는 후견인이 학생의 결석을 서면 요청하고 이를 교장 또는 교육위원회에 의해 세워진 일관적 표준에 따라 대리인이 승인할 때 법정 출두, 장례식 참석, 자기의 종교 경축일 또는 의식 준수, 종교적 수련회, 취업 박람회 참여 또는 비영리 단체가 제공하는 입법 또는 사법 절차에 관한 교육적 회의 참석 등을 포함하나 이에만 국한되지 않는 정당한 개인적 사유.
  8. 선거 법 12302 항에 따라 선거 실시를 위한 선거구 위원으로서 봉사
  9. 학생의 직계 가족 구성원의 한 명으로서 교육법 49701에 규정된 대로 전투 지역 배치 또는 전투 지원직으로부터 휴가를 받았거나 귀가한 현역 군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한 목적. 본 문단에 따른 결석은 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기간 동안 승인된다.
- b) 본 조항에 따른 결석생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결석 동안 놓친 모든 과제 및 테스트를 완성하도록 허용되며 적절한 시간 내에 만족스럽게 완성될 경우, 완전 크레딧을 받는다. 학생이 결석한 학과목 교사는 학생이 결석 동안에 놓친 과제 및 과제와 적절하게 동등한 그러나 동일할 필요는 없는 테스트 및 과제를 결정한다.
- c) 종교적 수련회 참석은 학기 당 4 시간을 초과해선 안 된다.
- d) 본 조항에 따른 결석은 일일 출석을 계산 시의 결석으로 간주되며 주 정부가 배당하는 지불액과 무관하다.

- e) 본 조항에서 사용된 “직계 가족” 이란 “피고용인”은 “학생”을 지칭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45194조에 규정된 의미와 동일하다.

### **보안 카메라**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모든 학교에 보안 카메라가 있다. 이 카메라의 주된 목적은 안전을 위하여 학교 주위를 감시하는 것이며, 또한 일부 카메라는 내부에 설치되어 있다. 녹음된 내용은 징계 절차에 사용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안 카메라에 포착된 내용은 지역 법 집행기관에 제공될 수도 있다.

교육구는 학생, 교직원 및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카메라 감시 장비를 사용한다. 이 장비는 언제든지 모니터링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다. 감시 카메라는 일반적으로 “사생활의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공공 장소에서만 사용된다. 공공 장소는 스쿨 버스; 건물 입구; 복도; 주차장; 학생, 직원 및 학부모가 오가는 사무실 앞; 공공 활동 중인 체육관; 카페테리아; 자재실들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감시 카메라가 교육구 건물 또는 교육구 활동의 모든 공공 장소를 커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육구 감시 카메라는 화장실, 라커 룸, 탈의실, 개인 사무실(사무실 소유자에 의한 동의가 있지 않는 한) 또는 교실과 같은 “개인” 영역에는 설치되지 않는다.

### **학생 품행**

효율적 학업은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된, 그리고 평화로운 환경 없이는 불가능하다. 학교 환경은 폭력, 무기, 편견 또는 학대를 용납하지 않는다. 학생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자녀 학교의 규칙들을 숙지하도록 한다. 아래는 학생 품행을 규제하는 가주 법 및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방침 및 규정의 일부이다.

**학생에 대한 책임 부과 의무 – 교육법, 섹션 44807:** 모든 교사/행정관은 학생들이 교정에 있는 동안, 등.하곳길에, 점심시간 동안, 교정 안 밖에서, 학교 후원 행사 참여 왕복 동안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도록 한다. 학부모는 모든 글렌데일 학교들에서 품행 규칙을 받아들 수 있다.(법적 참조: 교육법, 섹션 48900, 48900.2, 48900.3, 48900.4, 48900.7)

행정관은 교육구의 학생, 교사, 직원 및/또는 행정관들의 훈육, 교육환경, 안전 또는 전반적 안녕에 대한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거나 또는 심각한 위협을 주는 교정 밖 또는 학교 활동에서 발생하는 학생 비행에 대한 정보가 입수되면 적절한 조치(정학 또는 퇴학)를 취할 수 있다.

**학생 책임 – 교육법, 섹션 48908 및 5 CCR, 섹션 300:** 모든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정시에 등교하고, 학교 규정을 준수하고, 교사와 기타 권위인의 모든 지시에 대해 신속히 복종하고, 학업에 매진하고, 교사와 기타 권위인을 존중하고, 급우에 대해 친절과 예의를 보이며 신성 모독어, 비속어 사용을 삼가한다.

**아동 수색(GUSD 교육위원회 방침 5145.12):** 학교 인사는 법이 허용할 때마다 또는 수색을 통해 학생이 법을 위반하거나 교육구나 학교의 규칙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확보할 만한 타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학생 개인과 자동차를 포함하여 그의 소유물을 수색할 수 있다. 여기에는 휴대폰 정보, 텍스트 메시지 및 영상에 대한 수색이 포함된다. 온라인 약자 괴롭히기 및 온라인 성희롱은 용납되지 않는다. 학부모는 자녀의 휴대폰 상의 불법적일 수 있는 영상 및 텍스트 메시지에 대해 알고 있을 필요가 있으며 그 위법 행위를 멈추게 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지품 반입 방지를 위해 락커 및 학급에 대한 무작위 수색이 실시될 수 있으며 수색건 및/또는 금속 탐지기가 사용될 수도 있다. .



**무기 - GUSD 교육위원회 방침 5131.7:** 가주 및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안전한 교육 환경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으며 페퍼 스프레이, 최루 가스 및 레이저 포인터를 포함하여 모든 총기, 칼, 폭발물 또는 기타 위험물들의 소지는 불법이다.

**전자 기기의 소지 및 사용 – 교육법 섹션 48901.5 및 GUSD 교육위원회 방침 5131:** 학생은 수업일 동안, 학교 후원 활동 참여 동안, 또는 교육구 직원의 통제 또는 감독 하에 있는 동안 휴대폰, 스마트폰, 랩탑 컴퓨터, 태블릿 기기 또는 기타 커뮤니케이션 장비같은 전자 기기의 소지가 허용된다. 전자 기기는 교장 판단에 따른 학교 관련 비상 시(예: 교정 패쇄, 지진 또는 그와 같은 사건의 발생) 또는 건강 상의 이유로 사용될 수 있다.

수업일 또는 기타 학교 활동 동안 이러한 기기의 부적절한 사용은 학교 활동의 방해로 간주되며 징계조치가 따르게 된다. 학교 활동을 방해하는 전자 기기는 행정관 또는 대리의 재량에 따라 압수될 수 있으며 학생의 부모나 후견인에게 통고되고 학교가 끝날 때 학부모/후견인 또는 학생에게 돌려준다. 교육구는 이러한 물품들의 파손, 분실 또는 도난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약자 괴롭히기 신고 절차 – 교육법, 섹션 234.4 및 32283.5 및 GUSD 교육위원회 방침 5131:** 학생들은 자신이 약자 괴롭히기를 당하거나 또는 다른 학생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 학교 교직원에게 알릴 것이 권장된다. 또한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학생들이 비밀이 유지되며 익명으로 협박이나 사고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수립해야 한다. 약자 괴롭히기를 목격한 학교 교직원은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사고를 중지시키기 위해 개입해야 한다(교육법 234.1) 학생들은 그들이 약자 괴롭히기로 간주되는 행위에 대한 불만제기를 교사 또는 행정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약자 괴롭히기에 대한 불만 제기는 학교 차원의 불만 신고 절차에 준하여 조사되고 해결된다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차별, 괴롭힘, 협박 및 약자 괴롭히기의 금지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약자 괴롭히기 및 사이버 괴롭히기 예방을 위해 학생들과 함께 일하는 모든 교직원에게 연례 교육이 제공된다. 교직원 교육을 설명하는 교육 웹 페이지의 목록은 <https://www.cde.ca.gov/ls/ss/se/bullyres.asp> 에서 찾을 수 있다. 귀하 또는 귀 자녀가 캠퍼스, 학교 행사 또는 학교 등.학교 길에 어떤 괴롭힘을 겪는 경우, 이 행동을 식별하고 중단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 교육구 카운슬링 연락 담당자에게 연락한다: (818) 241-3111 내선 1285.

**자살 방지:** GUSD는 청소년 사망 원인의 주요인이 자살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이 문제를 심각히 다룬다. 자살 행위와 이것이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예방책과 중재 절차를 수립한다

**정학 및 퇴학 규정 – 교육법, 섹션 48900:** 학생은 교육감 또는 그가 등록되어 있는 학교의 교장이 아래 (a)부터 (r)까지의 항목에 정의된 어떤 행위를 그가 범했다고 판정하지 않는 이상 학교로부터 정학 또는 퇴학 권고를 받을 수 없다:

- (a) (1) 타인에 신체 상해를 가하거나 시도하거나 협박함.
- (2) 정당방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에 고의적으로 완력이나 폭력을 사용함.
- (b) 학생이 총기, 칼, 폭발물 또는 기타 위험물 가운데 어떤 것을 학교의 유자격 직원으로부터 허가서를 발부받고 그것을 교장이나 그의 대리가 승인하여 소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물건들을 소지, 판매 또는 공급함.
- (c) 보건 및 안전법 10 부 2 장(11053 조 이하)에 열거된 통제 물질, 알코올성 음료 또는 모든 종류의 마취 물질들을 비합법적으로 소지, 사용, 판매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 하거나 그 영향 하에 있었음.
- (d) 보건 및 안전법 10 부 2 장(11053 조 이하)에 열거된 통제 물질, 알코올성 음료 또는 모든 종류의 마취 물질들을

비합법적으로 제공, 판매 알선 또는 협상을 하고 나서 타인에게 다른 액체, 물질 또는 물건을 그것들이 통제된 물질, 알코올성 음료 또는 마취 물질인 양 판매, 전달 또는 공급함.

(e) 절도 또는 착취를 범하거나 시도함.

(f) 학교 또는 개인 소유물을 파손하거나 시도함.

(g) 학교 또는 개인 소유물을 절도하거나 시도함.

(h) 담배 또는 권련, 여송련, 미니 여송련, 클로브 권련, 무연 담배, 스너프, 씹는 담배 및 베타를 포함한, 그러나 이것들에만 국한되지 않은 토배코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제품을 소지 또는 사용함. 그러나 이 항목은 학생의 이사가 처방한 물품의 소지나 사용을 금하지는 않음.

(i) 음란 행위를 하거나 습관적으로 신성 모독어 또는 비속어를 사용함.

(j) 보건 및 안전법 11014.5 에 정의된 어떤 종류의 마약 사용 도구를 불법적으로 소지, 제공, 판매 알선 또는 협상함

(k) (1) 학교 활동 방해 또는 수퍼바이저, 교사, 행정관, 학교 경찰 또는 직무 수행 중의 기타 학교 인사의 정당한 권위에 고의적으로 도전함.

(2) 제 48910 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치원 또는 모든 1-3 학년을 포함한 학년에 등록된 학생은 (1) 항에 명시된 어떤 행위로 인해 정학되지 않으며, 이러한 행위는 유치원 또는 1-12 학년을 포함한 학년에 등록된 학생들에 대해 퇴학이 권고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이 단락은 2020 년 7 월 1 일에 무효화 된다.

(3) 48910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20 년 7 월 1 일부터 유치원 또는 1-5 학년을 포함한 학년에 등록된 학생은 (1)항에 명시된 행위로 인해 정학되지 않으며, 이러한 행위는 유치원 또는 1-12 학년을 포함한 학년에 등록된 학생에 대해 퇴학이 권고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4) 48910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20 년 7 월 1 일부터 6-8 학년을 포함한 학년에 등록된 학생은 (1)항에 명시된 행위로 인해 정학되지 않는다. 이 단락은 2025 년 7 월 1 일에 무효화 된다.

(l) 알면서도 학교나 개인의 도난품을 수취함.

(m) 모조 총기의 소지, 본 항목에서 호조 총기란 그 외관이 기존의 실제 화기와 매우 유사하여 보통 사람이 그것을 보고 실제 총기로 오해할 수 있는 모조품을 의미함.

(n) 형법 261, 266c, 286, 287, 288 또는 289 또는 이전 섹션 288a 에 정의된 대로 성폭행을 범했거나 시도한 경우 또는 형법 243.4 에 정의된 성적 구타를 범함.

(o) 학교의 훈육 징계절차에 있어서 피해를 고발하는 증인 또는 증인 학생을 그가 증언 못하도록, 또는 그 학생의 증언에 대한 보복의 의도로, 또는 그 모든 양쪽의 이유로 그를 괴롭히거나 협박하거나 위협함.

(p) 처방약 SOMA(이완/진통제) 를 불법적으로 제공하거나 판매하거나 판매 알선 또는 협상함.

(q) 타 학생을 괴롭히거나 괴롭히려고 시도함. 본 항목에서 “괴롭힘”이란 교육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든 아니든 학생 단체 또는 조직에서 신입 신고식 또는 예비 신입 신고식의 수단으로 행해지는 행위를 말하며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학생에게 심신의 상해, 창피 또는 굴욕을 야기시키는 심각한 신체 또는 정신적 해를 초래할 수 있다. 본 항목의 “괴롭힘”에는 스포츠 행사 또는 학교 후원 행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r) 약자 괴롭히기 행에 관여함. 이 항목에서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약자 괴롭히기”란 글 또는 전자 기기를 통한 대화를 포함하여, 그리고 48900.2, 48900.3 또는 48900.4 에 정의된 대로 한 학생 또는 학생 그룹에 의해 행해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행위를 포함하여 아래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결과를

가져 오거나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또는 만연적 신체 또는 구두적 행위를 의미한다.

(A) 온당한 학생(들)이 그의 신체 또는 물건에 해를 받는다고 두려움을 갖게 한다.

(B) 온당한 학생의 신체 또는 정신적 건강에 상당한 해를 끼친다.

(C) 온당한 학생의 학업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끼친다.

(D) 온당한 학생이 학교가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 또는 특권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받는 학생의 능력에 상당한 지장을 끼친다.

(2) (A) “전자 행위”란 전화, 무선 전화, 기타 무선 대화기, 컴퓨터 또는 페이지를 포함하나 이에만 국한되지 않는 전자 기기를 통해 학교 안 밖에서 생성 또는 전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와 같은 커뮤니케이션의 전달을 의미하며 다음에 국한되지 않는다:

(i) 메시지, 텍스트, 소리, 비디오 또는 영상

(ii)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만 제한되지 않는 소셜 네트워크 인터넷 웹사이트 상의 게시물:

(I) burn page 에 게시하거나 그런 페이지 만들기, “Burn page”란 (1)항에 열거된 것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효과를 얻기 위해 만들어진 인터넷 웹사이트를 말한다.

(II) (1)항에 열거된 것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효과를 얻기 위해 실제 다른 학생의 그럴듯한 가상을 만든다. “그럴듯한 가상”이란 한 학생을 왕따시킬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동의없이 그를 모방하여 타 학생들이 그 학생이 만들어진 가상의 학생이라고 믿었거나 믿게 하는 것이다.

(III) (1)항에 열거된 것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효과를 얻기 위해 거짓 프로파일을 작성한다. “거짓 프로파일”은 학생이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다른 학생의 유사성 또는 특성을 사용하는 프로파일을 의미한다.

(iii) (I) 사이버 성적 괴롭힘의 행위.

(II) 이 조항의 목적상, “사이버 성적 괴롭힘”은 학생이 다른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전자 행위를 수단으로 (1)항의 부조항 (A)-(D) 에 설명된 하나 이상의 영향력을 갖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될 수 있는 사진 또는 기타 영상 녹화물을 유포하거나 권유하거나 유포하도록 선동함을 의미한다. 이 부조항에 설명된 대로 사진, 영상 녹화물 또는 기타 전자 행위로부터 식별이 가능한 미성년자의 나체, 반나체 또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사진 또는 기타 영상 녹화물의 묘사를 포함한다.

(III) 이 조항의 목적상, “사이버 성적 괴롭힘”은 심각한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정치적 또는 과학적 가치 또는 운동 경기나 학교가 인가한 활동들과 관련된 묘사, 서술 또는 영상은 포함하지 않는다.

(B) (1) 항 및 (a) 부조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적 행위는 단지 그것이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었다거나 현재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다는 근거만으로 만연한 행위가 되지 않는다.

(3) “온당한 학생”이란 자기 연령대의 사람의 행위에 있어서 평균적인 배려, 능력 및 판단력을 보이는 예외적인 필요를 가진 학생 또는 예외적인 필요를 가진 같은 연령의 학생을 포함하나 이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s) 학생의 행동이 교육감이나 교장의 관할 하에 있는 학교 내 또는 교육구 내에서 일어나는 학교 활동 또는 학교 출석과 관련되지 않는 이상 본 항에 열거된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도 학생은 정학이나 퇴학될 수 없다. 학생은 본 항에 열거되고 아래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그러나 이 시간들에 만 한정되지 않은, 학교 활동이나 출석과 연관된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정학 또는 퇴학을 받을 수 있다:

(1) 학교 운동장에 있는 동안

(2) 등.하곳길 동안

(3) 캠퍼스 안 밖에서의 점심 시간 동안

(4) 학교 후원 행사 참여 또는 그 곳에 오가는 동안

(t) 형법 제 31 조에 정의된 대로 타인에 대한 신체 상해 또는 시도를 도와주거나 교사하는 학생은 본 항에 따라 퇴학은 아니라도 정학될 수 있다. 그러나 희생자가 큰 신체 상해를 입은 신체 폭력 범죄의 보조자 또는 교사자로서 청소년 법정에 의해 판정받은 학생은 (a)항에 따라 징계된다. (u) 본 항에 언급되는 학교 자산에는 전자 서류 및 데이터 베이스가 포함되며 이것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v) 교육감이나 교장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본 항에 의거하여 징계받은 학생에게 정학이나 퇴학 대신 연령에 적합하며 교육법 48900.5 에 명시된 학생의 비행을 다루고 교정하도록 마련된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

(w) (1) 입법의 취지는 무단 결석, 지각 또는 학교 활동에 불참하는 학생에 대해 정학 또는 퇴학의 대안을 부과하는 것이다.

(2) 이는 더 나아가 회복적 사법 관행, 외상 정보 관행, 사회 및 정서적 학습 및 학교 전반에 걸친 긍정적 행동 중재 및 지원을 포함한 다중 계층 지원 서비스가 학생들이 중요한 사회 및 정서적 기능을 얻고, 외상 관련 반응을 변형시키도록 지원받고, 자신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학교 공동체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의미있는 방법의 개발을 돕는 데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 **가주 교육법, 섹션 48900.2**

섹션 48900 조에 명시된 이유에 추가하여 학생은 교육감 또는 그가 등록되어 있는 학교의 교장이 그가 212.5 조에 정의된 성희롱을 범했다고 판단하면 정학 또는 퇴학이 권고될 수 있다. 본 챕터의 목적상 212.5 조에 설명된 행위는 희생자에게 그의 학업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위협적이고 적대적이고 또한 불쾌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정도로 심각할 수 있으므로 같은 성별의 분별되는 사람에 의해 다루어져야 한다. 본 항은 유치원 및 1-3 학년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가주 교육법, 섹션 48900.3**

섹션 48900 및 48900.2 에 명시된 근거에 추가하여, 4-12 학년생은 교육감 또는 그가 등록되어 있는 학교의 교장이 그가 233 조 (e) 항에 정의된 대로 증오 범죄를 유발, 시도, 협박 또는 참여했다고 판단하면 정학 또는 퇴학이 권고될 수 있다.

### **가주 교육법, 섹션 48900.4**

섹션 48900 및 48900.2 조에 명시된 근거에 추가하며 4-12 학년생은 교육감 또는 그가 등록되어 있는 학교의 교장이 그가 교직원이나 학생들에게 위협적 또는 적대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실질적으로 학업을 방해하고 상당한 무질서를 초래하고 교직원이나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실제적이고 상당히 기대된 효과를 가져올 정도로 심각한 괴롭힘, 협박 또는 위협 행위를 의도적으로 범했다고 판단하면 정학 또는 퇴학이 권고될 수 있다.

### **가주 교육법, 섹션 48900.5**

(a) 섹션 48922.2 에 설명된 바와 같이 감독된 정학을 포함하며 정학은 적절한 행위를 가져오기 위한 기타 교정 수단이 실패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된다. 교육구는 사용된 다른 교정 수단들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학생 기록부에 보관할 수 있으며 그것은 섹션 49069 에 따라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나 섹션 56026 에 설명된 대로 교장 또는 교육감은 예외적 필요를 가진 학생을 그가 섹션 48900 의 (a), (b), (c), (d), 또는 (e) 항을 범했거나 그의 존재가 타인에 위험이 된다고 결정할 경우, 첫 위반 시 섹션 48900 에 설명된 어떤 이유로 인해 미국 연방 법전 타이틀 20 의 1415 조에 따라 정학될 수 있다.

(b) 기타 교정 수단에는 다음 것들이 포함되나 이것들에 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1) 학교 인사, 학생의 부모/후견인 및 학생 간의 면담

- (2) 케이스 관리 및 상담을 위해 학교 카운슬러, 심리학자, 사회 복지사, 아동 복지 출석 인사 또는 기타 학교지원 서비스인 소개.
- (3) 학생 및 학부모와 협동으로 행동을 평가하고 행동 문제를 다룰 개별 계획안을 수립하고 실행할 연구팀, 지도팀, 자원팀 또는 기타 중재 관련팀.
- (4) 개별 교육 프로그램 작성 목적을 위해 또는 1973 년의 연방 재활 법 1973(29 U.S.C. Sec. 794(a))의 섹션 504 에 준하여 채택된 계획안을 포함한 포괄적 심리 또는 교육심리 평가 의뢰.
- (5) 친 사회적 행동 또는 분노 관리를 가르치는 프로그램 등록.
- (6) 정의 회복 프로그램 참여.
- (7) 교정에서 수업일 동안 실시하는 단계적 중재로 긍정적 행동 지원.
- (8) 특정 행동 문제를 다루는 방과 후 프로그램 또는 학생을 긍정적 활동 및 행동에 노출시킨다. 여기에는 지역 및 커뮤니티 단체와 협조 하에 운영되 것들이 포함되나 이들에 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9) 섹션 48900.6 에 설명된 대안 가운데 하나

### **가주 교육법, 섹션 48900.7**

- (a) 섹션 48900, 48900.2, 48900.3 및 48900.4 에 명시된 이유에 추가하여 학생은 교육감 또는 그가 등록되어 있는 학교의 교장이 그가 교사인 학교 재산 또는 그 모두에 대해 테러 위협을 가했다고 판단하며 정학 또는 퇴학이 권고될 수 있다.
- (b) 본 섹션의 목적 상 “테러 위협”에는 서면으로든 구두로든 성명 발표가 포함되는 데 그것을 비록 실행할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려는 구체적 의도 하에 죽음, 타인에 대한 심한 신체 상해 또는 \$1,000. 이상의 재산 파손을 초래하는 범행을 행하겠다는 의도적 위협을 하는 사람에 의한 것으로 그것은 표면상 그리고 그 성명이 발표되는 상황 하에서 그것이 매우 명료하고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이어서 위협 대상에게 테러 목적의 중대성 그리고 위협의 즉각적 실해 가능성을 전달하여 그가 자신이나 가족의 안전 또는 학교, 자기 개인이나 가족의 재산 보호에 대해 지속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한다.

### **전자 신호 장치**

**가주 교육법, 섹션 48901.5:** 교사 및 교장의 사전 허가없이 교실에서 전자 신호 장치를 학생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것은 학교의 교육 과정 및 훈육을 방해하고 손상시킴으로 금지된다. 유일하게 허용되는 사용은 면허가 있는 의사에 의해 학생이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결정되는 경우 용인된다. 위반한 학생은 적절한 징계를 받게 된다. 학생이 학교 현장에서 교직원의 감독 및 통제 하에 있는 동안 스마트폰 사용은 교육구, 차터 스쿨 및 카운티 학교들에 의해 금지될 수 있다. 일반 학생들과는 다른 건강 및 특수 교육 제한 또는 사용도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밀 기록 보관 및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하고 학생 기록부에 보관해야 한다.

### **폭력 범죄의 피해자**

**USC 7912:** 학교 내 또는 학교 운동장에 있는 동안 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된 학생은 월력으로 10 일 이내에 공립 차터 스쿨을 포함하여 해당 교육구 내에서 안전한 공립 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교육구 관할 지역 내에 다른 학교가 없는 경우, 교육구는 교육구 간의 전학 허가를 통해 학생을 받아들일도록 이웃 교육구와의 계약과 같은 다른 적절한 옵션을 탐색하도록 권장되지만 필수는 아니다. 형법에서 폭력적인 범죄 행위의 주요 사례는 살인 시도, 심각한 신체 부상을 동반한 폭행, 치명적인 무기로의 공격, 강간, 성적 구타, 강도, 강탈 및 증오 범죄가를 포함한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선 (818) 241-3111 내선 1285 로 연락한다.

### **정신 건강 서비스**

GUSD 학생 상담 의뢰를 시작하기 위해, 학부모/후견인은 학생 복지 부서 디렉터, Dr. Ilin Magran 에게 (818) 241-3111 내선 1500 으로 연락하거나, 의뢰 제출을 위해 웹사이트 [www.GUSD.net](http://www.GUSD.net) 를 접속할 수 있다. 이 부서는 다음 제공자들 중 한 곳과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들과 협력할 것이다: GUSD 인턴 아카데미, 해당 부서에 배정된 GUSD 치료사 및 지역 정신 건강 기관들.

## **자살 예방 방치**

**가주 교육법, 섹션 215:** 학생 자살률은 학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걱정이다. 캘리포니아에서 12 세 및 그 이상의 아동 1 명이 매 5 일마다 자살로 사망한다.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라 지역 교육구는 연령에 적합하고 민감한 지역 방침들에 따라 7-12 학년을 위해 자살 예방 교육을 제공할 것이 요구된다. 입법자들은 개선된 서비스에 대한 정신 건강 및 조정이 초등 학생들에게까지 확대함을 결정하였다. 모든 교직원 교육자들이 공유하는 목표는 모든 학생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다.

## **긍정적인 행동 중재 및 지원(PBIS)**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정학의 대안으로 긍정적인 행동 중재 및 지원을 장려한다. 긍정적인 행동 중재 및 지원은 모든 학생이 존중하며 책임감 있는 그리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지원하는 행동들을 배우고 연습을 돕도록 전교 및 학급 전략들을 사용하는 데 집중한다. 캠퍼스에서 학생과 모든 성인들 간의 견고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본 계획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이다.

## **양육권에 관한 법 통고**

캘리포니아 법(가족법 3010 항) 하에, 각 부/모는 자신의 자녀 양육권에 대해 동등한 권리가 있다. 이는 가족법 3010 항을 준수하는 글렌데일 통합교육구의 방침에 따르면 어느 부/모라도 적절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학교에서 자녀를 데려갈 수 있으며 그 외에 자녀의 건강, 교육 및 안녕에 관해 결정할 수 있다.

가족법 3025 항은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와 관계된 학교 기록에 대한 접근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부/모 중 누구라도 학교가 소지한 의료 기록을 포함하여 자녀의 학교 기록을 보는 것을 허용할 것이다.

법원이 아동 방문 또는 양육 및/또는 아동에 관한 정보 접근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한 경우, 각 자녀의 학교에 판독이 가능한 도장이 찍힌 법정 명령서, 판사가 서명한 사본을 즉시 제공하는 것은 양 부/모의 책임이다. 법원 명령서의 사본은 명령을 내린 법원 사무실에서 얻을 수 있다

서명된 법정 명령서의 확인없이 한쪽 부/모의 구두 또는 서면 주장은 학교가 다른 쪽 부/모에게 아동 및/또는 아동의 기록에 대한 접근을 거절할 이유로 충분치 않다. 글렌데일 통합교육구의 학교들은 가장 최근에 제공된 양육권 법정 명령을 따를 것이나 명령의 부재 시,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부/모에게 동등한 양육권을 부여한다.

학부모들에게 자녀 양육권 분쟁에 학교 직원을 연관시키지 말도록 요청된다. 학교가 양육권에 관련된 최신 정보를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실치 않은 부/모는 학교가 판독이 가능한 가장 최근 법정 명령서의 사본을 제공받았는지 확인을 위해 자녀의 학교에 연락해야 한다.

## **담배없는 환경**

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법, 섹션 104420 및 104495 에 따라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금연 환경을 지원한다. 학생, 교직원 및 방문객의 흡연은 교육구 시설 내에서 항상 금지되며(전자 담배는 담배 제품으로 간주되며 증발기는 마약 관련 도구로 간주됨) 이 방침 집행에 관한 문의는 학교 행정관에게 할 수 있다.

### **캠퍼스 밖에서의 점심 식사**

**가주 교육법, 섹션 44808.5:**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교육위원회는 크레센타 밸리 고등학교에 등록된 학생들이 점심 시간 동안 학교 운동장을 떠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교육구나 임원 또는 교직원은 이 섹션에 따라 학생이 학교 운동장을 떠난 시간 동안 학생의 행동이나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다.

### **대안 학교**

**가주 교육법, 섹션 58501:** 교육구는 학부모에게 대안 학교의 기회에 대해 통고하도록 요구된다. 가주 법은 모든 교육구가 대안 학교를 제공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교육법 58500 은 대안 학교를 다음과 같이 지정된 방식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학교 또는 학교 내의 독립된 학급 그룹으로 정의한다:

- 학생들의 자립심, 솔선력, 친절, 자발성, 임기응변력, 용기, 창의성, 책임감 및 기쁨의 긍정적 가치들을 개발시킬 기회들을 최대화한다.
- 학생들이 스스로의 향학열로 학습할 때 최상의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식한다.
- 학생 스스로의 동기 유발을 최대화하고 학생들이 자기 시간에 자신의 관심 분야를 추구할 것을 권장하는 면학 분위기를 유지한다. 이들 관심 분야들은 학생에 의해 전적으로 찾아질 수도 있다.
- 교사, 학부모 및 학생들이 학습 과정과 내용들을 협동적으로 개발하는 기회를 최대화한다. 이 기회는 지속적이며 영구적인 과정이 될 것이다.
-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학교가 위치한 지역사회 등을 포함하며 변하는 세계에 계속 대응해 가는 기회를 극대화한다.

**보습 고등학교 – 알렌 F. 데일리 고등학교** – 자신의 거주지 고등학교에서 졸업을 위해 충분한 학점을 성취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자발적인 프로그램으로, 본 프로그램은 학점 이수를 촉진하고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로부터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독립적 학습 프로그램 – 버두고 아카데미** – 모든 학년 수준에서, 자신의 아동이 독립적 학습 프로그램에 등록되길 원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자발적인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은 집에서 공부하는 동안 학과목 학습을 완료하고 성적/학점을 취득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학과목의 숙달 및 과제들에 대한 진도 평가를 위해 자신의 버두고 아카데미 교사들과의 매주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 9 학년부터 12 학년의 모든 학과목을 완료한 고등학생은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졸업장을 취득한다.

**커뮤니티 주간 학교 – 주얼 시티 커뮤니티 주간 학교 CDS** – 학생 안전 및/또는 품행에 대해 주 교육 규정을 위반한 학생은 비자의적으로 이 학교에 배정된다. 학생은 한 학기부터 한 학사년도까지 매일 클래스에 출석한다. 학생은 학업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거지 학교로 돌아가기 전에 적절한 감정 및 행동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학부모, 학생 또는 교사들이 대안 학교들에 대해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는 경우, 카운티 교육감, 교육구 행정실 및 각 학교의 교장실에서 관련 법의 사본을 얻어볼 수 있다.

**가주 교육법, 섹션 48208, 48980, 48206.3:** 일시적으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해 집과 병원 학업 지도가 가용하다.

### **성희롱**

**가주 교육법, 섹션 231.5:** 각 교육구가 성희롱에 관한 문서화된 방침을 수립하도록 요구하며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교육위원회 방침 5145.7(하단)은 이 요구에 준한 것이다.

**성희롱(GUSD 교육위원회 방침 5145.7)** 교육위원회는 괴롭힘 및 차별이 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유지하는데 전력한다. 위원회는 학교 또는 학교 후원 또는 학교 관련 활동들에서 학생의 성희롱을 금지한다. 위원회는 또한 성희롱 혐의에 대해 신고하거나 고발하거나 사건에 대하여 증언하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고소인을 지지하는 사람에 대한 보복성 행동 또는 행위를 금지한다.

괴롭힘을 받은 학생이나 그 학생의 부모/후견인 또는 제 3 자가 교육구의 절차에 따라 불만을 제기하거나 혹은 피해 학생을 위한 조처 요청에 상관없이 있음직한 성희롱에 대해 알고있거나 마땅히 알고있어야 하는 학교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밝히고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처를 취하도록 즉시 조처를 취해야 한다.

- 학부모/후견인 또는 학생이 학생의 신원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교육구 인사는 공식적인 조처를 시작하지 않고 주장되는 괴롭힘의 영향을 제한하고 그것의 재발을 방지한다.
- 이러한 조치에는 제기인의 신원 비밀을 유지하고 제기인과 학교 공동체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제한된 조사 활동 및 치가 포함된다
- 이러한 조치에는 불만 제기인에게 카운슬링 서비스 ; 비행이 발생한 장소 또는 활동에 관찰, 감독 또는 보안 확대 제공; 학생과 직원을 위해 훈련 및 교육 자료 제공; 또는 성폭력에 대한 학교 방침 변경 및 홍보와 같은 서비스 제공을 포함할 수 있다.
- 이는 또한 인종, 피부색, 출신국, 장애 또는 연령에 근거한 괴롭힘에도 적용한다.

교육구는 학교 또는 학교가 후원하거나 관련된 활동들에서 다른 학생이나 성인에 의해 성희롱을 받았거나 받고있고 또는 학교 밖의 성희롱이 학교 생활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는 모든 학생은 즉시 자신의 교사, 교장 또는 기타 고용한 직원에게 연락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성희롱 사건을 신고를 받거나 목격한 모든 교직원은 교장 또는 교육구 법 준수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일단 통보되면, 교장 또는 준법 감시인은 첨부된 행정 규정에 명시된 대로 혐의 사실을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교육감 또는 피 지명자는 교육구의 성희롱 방침을 강화하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 A. 설명/정보: 교육감 또는 피 지명자는 교육구의 모든 학생들이 성희롱에 관해 연령에 적절한 설명 및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설명과 정보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성희롱이 같은 성별의 사람들 간에 발생할 수 있으며 성폭력을 수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어떠한 행위 및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2. 어떤 상황에서도 성희롱을 참고 견뎌선 안 된다는 명료한 메시지
  3. 괴롭힘의 희생자가 불만을 제기를 하지 않아도 성희롱의 사례 목격 시 신고하도록 권장
  4. 학생 안전은 교육구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며 성희롱 사건 피해자 또는 성희롱 사건을 신고한 기타 다른 사람이 관련된 별도의 규정 위반은 각기 별도로 다루어지며 이것이 성희롱 불만의 접수, 조사 또는 해결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
  5. 고소인이 서면, 시간제약 또는 다른 고소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생이 고소인이나 피고소인 또는



성희롱 희생자에 해당되는 경우, 모든 성희롱 주장을 조사할 것이며, 성희롱을 중지하고 재발을 방지하며 학생에게 미치는 계속되는 영향을 다루기 위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명료한 메시지

6. 교육구의 불만 조사 및 성에 근거한 괴롭힘을 신고할 사람에 대한 정보
7. 교육구가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민사 또는 형사 소송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필요한 경우, 학생과 부모/후견인에게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제기할 권리에 관한 정보
8. 교육구는 성희롱 고발자 또는 희생자 학생 및/또는 다른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교 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시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조치로 인해 주장되는 성희롱 고발자나 희생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명료한 메시지

**B. 불만제기 절차 및 징계 조치**

1. 학생에 의한 또는 학생에 대한 성희롱 불만 제기는 법과 AR 1312.3 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교육구 절차-일반적 불만 제기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해결해야 한다. 교장은 학생과 학부모/후견인에게 AR 1312.에 의거해 성희롱을 고발할 수 있으며 어디에서 이 절차 사본을 얻을 수 있는지 통지할 책임이 있다.
2. 성희롱 신고를 조사하여, 이 방침을 위반하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가담한 모든 학생은 징계 조치된다. 4-12학년생의 징계 조치는 사건의 전체 상황을 고려하여 징계하며, 징계조치에는 정학 및/또는 퇴학을 포함할 수 있다.
3. 성희롱 신고를 조사하여, 학생에 대한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가담한 것이 밝혀진 모든 고용인은 해당되는 방침, 법 및/또는 단체 교섭 합의에 따라 해고를 포함하는 징계 조치된다.

**C. 기록 유지**

교육감 또는 피 지명자는 교육구가 학교들에서 반복적 성희롱을 주시하고 다루고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보고된 성희롱 케이스들의 기록을 보관한다.

**성희롱(GUSD 행정 규정 5145.7)** 교육구는 1972 교육법 개정의 타이틀 IX 및 가주 교육법 234.1 을 비롯하여 행정 규정 1312.3 – 일반적 불만제기 절차 하에 성희롱 불만 제기의 조사 및 해결을 위한 준수 노력을 조정하는 책임자로 다음의 인사를 지정한다. 조정인/법 준수관(들)은 다음에서 연락할 수 있다:

Assistant Superintendent of Educational Services (교육 서비스-부교육감)  
223 North Jackson Street  
Glendale, CA 91206  
(818) 241-3111, 내선 1208  
[publicinfo@gusd.net](mailto:publicinfo@gusd.net)

A. 금지된 성희롱에는 다음 상황 하의 교육 환경에서 동일한 또는 반대 성별의 타인에게 이루어진 달갑지 않은 성적 추근덤, 원치 않는 성적 호의 요구 또는 기타 원치 않는 성적 성질의 구어, 시각 또는 신체적 행위들이 포함되나 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법 212.4 CCR 4916)

1. 그 행위에 대한 순응은 노골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학생의 학업적 신분 또는 진도의 조건이 된다.
2. 한 학생에 의한 그 행위에 대한 순응 또는 거부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학업 결정의 근거로 사용된다.
3. 그 행위는 학생의 학업적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위협적 적대적이거나 불쾌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을 갖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
4. 학생에 의한 그 행위에 대한 순응 또는 거부는 모든 교육구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또는 그것을 통해 가용한

혜택 및 서비스, 아너스,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결정에 관한 근거로 사용된다.

B. 교육구에서 금지되고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의 예는 다음 것들을 포함하나 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1. 반기지 않는 또는 불쾌한 결눈질, 성적 장난질 또는 추근거림
2. 반갑지 않은 성적 비방, 욕, 협박, 막말, 비하어 또는 성적으로 모멸적인 말
3. 상대방D; 신체에 대한 구체적 언급 또는 기타 지나친 사적 대화
4. 성적 농담, 경멸적인 포스터, 메모, 이야기, 만화, 그림, 사진 또는 성적 몸짓 또는 컴퓨터로 만든 성적 성질의 영상
5. 성적 소문 퍼뜨리기
6. 대부분이 한 쪽 성별로 이루어진 학급에 등록된 학생에 대한 놀림 또는 성적 언급
7. 신체 마사지, 붙잡기, 애무하기, 타격하기 또는 가볍게 닿기
8. 상대방의 신체 또는 옷을 성적으로 만지기
9. 성별에 근거해 개별적으로 지시된 학교 활동에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방해하거나 가로막기 또는 신체적 방해
10. 성적으로 암시적인 물건 보여주기
11. 성폭행, 성적 구타 또는 성적 강요
12. 위에서 설명한 언급, 단어 또는 영상을 포함한 전자 통신

학교 밖에서, 또는 학교가 관계한 또는 후원한 학교 밖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일어난 금지된 행위가 사건의 고발자나 희생자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적대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교육부 방침을 위반한 성희롱으로 간주된다.

C. 신고 절차와 불만제기 조사 및 해결

1. 다른 학생, 고용인 또는 기타 타인에 의해 성희롱을 받았다고 믿거나 목격한 학생은 그 사건을 자신의 교사, 교장 또는 기타 학교 직원에게 신고할 것이 강력히 권고된다. 학교 직원은 이 같은 신고를 받으면 수업 일로 하루 내에 그 신고를 교장 또는 AR 1312.3에 정의된 교육구의 법 준수관에게 이월해야 한다. 또한, 학생이 관계한 성희롱 사건을 목격한 모든 학교 직원은 수업 일로 하루 내에 자신의 교장 또는 교육구 법 준수관에게 자신이 목격한 것을 보고해야 하며, 직원은 피해자로 추정되는 학생의 불만 제기 유무에 관계없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학교 밖 행위에 관련된 성희롱 신고 또는 불만이 접수된 경우, 교장은 그 행위가 학교 환경을 적대적으로 만드는지를 평가한다. 적대적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지된 행위가 학교 내에서 일어난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불만을 조사한다.
3. 구두 혹은 비공식적으로 성희롱이 접수된 경우, 교장 혹은 준수 책임자는 학생 또는 학부모/후견인에게 교육구의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에 따라 공식적인 서면 고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공식적 고소의 여부와 상관없이 교장 혹은 준수 책임자는 주장되어지는 사건을 조사할 것이, 성희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희롱을 금지하고 재발을 막고 학생에게 미치는 계속되는 영향을 다루기 위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다.

4. 성희롱 불만 제기가 교장에게 처음 제기되면, 교장은 수업일 (2)일 이내에 그 불만의 조사를 시작하도록 법 준수관에게 그 보고를 전달하고, 법 준수관은 불만제기인과 연락하고 법과 AR 1312.3에 정의된 교육구 절차에 따라 불만을 조사하고 해결해야 한다.
5. 성희롱 고발을 조사할 때 희생자의 과거 성관계 증거는 이러한 증거가 희생자와 피고발자와의 이전 관계에 연관되지 않는 한 고려되지 않는다.
6. 교장, 준수 책임자 또는 통상 사건을 보고, 접수받는 사람이 관련된 성희롱 사건의 경우, 보고서는 교육감이나 또는 사건을 조사할 지명된 사람에게 제출한다.

#### D. 기밀 유지:

1. 성희롱의 모든 불만과 주장은 조사를 위해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제외하고는 비밀로 한다.(5 CCR 4964)
2. 그러나, 성희롱 제기인 또는 피해자가 괴롭힘을 교육구에 알릴 때 비밀을 요청할 경우, 법 준수관은 그 요청이 괴롭힘에 대한 수사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교육구의 능력에 제한을 줄 수도 있음을 알린다. 기밀 유지 요청을 존중하면서 교육구는 그러나 불만을 조사하고 대응하는데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3. 성희롱 불만 제기인 또는 피해자가 교육구에 희롱을 신고 시 교육구의 조사를 원치 않을 경우, 교육구는 모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비 차별적 환경을 제공하면서, 이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 E.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의 대응

성희롱 사건이 보고되면 교장이나 대리인은 법 준수관과 상의하여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임시조치가 필요한지 결정한다. 교장/대리인 또는 법 준수관은 성희롱을 중단시키고 학생들을 보호하며 학생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받도록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임시 조치로 인해 주장되는 성희롱 고발자나 희생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한다. 임시 조치에는 법과 교육위원회 정책에 따라 관련 학생들을 서로 다른 교실에서 수업을 받게 하거나 한 학생을 다른 교사가 가르치는 수업으로 이동하는 것이 포함된다. 학교는 성희롱을 받은 학생에게 성희롱자로 간주되는 학생과 접촉하지 않도록 대안을 통고해야 하며 피해학생이 학교 수업과 방과후 활동을 적절하게 바꾸도록 허락해야 한다. 학교들은 또한 피해학생에게 상당같은 이용 가능한 도움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학생이 공식적인 불만을 제기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혹은 성희롱이 학교 밖, 학교 후원, 학교 관련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발생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당하다.

#### F. 통고

교육구의 성희롱 방침 및 규정의 사본은:

1. 매 학사년 초, 학부모/후견인에게 보내는 통고서에 포함한다. (교육법 48980; 5 CCR 4917)
2. 매인 행정 빌딩 안에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하거나(교육법 231.5) 또는 교육구 규칙, 규정, 절차 및 표준

품행의 게시판이 있는 기타 장소에 게시한다. 교육구의 성희롱 방침 및 규정의 사본은 교육구 및 학교 웹사이트 및 가능할 때 교육구가 지원하는 소셜 미디어 상에 게시한다.

3. 각 분기, 학기 또는 여름 학기 초에 신입생들을 위해 실시되는 모든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제공한다. (교육법 231.5)
4. 학교 또는 교육구의 포괄적인 규칙, 규정, 절차 및 표준 품행을 명시한 모든 학교 또는 교육구 출판물에 실린다. (교육법 231.5)
5. 학생 안내 책자에 포함한다.
6. 직원들 및 직원 단체들에게 제공된다.

### **노숙자 학생을 위한 교육**

노숙자 학생은 고정되고 일정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야간 시간을 보낼 거주지가 없는 학생을 뜻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교육법 48852.7; 42 USC 11434a)

1. 주거지 상실, 경제적 어려움 또는 유사한 이유로 인해 타인과 함께 거주지를 공유하는 학생; 대체할 적절한 거처의 결핍으로 모텔, 호텔, 이동식 주택 또는 캠핑장에서 거주하거나 비상 또는 임시 보호소에서 거주하는 학생 또는 병원에 유기되었거나; 위탁 양육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
2. 사람을 위해 정기적인 숙박 시설로 계획되었거나 보통 사용되지 않는 공공 또는 사립 장소를 주요 야간 주거지로 갖고 있는 학생
3. 자동차, 공원, 공공 장소, 빈 건물, 열악한 주거지, 버스 또는 기차역 또는 유사한 환경에서 사는 학생
4. 위의 #1 - 3에 설명된 상황에서 거주함으로 노숙자로서 인정되는 이동하는 학생
5. 부모 또는 후견인의 실제적인 보호가 없는 보호자 없는 학생

출신 학교라는 것은 노숙자 학생이 집에 거주할 때 다니던 학교 또는 노숙자 학생이 마지막으로 등록했던 학교를 뜻 한다. 노숙자 학생이 집에 거주할 때 다니던 학교가 그 학생이 마지막으로 등록했던 학교와 다른 경우, 또는 그 학생이 지난 15개월 동안 다녔고 계속 학생으로 남아있는 다른 학교가 있는 경우, 교육구 연락인은 노숙자 학생과 그 학생의 교육에 관한 결정권을 갖고있는 사람과 상의하고 동의를 얻어, 그리고 노숙자 학생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며 출신학교를 결정한다. (교육법 48852.7)

**교육구 연락인:** 교육감은 다음의 직원을 노숙자 학생 및 위탁 청소년을 위한 교육구 연락인으로써 지정한다:  
(42 USC 11432)

Dr. Ilin Magran, 아동 복지 서버스 부서, 디렉터  
223 N. Jackson St., Glendale, CA 91206  
818-241-3111 x1500  
[IMagran@gusd.net](mailto:IMagran@gusd.net)

노숙자 학생들을 위한 교육구 연락인은: (교육법 48852.5; 42 USC 11432)

1. 학교 인사 및 기타 관계 단체 및 기관들과 협력하여 노숙 학생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2. 노숙자 학생들이 교육구 학교에 등록하도록 성공하도록 충분하고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확실히 한다.

3. 노숙자 가족 및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적 서비스들을 확실히 받도록 한다.
4. 학부모/후견인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용가능한 교육 및 관계된 기회들을 알리고 자녀들의 교육에 참여하도록 의미 있는 기회들을 제공한다.
5. 노숙자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공문을 노숙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구내 학교와 노숙자 학생들이 서비스를 받는 패밀리 쉼터나 기타 구제 기관 (무료 급식소) 같은 곳에 전달한다.
6. 법, 교육위원회 방침 및 행정 규정에 준하여 등록에 대한 논란을 조정한다
7. 학부모/후견인에게 모든 교통 수단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알린다.
8. 교육법 48918.1에 따른 통고 시, 퇴학을 초래할 수 있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노숙자 학생을 지원, 편의 도모 또는 대변한다.
9. 교육법 48915.5에 따른 통고 시, 장애 학생의 행동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한 IEP 팀 모임에 참여한다.
10. 면역 접종, 의료 및 학업 기록들을 포함하여 교육구에 등록 또는 타 교육구로의 이전에 필요한 문서를 받도록 노숙자 학생을 돕는다.

**학과목 및 학점의 이전:** 노숙자 학생이 교육구 학교로 전학 시, 교육구는 학생이 다른 공립 학교, 청소년 법원 학교, 또는 사립 학교, 무종파 학교 또는 기관에 출석하는 동안에 만족스럽게 완료한 과목을 인정하고 학점을 주며 그 과목을 재수강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교육법 51225.2)

노숙자 학생이 과목 전체를 이수하지 않은 경우, 학생은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부분 학점을 받게 되며 이전 학교에서 완료하지 않은 부분을 수강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교육구는 학생의 교육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상의하여 학생에게 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필수과목을 제때에 이수할 적절한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경우, 이수한 과목의 일부분을 다시 들도록 요청할 수 있다. 어떤 특정 과목에서 노숙자 학생에게 부분 점수가 발급될 때마다 해당하는 경우, 학생은 똑같은 또는 동등 과목에 등록하여 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교육법 51225.2)

### **위탁 청소년을 위한 교육**

GUSD는 위탁 청소년들이 그들의 가족 상황, 교육 프로그램의 중단 및 그들의 정서적, 사회적 및 다른 건강상의 요구로 인해 학업적 성공 달성에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한다. 이와 같은 학생들이 주 및 교육구 학업 표준을 성취할 수 있도록,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교육구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을 제공하며 위탁 청소년들의 학업 성취의 향상을 위해 필요에 따라 확인된 전략들을 실시한다.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법률 및 행정 규정에 정의된 대로 위탁 청소년에 대해 학생의 최선의 이익을 기반으로 한 배치 결정을 확실히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궁극적으로, 교육구 연락인으로써 위탁 청소년들을 위해 위탁 청소년들의 등록, 배치 및 전학에 편리를 도모하도록 학생 복지 서비스 부서의 디렉터, Dr. Ilin Magran을 지정하였다.

교육감 또는 대리인 및 교육구 연락인은 각 교장, 학교 등록인 및 출석 사무인을 포함하나 이에만 국한되지 않는 모든 적절한 직원들이 등록, 배치 및 위탁 청소년들 및 기타 관계된 권리에 대해 훈련을 받도록 확실히 한다. (교육법 48850-48859, 2003년 AB 490 교육 권리 및 안정)

**통고 및 불만제기:** 교육법 51225.1 및 51225.2에 명시된 대로, 위탁 청소년들의 교육적 권리에 대한 정보는 학생, 학부모/후견인, 직원 및 5 CCR 4622에 의하여 기타 관심을 가진 관계자들에게 배부되는 연례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를 포함한다. (교육법 51225.1, 51225.2)

### **고등학교 졸업장 소급 승인: 지역을 떠난 및 추방된 학생 - 교육법 51430**

글렌데일 교육구의 교육위원회는 고등학교 2 학년을 마친 후 양호한 상태에 있는 경우, 미국 외 국외로 강제 추방 되었을 수도 있는 학생에게 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 미국 국외로부터의 학점 이전은 온라인 또는 외국의 수업을 통하여 이수로 간주될 것이다.

### **연방정부 학생 보조 – 교육법 섹션 51225.8**

주 법률 하에, 교육구는 학생들이 12 학년을 시작하기 전에 적어도 1 회, 연방 학생 지원 무료 신청서(FAFSA) 또는 캘리포니아 드림 법(California Dream Act) 신청서를 적절히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이 정보는 문의 순서대로 재정보조 신청 마감일에 맞춘 제출을 돕도록 시기 적절히 가용해야 한다. 모든 가족 및 학생 개인 정보는 주 및 연방 정부 사생활 보호법 및 규정에 따라 보호된다.

**통고 및 불만제기:** 교육구는 교육법 48853, 48853.5, 49069.5 51225.1 및 51225.2 에 명시된 대로, 현재 교육구에 등록된 위탁 양육, 노숙자 학생 및 과거 청소년 법원 보호 학생들의 교육적 권리에 대한 표준 통고문을 게시해야 한다. 해당될 경우, 이 통고서는 불만제기 절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 **칼 그랜트 프로그램 – 교육법 섹션 69432.9**

칼 그랜트는 대학을 위한 돈으로 되돌려 값지 않아도 된다. 자격을 위해 학생은 자격조건 및 재정적 요건을 비롯하여 최소한의 평균 평점 (GPA)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칼 그랜트는 캘리포니아 종합 대학,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의 일부 독립 및 직업 칼리지 또는 기술 학교 또한 칼 그랜트를 받는다.

학생들이 재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12학년의 모든 학생은 자동으로 칼 그랜트 신청자로 간주되며, 각 12학년 학생의 GPA는 10월 1일 마감일까지 학교 또는 교육구 담당자에 의해 전자적으로 캘리포니아 학생 보조 위원회(CASC)에 제출된다.

18세 미만의 학생이나 학생의 부모 또는 후견인은 학교가 CASC에 학생의 GPA를 전자적으로 발송을 원하지 않는다는 양식을 작성할 수도 있다. 학생이 18세가 될 때까지, 부모 또는 후견인 만 학생을 제외시킬 수 있다. 학생이 18세가 되면, 학생 만 자신을 제외시킬 수 있으며 부모 또는 후견인이 이전에 학생 제외를 결정했던 경우, 참여할 수 있다. CASC 및 자동으로 칼 그랜트 신청자로 간주됨을 거절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통지는 학생의 11학년 학사년의 1월 1일까지 모든 학생 및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제공된다.

### **학교 회의 및 면담에 학부모 참여 – 캘리포니아 노동법, 섹션 230.8**

학부모는 고용주가 25 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경우, 학교 회의 및 행사와 같은 아동과 관계된 활동들을 위해 업무 휴가를 얻는 데 차별되지 않을 수 있다. 학부모는 학교 또는 비상 시 필요에 대한 제시를 위해 월 8 시간이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매년 최대 40 시간을 쓸 수 있다. 학부모는 IEP 회의, 정학 또는 퇴학 면담, SART 또는 SARB 회의 또는 학생 학습 팀 회의에 참석이 허용될 수 있으며 품행/훈육으로 인해 금지된 출석, 탁아 제공자의 예기치 않은 폐쇄 또는 이용 불가, 자연 재해 또는 학생이 감독 부족으로 위협에 처할 수 있는 기타 상황과 같은 비상 사태를 처리할 수 있다. “부모”란 부모, 후견인, 의붓 부모, 양부모, 조부모 또는 아동을 위해 부모 대신에(부모와 같은 책임을 갖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고용주가 부모에 대해 해고, 해고 위협, 좌천, 정직 또는 기타 차별을 하는 경우, 직원은 소득 또는 혜택 상실에 대해 복직 및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 **일반적 불만제기 절차(UCP) 방침**

교육위원회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적용되는 주 및 연방 법 그리고 규정 준수를 확실히 하도록 일차적 책임이 교육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가능한 한 언제라도 조기에 불만을 해결하도록 장려한다. 보다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는 불만 해결을 위해 교육위원회는 민사 소송법 타이틀 5 CCR 제 4600-4670 조항 및 관련 행정 규정에 명시된 일관적 불만 처리 시스템을 채택해야 한다.

UCP 에 적용되는 불만제기 사항들 :

교육구의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UCP)는 다음과 같은 불만 사항들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1. 성인 교육; 방과 후 교육 및 안전 프로그램; 농업 직업 기술 교육; 통합된 카테고리칼 보조 프로그램 ; 연방 직업 기술 교육; 탁아 및 발육 프로그램; 보충 교육; 모든 학생의 성공을 위한 연방법, 이주자 교육; 리지날 직업 센터 및 프로그램; 학생 성취를 위한 학교 계획안; 학교 안전 계획안; 캘리포니아 주정부 유아원 프로그램; 지방 교육 기관의 면허 취득을 면제받은 주정부 유아원 보건 및 안전 문제; 및 교육법 64000(a)에 준하여 지방 콘트를 기금 포물라를 통해 지원되지 않는 기타 교육구가 실시하는 모든 주정부 카테고리칼 프로그램 운영에 적용되는 주 또는 연방 법 또는 규정에 관한 교육구의 위반을 주장하는 불만제기.
2. 교육구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 직원 또는 기타 참여인이 그 사람의 인종 또는 민족의 실질적 또는 인지된 특성, 피부색, 조상, 국적, 출신 국가, 이민 신분, 민족 그룹 정체성, 나이, 종교, 혼인 여부, 임신 또는 혼인 상태,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 의료 상의 문제, 성, 성적 지향, 성별, 성별적 정체성, 표현 또는 유전학적 정보 또는 교육법 200 이나 220, 행정법 11135 또는 형법 422.55 에 인지된 특성 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실질적이거나 인지된 특성을 갖는 사람이나 그룹과의 관계에 기초한 주정부 재정 지원으로 기금을 직접 받거나 혜택을 받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포함하여 교육구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불법적인 차별(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악자 괴롭히기)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불만제기. (5 CCR 4610)
3. 학교 교정에서 모유 수유, 유아 모유 수유, 또는 기타 모유 수유와 관련된 학생의 필요 해결을 위해 수유 중인 학생에게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할 요건에 대한 교육구의 비 준수를 주장하는 불만제기. (교육법 222)
4. 육아 휴직 규정, 이전 등록 학교로의 복귀 권리 또는 원하는 경우, 대안 교육 프로그램 및 학생이 주정부 및 교육위원회가 도입한 졸업 요건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학교에 5 년차 등록 가능성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법 46015 에 명시된 임신 또는 육아 학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요건에 관해 교육구의 비 준수를 주장하는 불만제기(교육법 46015)
5. 교육 활동 참여를 위해 학생에게 비용, 보증금 또는 기타 요금 부과 금지에 관해 교육구의 비 준수를 주장하는 불만제기. (5 CCR 4610)
6. 학부모/후견인을 위한 지방 콘트를 기금 포물라 예산 개요 수립을 포함하여 지방 콘트를 및 책무안 (LCAP) 의 실시와 관련되어 적용되는 요건에 관해 교육구의 비 준수를 주장하는 불만제기.(교육법 52075)
7. 특정 연방 및/또는 주정부 카테고리칼 기금을 위해 통합 신청서에 요구된 바와 같이, 학생 성취를 위한 학교 계획안 수립 또는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요건에 관해 교육구의 비 준수를 주장하는 불만제기(교육법 64000-664001, 65000-65001).
8. 교육법 51225.2 에 정의된 위탁 청소년 학생 또는 그 학생을 대신하여 학생의 배치 결정; 교육과 관련하여 학생과의 연락을 담당할 사람에 대한 교육구의 책임; 다른 학교, 교육구 또는 국가에서 만족스럽게 이수한 학업 코스에 대한 학점 부여; 학교 또는 기록 이전; 또는 교육위원회가 도입한 졸업 요건 면제 부여에 관해 학생에게 적용되는 요건에 관해 교육구의 비 준수를 주장하는 불만제기. (교육법 48853, 48853.5, 49069.5, 51225.1, 51225.2)

9. 미 합중국 법 42 (42 USC) 11434a 조항에서 정의된 대로 고등학교 2년 이후 교육구로 전학 온 학생으로 노숙 아동 또는 청소년, 교육법 49701 에 정의된 과거 청소년 법원 보호 학교 학생으로 최근에 교육구에 등록된 학생, 군인 가정의 아동 또는 교육법 54441 에 정의된 이주 노동자 학생 또는 교육법 51225.2 에 정의된 뉴커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민자 학생으로 고등학교 3 년에 또는 4 년에 교육구로 전학 온 학생을 대신하여 또는 학생 당사자가 교육위원회가 도입한 졸업 요건 면제 부여에 대해 학생에게 적용되는 요건에 관해 교육구의 비 준수를 주장하는 불만제기. (교육법 51225.1)
10. 미 합중국법 42 (42 USC), 11434a 조항에 정의된 노숙 아동 또는 청소년 학생, 교육법 49701 에 정의된 과거 청소년 법원 보호 학교 학생, 군인 가정의 아동, 교육법 54441 에 정의된 이주 노동자 학생 또는 교육법 51225.2 에 정의된 뉴커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민자 학생으로 다른 교육구 또는 국가에서 만족스럽게 이수한 교과목 학점에 대한 학점 인정에 대한 요건에 관해 학생을 대신하여 또는 학생 당사자가 교육구의 비 준수를 주장하는 불만제기. (교육법 51225.2)
11. 어느 학기에서 한 주 이상 학과 내용에 대한 교육없이 또는 지정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고 이전에 만족스럽게 완료한 과정에 9-12 학년 학생의 배정을 금지하는 교육법 51228.1 및 51228.2 요건에 관해 교육구의 비 준수를 주장하는 불만제기. (교육법 51228.3)
12. 최소한의 체육시간(분수)의 요건에 관해 교육구의 비 준수를 주장하는 불만 제기.(교육법 51210, 51223)
13. 보건 및 안전 법 1596.7925 및 관련 주 규정에 명시된 면허가 면제된 캘리포니아 주 유아원 프로그램 (CSPP)의 보건 및 안전 표준 비준수에 관한 불만 제기.
14. 불만제기인이나 불만 처리 절차의 다른 참여자 또는 본 방침과 관련된 위반을 발견하였거나 보고를 한 사람에 대한 보복이 있었다는 주장의 불만제기.
15. 교육구 방침에 명시된 기타 불만제기.

교육위원회는 주장의 본질에 따라 대안적 분쟁 해결 (ADR)이 당사자 모두가 수용 가능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불만을 해결하는 절차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중재와 같은 ADR 절차는 한 명 이상의 학생 그리고 어떤 성인도 포함되지 않은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될 수 있다. 그러나, 성폭력이 포함된 불만제기 또는 어느 당사자가 중재에 참여하도록 강요되는 합리적인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불만 해결을 위해 중재를 제안하거나 사용될 수 없다.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ADR의 사용이 주 및 연방 법 및 규정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교육구는 보복으로부터 모든 불만제기인들을 보호해야 한다. 불만에 대한 조사에서,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비밀은 법으로 요구되는 바와 같이 보호되어야 한다. 보복 또는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을 주장하는 불만 제기에 대해,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불만제기인의 신원 및/또는 불만제기 주체가 해당 불만제기인과 다른 경우, 적절한 경우 그리고 불만 처리의 원래 모습이 유지되는 한, 관련인의 신분은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UCP 에 해당되지 않는 주장이 UCP 불만 제기에 포함된 경우, 교육구는 비-UCP 주장을 적절한 직원 또는 기관에 의뢰하고 조사하며, 적절한 경우, 교육구 UCP 를 통해 UCP-관련 주장을 해결해야 한다.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본 방침에 명시된 단계와 일정 그리고 수반되는 행정 규칙들을 포함하여 UCP 와 관련된 현재의 법률 및 요구 사항들에 대한 인식 및 지식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구 직원에게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5CCR 4631 및 4633 준수에 요구되는 조사 동안에 취한 조치 및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각 불만제기 및 관련된 후속 조치의 기록을 보관(유지)해야 한다.

### 비-UCP (UCP 에 해당되지 않는) 불만제기

다음의 불만제기들은 교육구 UCP 에 저촉되지 않지만, 그러나 특정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5 CCR 4611)

1. 아동 학대 또는 방치를 주장하는 불만 제기는 카운티 사회 복지부(County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보호 서비스 부서(Protective Services Division) 및 적절한 법집행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2. 허가된 시설물에서의 아동 발달 프로그램이 보건 및 안전을 위반했다는 주장의 불만 제기는 사회 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에 의뢰하고, 허가가 면제된 시설물에 대해선 적절한 아동 발달 지역 행정관(Child Development regional administrator)에게 의뢰해야 한다.
3. 부정 행위(사기)를 주장하는 불만 제기는 캘리포니아 교육부의 법률, 감사 및 준수 부서에 회부되어야 한다.

합의안이 개별 교육 프로그램에 통합되지 있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합의안에서 요구되는 서비스에 근거한 적절한 무상 공립 교육 거부를 주장하는 특수 교육 불만 제기는 캘리포니아 교육부에 의해 조사되어야 한다(5CCR 3080, 3200-3204; 교육법 섹션 33315(a)(2))

급식 계산, 상환할 수 있는 급식 그리고 아동 및 성인의 자격과 관련된 아동 영양에 관한 불만 제기는 5CCR 섹션 15580-15584 에 명시된 대로 캘리포니아 주 교육부에 의해 직접 조사되고 응답해야 한다.

고용 차별 또는 괴롭힘을 주장하는 불만 제기는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택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를 포함하여 행정 규정(AR) 4030 – 고용 차별금지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교육구에 의해 조사되고 해결되어야 한다.

교과서 또는 학습 자료물의 충분성, 학생 또는 교직원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응급 또는 비상 시설물들의 상태, 교사 결원 및 오배치와 관련된 불만 제기는 AR 1312.4 - 윌리엄스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해결해야 한다. (교육법 35186)

### **행정 규칙 1312.3 – 일관적 불만 제기 절차**

교육위원회가 다른 교육구 방침에서 구체적으로 달리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 (UCP)는 BP 1312.3 에서 구체화된 불만제기 조사 및 해결에 대해서만 사용된다.

### 준법 사무관들

교육구는 불만제기 사항들에 대해 교육구의 대응을 조정하고 주 및 연방 민권 법을 준수할 책임에 관해 아래의 확인된 인사(들), 직책(들) 또는 부서(들)을 지정한다. 또한 이 인사(들), 직책(들) 또는 부서(들)은 AR 5145.3 에 명시된 불법적인 차별(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헐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에 관한 불만 사항을 처리하는 책임을 가진 준법 사무관으로서 복무한다. 이 준법 사무관(들)은 불만 제기의 접수 및 조사 조정하며 교육구가 법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Kelly King 박사, 교육 서비스 - 부교육감

223 North Jackson Street

Glendale, CA 91206

(818) 241-3111 x1208

[kking@gusd.net](mailto:kking@gusd.net)

Lena Richter 박사, 카테고리칼 프로그램 -디렉터  
223 North Jackson Street  
Glendale, CA 91206  
(818) 241-3111 x1457  
[lrichter@gusd.net](mailto:lrichter@gusd.net)

불만제기를 받은 준법 사무관은 불만제기를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해 다른 준수 사무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른 준수 사무관이 위임되는 경우, 적용 시 준법 사무관은 불만제기인과 상대방에게 이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불만 제기에 대한 공정한 조사 또는 해결에 방해가 되는 편견이나 이해상충이 있는 준법 사무관은 불만제기 사건에 배정되어선 안된다. 준법 사무관에 대하여 불만이 있거나 공정하고 편견없이 사건을 조사할 준법 사무관의 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 불만 조사 방법을 결정할 교육감 또는 대리인에 의해 충원되어야 한다.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위임된 직원이 위임된 불만제기 이슈에 대해 훈련을 받았고 법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이 있고 불만이 제기된 사건을 조사하고 해결할 자격을 보장해야 한다.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이러한 훈련은 이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현재의 주 및 연방법과 규칙, 주장하는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을 포함하여 불만제기 사건 조사 및 해결을 위해 적용되는 절차, 결정에 도달하기 위해 적용되는 표준 그리고 적절한 교정 수단을 다뤄야 한다. 위임된 직원은 교육감 또는 대리인에 의해 결정된 법률 자문인과 접촉할 수 있다.

준법 사무관 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행정관은 조사를 하는 동안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임시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임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되는 경우, 준법 사무관 또는 행정관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임시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교육감, 교육감 대리인 또는 적절한 경우 학교 교장과 상담해야 한다. 임시 조치는 준법 사무관이 이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거나 교육구가 최종 서면 결정을 내릴 때까지, 어느 것이든 먼저 발생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 공고문

교육구의 UCP 방침 및 행정 규칙들은 직원 휴게실 및 학생회가 관리하는 미팅 룸을 포함하여 교육구의 모든 학교와 사무실에 게시해야 한다. (교육법 234.1)

추가로,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학생, 직원, 교육구 학생의 학부모/후견인, 교육구 자문위원회 위원, 학교 자문위원회 위원, 적절한 사립학교 임원 또는 대표 및 기타 이해 당사자들에게 교육구의 UCP 서면 공고문을 매년 제공해야 한다. (5CCR 4622)

이 공고문은 다음의 언급을 포함해야 한다:

1. 교육구는 교육위원회 방침을 수반하는데 있어 “UCP”에 적용되는 불만제기 ” 섹션에서 판별된 대로 UCP 와 관계되어 보호되는 모든 그룹 및 모든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불법적인 차별, 희롱, 위협 또는 약자 괴롭히기의 금지와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연방 및 주 법률 및 규정 준수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언급.
2. 학생 비용 또는 지방 콘트롤 및 책무안에 대한 불만 제기는 불만제기인이 불만제기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이어지는 증거 또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익명으로 접수할 수 있다는 언급.

3. 공립 학교에 등록된 학생은 교과과정 및 과외 활동을 포함하여 교육구의 교육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교육적인 활동에 참가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언급.
4. 학생 비용에 대한 불만 사항은 위반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는 날로부터 일 년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는 언급.
5. 교육구는 교육법 48853, 48853.5, 49069.5, 51225.1 및 51225.2 그리고 불만제기 절차에 명시된 대로 위탁 가정 청소년, 노숙 학생, 과거 청소년 법원 학교에 다녔으나 현재 공립 학교에 등록된 학생, 군인 가족의 아동, 이주자 학생 및 뉴커머 프로그램에 등록된 이민자 학생의 교육적 권리에 대해 표준화된 통지서 게시에 대한 언급.
6. 불만을 접수 받도록 지정된 책임 직원(들), 직책(들) 또는 부서(들)의 신원.
7. 불만 제기는 교육구의 UCP 에 따라 조사되고, 서면 결정서는 불만제기인과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은 한 불만제기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불만제기인에게 보내진다는 언급.
8. 불만제기인은 교육구의 결정을 받고 15 일 이내에 불만제기 원본 및 교육구 결정의 사본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작성한 항소장을 접수함으로써 캘리포니아 교육부에 교육구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는 언급.
9. 가처분, 접근금지 명령 또는 해당될 경우, 주 또는 연방 차별금지법에 따라 가용할 수도 있는 기타 해결책이나 명령을 포함하는 그러나 이에만 국한되지 않는 모든 민사 법률 상의 해결책에 대해 불만제기인에게 조언한다는 언급.
10. 교육구의 UCP 사본은 무료로 가용하다는 진술.

연례 공고문, 준법 사무관(들)에 대한 완전한 연락 정보 그리고 교육법 221.61 에 의해 요구되는 타이틀 IX와 관련된 정보는 교육구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하며 가용한 경우, 교육구에서 지원하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제공될 수 있다.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영어 미숙 학생과 학부모/후견인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과 학부모/후견인이 UCP 와 관련된 교육구 방침, 규정, 서식, 및 공고문에서 제공되는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교육구의 특정 학교에 등록된 학생들의 15 퍼센트 또는 그 이상의 학생들이 영어 이외의 언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경우, UCP 와 관련된 교육구 방침, 규정, 서식, 및 공고문은 교육법 234.1 및 48985 에 따라 해당 언어로 번역해야 한다. 기타 모든 경우, 교육구는 영어에 미숙한 학부모/후견인을 위해 관련된 모든 UCP 정보에 대한 의미 있는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 불만 제기 접수

불만 제기는 준법 사무관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사무관은 각각의 조항 및 접수 도장이 찍힌 날짜와 함께 불만제기 수령 일지를 유지해야 한다.

모든 불만 제기는 서면으로 접수해야 하며 불만제기인이 서명해야 한다. 불만제기인이 장애 또는 문맹과 같은 상태로 인해 서면으로 자신의 불만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교육구 직원은 불만제기 접수에서 그를 도와야 한다. (5 CCR 4600)

불만 제기는 또한 해당되는 다음 규칙들에 의거해 접수해야 한다:

1. 교육 위원회 방침("UCP 의 적용을 받는 불만" 부문의 #1 항)에 명시된 프로그램들의 운영에 적용되는 주 또는 연방 법 또는 규정에 교육구의 위반을 주장하는 불만은 개인, 공립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해 제기될 수 있다. (5CCR 4630)
2. 학생 비용, 보증금 및 수수료 부과 금지 및 LCAP 과 연관된 요건에 관한 비 준수를 주장하는 불만은 증거를 제시하거나 비 준수 주장을 보강하는 증거로 이어지는 정보가 제공된 경우, 익명으로 접수할 수 있다. 학생에게 불법적으로 비용 부과를 금지하는 법 위반에 대한 불만 제기는 학교장 또는 교육감이나 대리인에게 접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같은 불만 제기는 주장되는 위반이 발생한 날로부터 일년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교육법 49013, 52075; 5 CCR 4630)
3. 불법적인 차별(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을 주장하는 불만 제기는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불법적인 차별을 겪었다고 주장하거나 사람들 또는 개인 또는 특정 계급의 사람들이 불법적인 차별을 겪었다고 믿는 사람에 의해서만 접수될 수 있다. 불만 제기는 주장되는 불법적인 차별이 발생한 날로부터 6 개월 이전 또는 주장되는 불법적인 차별 사실들을 불만제기인이 처음으로 알게 된 날로부터 6 개월 안에 시작되어야 한다. 접수 시기는 불만제기인이 제출한 서면 요청서에서 밝힌 연장 사유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최대 9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5 CCR 4630)
4.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을 주장하는 불만 제기가 익명으로 접수된 경우, 준법 사무관은 제공된 정보의 구체성 및 신뢰성 그리고 그 주장의 심각성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적절한 다른 대응을 추구해야 한다.
5. 불법적인 차별(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에 관한 불만 제기인 또는 주장되는 피해자가 불만제기인이 아닌 경우 기밀 유지를 요청할 경우, 준법 사무관은 이러한 요청에 대해 교육구의 조사 수행이나 필요한 다른 조치를 취하는 능력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음을 불만 제기인 또는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럼에도, 기밀 유지 요청을 존중하면서 교육구는 조사에서 합리적인 모든 조치들을 취하고 불만제기인의 요청에 일관성을 갖고 해결/응답해야 한다.

#### 중재 절차

불만제기를 받은 후 업무 일로 3 일 이내에, 준법 사무관은 모든 당사자들과 함께 중재 절차 사용 가능성을 비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중재 절차는 한 명 이상의 학생이 포함되었고 어떠한 성인도 포함되지 않은 불만제기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다. 그러나 성폭력에 대한 주장 또는 어느 당사자가 중재 절차 참여를 강요받았다고 느끼는 합리적인 위험이 포함된 불만제기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재절차를 제안하거나 사용되지 않는다. 당사자들이 중재절차에 동의하는 경우, 준법 사무관은 이 절차를 위한 모든 준비를 한다.

보복 또는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을 주장하는 불만 제기에 대한 중재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준법 사무관은 중재인이 관련된 비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당사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준법 사무관은 모든 당사자들에게 언제라도 이 비공식 절차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통지해야 한다.

만일 법의 범위 안에서 중재 절차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준법 사무관은 불만 제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불만제기인이 이같은 시간 연장에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중재 절차 사용은 교육구의 불만제기 조사 및 해결을 위한 일정으로 연장되지 않는다. 중재가 성공하고 불만 제기가 철회된다면, 교육구는 중재를 통해 합의된 사안들에 한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재가 성공하지 못한 경우라면, 교육구는 본 행정 규정에 명시된 후속 조치들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

#### 불만 제기에 대한 조사

준법 사무관의 불만제기 수령하고 업무 일로 10 일 이내에 준법 사무관은 불만 제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조사를 시작하고 업무 일로 1 일 이내에 준법 사무관은 불만 제기인 및/또는 불만제기인의 대리인에게 불만 제기에 포함된 정보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고 불만제기에서의 주장을 보강할 증거 또는 증거로 이어질 정보를 준법 사무관에게 제출할 기회를 불만 제기인 및/또는 대리인에게 통보한다. 조사 기간 동안 언제라도 이같은 증거 또는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조사 수행에서, 준법 사무관은 가용한 모든 서류들을 수집해야 하며 불만 제기와 관련된 조사 과정 동안 당사자들로부터 받은 추가 증거나 정보를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기록, 노트 또는 언급들을 검토해야 한다. 준법 사무관은 불만 제기와 관련된 정보와 함께 가능한 모든 증인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고 관련된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되는 접근 가능한 타당한 장소를 방문할 수 있다. 적절한 간격을 두고 준법 사무관은 양 당사자에게 조사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보복 또는 불법적인 차별(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이 주장되는 불만제기를 조사하기 위해, 준법 사무관은 주장되는 피해자, 가해자 및 관련된 다른 증인들을 사적이며 개별적으로 그리고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면담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직원 또는 법적 자문인이 조사를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불만제기인이 교육구 조사관에게 불만제기 주장과 관련된 서류나 다른 증거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에서 비 협조, 거부 또는 달리 조사를 방해하는 것은 주장을 보강할 증거 부족으로 불만제기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비슷하게, 피고발인이 교육구 조사관에게 불만제기 주장과 관련된 서류나 다른 증거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에서 비 협 조, 거부 또는 달리 조사를 방해하는 것은 수집된 증거에 근거해 법 위반이 발생하였고 불만제기인에게 유리하게 구제책을 부여하는 판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5 CCR 4631)

법에 의거하여, 교육구는 조사관에게 불만제기 주장과 관련된 기록과 다른 정보 접근을 허용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조사를 방해해선 안된다. 조사에서 교육구에 의한 비 협조나 거부는 수집된 증거에 근거해 법 위반이 발생했고 불만제기인에게 유리한 구제책 부여 판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5 CCR 4621)

#### 최종 판결에 대한 타임라인

불만제기인과 서면 합의로 연장되지 않는 한, 최종 결정은 교육구에서 불만제기를 받고 일력으로 60 일 이내에 불만제기인에게 보내야 한다. 불만제기를 받고 30 일 안에 준법 사무관은 하기의 “최종 서면 결정” 섹션에서 설명된 바와 같은 서면 보고서를 준비하여 불만제기인에게 보내야 한다. 불만제기인이 준법 사무관의 결정에 불만스러운 경우, 불만제기인은 업무 일로 5 일 이내에 그 불만을 서면으로 교육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교육위원회는 이 문제를 차기 교육위원회 정기모임에서 숙고하거나 불만 제기에 반듯이 응답해야 할 60 일의 시간 제한을 맞추기 위해 특별 교육위원회 모임을 소집할 수 있다. 법에서 요구되는 경우, 사건은 비공개 모임에서 숙고되어야 한다. 준법 사무관의 결정이 최종적인 경우, 교육위원회는 불만제기 비 심리를 결정할 수 있다.

교육위원회에서 불만제기를 심리하는 경우, 준법 사무관은 교육위원회의 결정을 교육구가 불만제기를 처음 받은 후 일력으로 60 일 또는 불만제기인과 서면으로 합의한 특정 기간 안에 불만제기인에게 보내야 한다. (5 CCR 4631)

불법적인 차별(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을 주장하는 불만 제기에 대해, 상대방은 불만 제기인에 의해 합의된 타임라인의 연장을 통보받아야 하며, 교육구 최종 서면 결정서가 발송되며, 불만제기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 결정이 불만스러운 경우, 교육위원회에 불만제기를 제기할 수 있다.

## 최종 서면 결정

모든 불만 제기에 대한 결정문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5 CCR 4631)

1. 사실에 대한 판정은 수집된 증거에 근거하였다. 사실에 대한 결정 도달에서, 다음의 요인들이 고려되었다:
  - a. 증인들의 증언
  - b. 관련된 사람들의 상대적 신뢰성
  - c. 불만을 제기한 사람이 이 사건을 대하는 방식
  - d. 주장되는 행위에 대한 관련 서류 또는 다른 증거
  - e. 과거 사례들에서 제기된 가해자가 취한 유사한 행위
  - f. 불만제기인에 의해 제기된 과거의 거짓 주장들

2. 법에서의 결론

3. 불만 제기에 대한 처분

4. 이러한 처분의 논리적 근거

보복 또는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이 주장되는 불만 제기에서, 이에 대한 처분에는 각각의 주장에 대해 보복 또는 차별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포함해야 한다.

적대적 환경 존재 여부에 대한 결정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속고에 포함될 수 있다:

- a. 이러한 비행이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학생들 교육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 b. 비행의 유형, 빈도 및 지속 기간
  - c. 주장되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
  - d. 이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의 숫자 및 이 행위는 누구의 지시로 벌어졌는가
  - e. 학교 사이즈, 사건 장소 및 이 사건이 벌어졌던 전후 상황
  - f. 학교에서 여러 다른 사람들이 포함된 기타 사건들
5. 불만제기에서의 주장을 다루기 위해 그리고 학생 비용 불만 제기에 대해 교육법 49013 및 5 CCR 4600 에 있는 구제 방법에 맞게 취했거나 취해질 교정 조치들.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에 대한 불만 제기에 대해 법으로 요구되는 통지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 a. 가해자에게 부과되는 교정 조치.
  - b. 불만 제기인 또는 불만 제기와 관련된 다른 사람에게 제안되거나 제공되는 개별적인 구제 방법. 그러나 이 정보는 가해자와 공유하지 않는다.
  - c. 적대적인 환경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 취한 체계적인 조치
6. 교육구의 결정을 일력으로 15 일 안에 캘리포니아 교육부 (CDE)에 항소할 불만 제기인 및 응답자의 권리 그리고 이같은 항소를 시작하기 위해 따라야 할 절차에 대한 통보

결정에는 재발이나 보복을 예방하기 위한 후속 절차 그리고 이와 연결되어 일어나는 문제 보고 절차들이 또한 포함될 수 있다.

교육구 법률 변호인과 상담에서, 결정의 관련 부분에 대한 정보는 당사자의 개인 정보가 보호되는 한 불만제기자가 아닌 피해자 및 그 결정 이행에 포함될 수 있거나 그 불만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른 당사자와 소통할 수 있다. 불법적인

차별(차별적인 희롱, 협박 및 약자 괴롭히기와 같은)을 주장하는 불만에서 주장되는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교육구의 결정 통고서에는 주장되는 피해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피고에게 부과된 제재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불만 제기가 영어가 미숙한 학생 또는 학부모/후견인이 관련되어 있고, 관련된 학생이 학생의 15 퍼센트 또는 그 이상이 영어 이외의 하나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결정은 또는 교육법 48985 에 의하여 해당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다른 모든 경우, 교육구는 영어 구사가 미숙한 학부모/후견인이 모든 관련 정보에 의미있게 접근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주 법에 근거하여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이 주장되는 불만제기에서, 불만제기인에게 통지될 결정문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

- a. 불만 제기인은 교육구 불만제기 절차 이외에 그는 CDE 에 항소장을 접수한 뒤 일력으로 60 일 안에 중재 센터 또는 국선/사적 변호사의 도움을 포함하여 민법에서 가용한 구제 방법들을 추구할 수 있다. (교육법 262.3)
- b. 주 법원에 강제적 금지 구제를 추구하는 불만 제기 또는 연방법에 근거해 차별을 고발한 불만제기인에게는 60 일 간의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법 262.3)
- c. 인종, 피부색, 출신국, 성, 성별, 장애 또는 나이에 근거해 차별을 주장하는 불만 제기는 주장되는 차별이 발생한 날로부터 180 일 안에 미합중국 교육부 민권국, [www.ed.gov/ocr](http://www.ed.gov/ocr) 에 접수할 수 있다.

#### 교정 조치

불만 제기가 실제적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준법 사무관은 법에서 허용하는 적절한 교정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학교 또는 교육구 차원에 중점을 둔 더 큰 범위의 적절한 교정 조치에는 교육구 방침; 교사, 교직원 및 학생 훈련; 학교 방침 업데이트; 또는 학교 환경 조사를 강화하는 조치들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보복 또는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이 관련된 불만 제기의 경우, 피해자에게 제공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는 적절한 처리 방안들에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하나 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1. 카운슬링
2. 학업 지원
3. 보건 서비스
4. 교내에서 피해자가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한 보호인 배정
5. 가용한 자원 및 유사한 사건이나 보복을 보고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
6. 관련된 다른 사람들과 피해자 분리, 피해자에게 이러한 분리는 처벌이 아니라는 설명 제공
7. 정의 복원
8. 후속 조사 - 이러한 행위가 멈추었고 보복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확인 조사

보복 또는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이 포함된 불만제기에서, 가해 학생에게 중점을 둔 적절한 교정조치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 법에서 허용되는 학급 변경 또는 전학
2. 학부모/후견인 면담
3. 이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
4. 긍정적인 행동 지원
5. 학생 성공 팀 (SST) 의뢰
6. 가외활동이나 준-교과 활동 참여가 거부되거나 법에서 허용되는 다른 특권 취소
7. 법에서 허용되는 정학이나 퇴학과 같은 징계

직원이 보복 또는 불법적인 차별(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을 저지른 것으로 판정된 경우, 교육구는 적용 가능한 법과 단체교섭 합의에 의거해 최고 해고가 포함된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구는 허용되지 않는 불법적인 차별(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 행동 유형에 대해 학생, 직원 및 학부모/후견인들의 이해를 보장하고 이에 대한 보고 및 대응 방법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기 위해 넓게 학교 커뮤니티에서의 훈련과 증재 역시 고려할 수 있다.

불만 제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적절한 처리 방안이 불만 제기자 또는 기타 다른 피해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생 비용, 보증금 및 기타 다른 요금, 체육 수업시간 분 수 또는 지역 콘트롤 책무안 (LCAP)과 관계된 요건에 대한 법률의 비 준수를 주장하는 불만 제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교육구는 주 교육위원회의 규정에 의해 설정된 절차들에 따라 모든 피해 학생 및 학부모/후견인들에게 처리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법 49013, 51223, 52075)

학생 비용에 관한 법 비 준수를 주장하는 불만 제기에 대해서 교육구는 불만제기 접수 이전 1 년의 기간 동안에 불법적인 비용을 지불한 모든 피해자 학생과 학부모/후견인들을 판별하고 전 금액 상환을 위해 선의를 갖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시도를 해야 한다. (교육법 49013; 5 CCR 4600)

#### 캘리포니아 교육부 (CDE)로의 항소

UCP 의 적용을 받는 특정 연방 또는 주 교육 프로그램의 불만 제기에 대한 교육구의 최종 서면 결정에 불만족하는 불만제기인은 교육구 결정을 수령한 후 일력으로 15 일 이내에 서면으로 CDE 에 항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 (5 CCR 4632)

불만제기인은 결정에 대한 항소 근거 및 교육구 결정에서 사실들이 어떻게 부정확하고/또는 법을 잘못 적용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항소장에는 지역 교육구에 접수한 불만 제기서 원본의 사본 및 해당 불만 제기에 대한 교육구의 결정 사본을 함께 CDE 로 보내야 한다. (5 CCR 4632)

불법적인 차별을 주장하는 불만의 상대방이 교육구의 최종 서면 결정에 불만족 시, 불만 제기자와 같은 방식으로 CDE 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CDE 로부터 불만제기인이 교육구의 결정에 항소하였다는 통지를 받으면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다음의 서류들을 CDE 로 보내야 한다: (5 CCR 4633)

1. 최초의 불만 제기서 사본
2. 서면 결정 사본
3. 사건 본질에 대한 요약 및 결정문에서 다뤄지지 않은 경우, 교육구에서 수행한 조사 범위
4. 당사자들에 의해 제출되었고 조사관에 의해 수집된 모든 메모, 면담 및 서류들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조사 파일 사본
5. 불만 해결을 위해 취한 조치 보고서
6. 교육구의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 사본
7. 기타 CDE 에 의해 요청된 관련 정보



## 캘리포니아 주정부 유아원 프로그램(CSPP)의 보건 및 안전에 관한 불만

면허를 면제받은 각 CSPP 교실에는 학부모/후견인, 학생 및 교사에게 보건 및 안전 법 1596.7925 에 따라 CSPP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타이틀 5 규정의 보건 및 안전 요구사항 및 이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불만 제기 양식을 취득할 수 있는 장소를 알리는 통지가 게시되어야 한다. (교육법 8235.5)

면허를 면제받은 CSPP 프로그램의 특정 보건 또는 안전 문제에 대한 모든 불만 제기는 유아원 프로그램 행정관 또는 대리인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익명으로 접수될 수 있다. 불만 제기 양식에는 불만 접수 장소를 명시해야 하며 불만 제기인이 불만 제기에 대해 답변을 원하는지 여부를 표시할 공간이 있어야 한다. 불만 사항이 유아원 프로그램 행정관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결정되면 그 문제는 해결을 위해 근무일 기준 10 일을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기간에 교육감 또는 대리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면허를 면제받은 CSPP 프로그램의 특정 보건 또는 안전 문제에 대한 불만의 조사는 불만 접수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시작해야 한다. (교육법 8235.5)

유아원 행정관 또는 대리인은 불만이 접수된 날로부터 근무일로 30 일을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유효한 해결을 해야 한다. 불만 제기인이 불만 제기 양식에 불만에 대한 답변을 받기를 원한다고 표시한 경우, 유아원 행정관 또는 교육감의 대리인은 불만의 최초 접수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불만 제기인에게 불만의 해결을 보고해야 한다. 유아원 행정관이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정보는 교육감 또는 대리인에게 동시에 보고해야 한다. 불만 제기인이 불만 해결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불만제기인은 정기적으로 예정된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불만 사항을 설명할 권리가 있다.

불만 제기인은 5 CCR 4632 에 따라 CDE 에 교육구의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 할 수 있다. 그러한 항소는 결정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분기별(4 회)로 정기적으로 예정된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육위원 및 카운티 교육감에게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은 불만 건 수와 함께 일반적 주제 부문 별 불만 건 수를 포함하여 모든 CSPP 보건 및 안전 불만의 성격 및 해결책에 관해 요약된 데이터를 보고해야 한다.

## 예의 방침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교육위원회 방침 1312.5:** 교육위원회는 학교들과 교육구 장소들이 방해 받지 않고 권한 없는 사람의 학교/교육구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질서적인 교육 및 행정적 절차를 유지한다. 교육구 임원들은 동료, 학생, 학부모 및 일반인들을 존중심으로 대하여 마찬가지로 존중되기를 기대한다

본 방침의 의도는 어떤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고 합리적인 한도 내에게 우리 학생과 교직원들을 위한 안전하고 괴롭힘 없는 환경을 유지하려는 것일 뿐이다. 교육구 학생들에게 긍정적 역할 모델을 보여주기 위한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예의 바르고 긍정적인 대화를 기대한다. 교육구는 무례한, 배려심 없는 통명스런, 또는 무신경한 행동을 용납하지 않으며 또한 폭발적인, 적의에 찬 또는 공격적 행동이나 고성, 음란 또는 비위 거슬리는 말도 용납하지 않으며 교육구는 이러한 노력에 있어서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일반인의 협조를 구한다.

교육구 직원들은 교육구 방침을 위반하는 방해적인 행동을 인식하고 해결하도록 훈련을 받으며 직원, 학생 및 학부모는 본 방침에 대해 통고 받고 무례한 행동을 다루기 위해 그들에게 가용한 적절한 조치를 제공받는다. (법적 참조: 교육법 섹션 32210, 44014, 44810, 44811 및 거주 형사법, Sections 243.5, 415.5, 626.8, 627.7)

## **학업을 위한 안전 장소 법**

교육구는 형법 섹션 422.55 및 교육법 섹션 220에 언급된 장애, 성별, 성별 정체성, 성별 표현, 국적, 인종 또는 민족, 종교, 성적 지향 또는 이러한 실제 또는 인식된 특징 가운데 한 두 가지를 가진 개인이나 그룹과의 연관을 포함하여 실제 또는 인식된 특징에 근거한 차별, 괴롭힘, 폭력, 위협 및 약자 괴롭히기로부터 자유스러운 학업 환경 유지에 헌신한다.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약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목격하는 모든 교직원은 안전한 이상 즉시 중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구 내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 활동 또는 학교 등교와 관련하여 차별, 괴롭힘, 폭력, 위협 또는 약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하는 학생은 퇴학에까지 이르는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다. 사건을 보고하기 위해 또는 교육구의 반 차별, 반 위협, 반 괴롭힘, 반 약자 괴롭히기 방침 사본을 받기 위해서 학생 지원 서비스 부, 디렉터 (818) 241-3111 내선 1285로 연락한다.

## **학교 책임 보고서(SARC)**

1988년 11월 이래 가주 교육법 섹션 35256은 주 기금을 받는 모든 공립학교는 SARC를 작성하고 배부하도록 요구한다. 보고서의 목적은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각 공립학교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SARC는 학교의 목표 달성을 향한 진도를 보여주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SARC는 학교와 그 학생들에 대한 배경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파일을 포함하여 학교의 사명, 목표 및 성취를 개요한다. 주 법은 SARC가 인구 통계학적 데이터, 학교 안전과 학업 분위기 정보, 학업 데이터, 졸업률, 학급 규모, 교사와 임원 정보, 교과과정 수업 정보, 졸업 후 준비 정보 및 재정과 지출 데이터 모든 것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최근에 통과된 가주 법은 SARC가 교사의 비 전공 과목 담당, 총원되지 않은 교사 수, 충분한 교과서 및 기타 교재의 유무 및 양호한 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보수를 열거하도록 요구한다.

학부모/후견인은 교육구 웹사이트 [www.gusd.net/sarc](http://www.gusd.net/sarc)에서 최근의 SARC 정보를 볼 수 있다. SARC의 사본이나 번역은 요청 시, 교육구의 대외 정보 부서 또는 온라인 [www.sarconline.org](http://www.sarconline.org)에서 구할 수 있다. 추가적 정보를 위해 학부모/후견인은 학교나 교육구 사무실로 연락하거나 학교의 행정관 또는 교직원과의 만남을 위해 예약 일정을 잡을 수도 있다.

## **학생의 사진 및 비디오 촬영**

학생들은 간혹 교육 프로그램, 행사 또는 활동들에 대해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홍보를 위해 뉴스 매체에 의해 사진 또는 비디오로 촬영된다. 학생들은 또한 학교 또는 교육구 웹사이트, 회보, 소셜 미디어, 마케팅 자료 또는 성취도 인정이나 표창, 학교 또는 교육구 학습 프로그램의 강조 또는 행사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사진 및/또는 비디오로 촬영될 수도 있다. 학생들은 허가없이 교직원의 사진 촬영이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는 학생과 그들 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자녀의 이름, 사진 및 비디오 영상이 학교/교육구 웹사이트, 뉴스 매체 또는 기타 교육구가 승인한 그룹에 의해 회보, 학교/교육구 웹사이트 및 소셜 미디어 또는 다양한 출판물에 게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양식 8을 작성한다.

## **건강한 학교**

**학교 석면 안전** – 교육구는 1986년 의회에서 통과된 석면 위험 비상 대응법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들을 계속 충족시키고 있다. 그 법은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건축물을 밝히고 그 물질의 관리 또는 제거 계획안의 수립을 요구한다.

다년 간, 석면은 방열 및 방화제로서 사용되었으며 일부 학교들은 아직도 석면을 내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물 거주인들로부터 떨어진 저장실이나 천정 공간에 국한되어 있다. 각 학교의 석면 관리안은 건물 안전 검사 보고서와 함께 해당 학교 사무실에서 사본을 받아볼 수 있다.

**2000 년 건강한 학교 법** – 2000 년 건강한 학교 법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매년 교직원, 학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교육구의 살충제 살포 계획에 관하여 서면으로 통고하도록 요구된다. 2020-2021 학사년에 대해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해충 관리 서비스를 위해 주 정부 면허 하청업체인 가주의 Pest Options of Orange 해충 관리 회사와 계약을 맺었으며 필요 시 아래의 살충제들이 2020-2021 동안에 사용될 수 있다:

<u>살충제명</u>	<u>주성분</u>	<u>사용도</u>	<u>환경보호 기관 ID #</u>
Advion Ant Gel	Indoxacarb	Roaches	352-652
Advion Roach Gel	Indoxacarb	Ants	352-627
Alpine WSG	Dinotefuran	Insects	499-561
Altosid	Methoprene	Mosquito	2724-451
Contra Blox	Bromadiolone	Rodents	12455-79
D-Fense SC	Deltamethrin	Insects	53883-276
Evergreen Pyrethrum	MGK	Insects	1021-2560
Fumitoxin	Aluminum Phosphide	Burrowing Rodents	72959-1, 72959-2
Nyguard IGR	Pyriproxyfen	Insect IGR	1021-1603
Siesta	Metaflumizone	Fire Ants	7969-232
Ramik Oats	Diphacinone	Burrowing Rodents	61282-24
Termidor SC	Fipronil	Insects	7969-210
Triact 70 Organic	Neem Oil	Insecticide	70051-2-59807
ZP AG Oats	Zinc Phosphide	Rodents	12455-102-3240

살충제에 대한 추가 정보는 가주 살충제 규정국 웹사이트 [www.cdpr.ca.gov](http://www.cdpr.ca.gov) 에서 알아볼 수 있다.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위험 수준이 “warning(경고)” 또는 “danger(위험)” 란 말이 들어있는 살충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살충제는 사용되는 경우, 가장 안전한 “caution(조심)”이란 범주에 속하는 것이며 아동들이 없을 때 살포된다. 살포인은 매년 안전 훈련을 받고 미국 환경보호 기관(U.S. EPA)의 벨 지시사항을 엄격히 준수하며 꼭 필요 시에만 살충제를 살포한다.

개별적 살충제 살포에 대한 통고를 받기 위해 교육구에 등록할 기회를 갖기 위해선 교장에게 연락하도록 한다.

### **인터넷 접속/전자 정보 서비스 및 허용 가능한 사용 방침**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보다 더 최신 과학 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르침과 배움의 기회를 증진시키고 있다. 정보 자원에 보다 더 접근하게 함으로써 우리들은 세계를 우리 학생들에게 가져오는 것이며 그 결과, 그들은 더 높은 교육에 대해 그리고 경력의 시작에 보다 더 잘 대비될 것이다.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교육구 웹사이트에 정보를 게시하는 것은 일정한 법적, 윤리적 및 도덕적 책임을 수반한다. 사용자는 행정 규정 및 그에 수반하는 전자 정보 서비스(EIS) 허용 가능한 사용 동의를 준수해야 한다. (법적 참조: GUSD 교육위원회 방침 1113, 행정 규정 1113, 교육위원회 방침 6163.4)

우리의 주요 책임의 하나는 사이버 폭력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사이버 폭력에는 전화, 컴퓨터 또는 기타 우선 커뮤니케이션 기기를 포함하나 이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인터넷, 소셜 미디어 또는 다른 테크놀로지에 괴롭히는 말,

직접적 위협 또는 기타 해로운 글, 소리 및 영상 전송이 포함된다. 사이버 폭력에는 또한 타인의 평판에 먹칠을 하기 위해 타인의 전자 어카운트에 침투하여 그의 신분을 가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법적 참조: (가주 교육법 섹션 Section 49800, 49900.2, 49900.3, 49900.4, 49900.7 또는 GUSD 교육위원회 방침 5131C)

학생들은 수업 중 교정에서, 학교 후원 활동 참여 동안 또는 교직원의 감독이나 통제 하에 있을 때, 휴대 전화, 스마트 폰, 랩탑 컴퓨터, 테블릿 기기 또는 기타 다른 커뮤니케이션 도구같은 커뮤니케이션 기기의 소지가 허용된다. 전자 기기는 교장이 판정하는 학교 관련 비상 사태(예, 교정 폐쇄, 지진 등) 또는 보건 상의 문제 발생 시 사용될 수 있다. 추가로 개인 기기들은 교장에 의한 지정에 따라 학업적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하나의 전자 정보 서비스로서 인터넷은 개방된 세계적 정보의 교환과 컴퓨터 자원을 공유하는 통신망이다. 인터넷은 평생 학습을 위한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특유한 자료를 제공한다. 그것은 사용자들에게 자원의 세계가 가능하도록 고안된 것으로서 적절한 자료들의 선택 책임은 사용자에게 달려 있다.

대학, 공공 및 사립 연구소, 정보 기관 및 기업체와 같은 곳으로부터의 정보는 일반적으로 학생용으로서 매우 적합하며 적절하다. 그러나 부적합한 자료 역시 온라인에 잠복하여 있으며 학생들은 인터넷을 탐험하는 동안 바람직하지 않은 자료들에 접할 수도 있다. 교육구는 학생들의 사용을 감독하지만 학생들이 접하는 모든 자료들의 완전 통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비록 통제하고 있다고 하여도 학생들은 인터넷과 기타 전자 정보 서비스(EIS)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에 접할 수 있다. 이는 윤리적 표준을 고수하는 학생들에게는 유리하다. 교육구는 학생들에게 전자 정보 자원의 윤리적이고 적절한 사용을 가르치고 있으나 자료 선택에 있어서 부적절한 행동과 공민 정신을 보이는 학생에게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정학 및 퇴학 가능성이 포함되는 다른 훈육 조치가 부과될 수도 있다.

인터넷 사용은 전산망의 복잡한 제휴를 통하여 조정된다. 전산망의 원만한 운영은 엄격한 사용 지침을 준수하는 단말기 사용자들의 적절한 품행에 달려있다. 이 지침은 사용자들이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책임들을 숙지하도록 마련된 것이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이 학습 도구의 적절하고 올바른 사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것이 기대된다.

교육구 컴퓨터를 통한 전자 정보 서비스 사용이 허용되기 전에 학생들은 다음 사항들을 이행해야 한다:

- 교육구의 올바른 사용 방침에 관한 지시를 받는다.
- 사용자로서의 책임에 대해 배운다.

## **글렌데일 통합교육구의 적절한 사용 방침 사용 조건 및 규칙**

### **1. 적절한 사용:**

- a) 전자 정보 서비스의 목적은 독특한 지원과 협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조사 연구와 교육의 지원에 있어서 대화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사용자로서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교육구의 교육적 사용 목적을 지원하고 품행이 그것과 일치해야 한다. 모든 전자 정보 서비스의 사용자들은 교육구의 규칙 및 올바른 사용 방침을 준수해야 한다
- b) 연방 또는 주 정부의 법규에 위배되는 모든 자료들의 전달은 금지된다. 여기에는 저작권이 있는 자료, 협박적, 음란한 자료 또는 기업 비밀로 보호된 정보가 포함되나 이것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c) 상업적 목적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d) 제품 광고 또는 정치적 로비 활동을 위한 사용은 금지된다.

**2. 권리가 아닌 특전:**

전자 정보 서비스의 사용은 권리가 아닌 특전이다. 이들 조건들과 규칙들의 위반을 포함한 부적절한 사용은 사용자의 특전 취소를 초래한다. 교육구는 적절한 사용을 규정할 권한이 있으며 어느 때든 사용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3. 감독:**

교육구는 캠퍼스에 있는 동안 교육구 소유이건 개인 것이건 테크놀로지의 어느 특정한 사용의 적합성을 판정하기 위해 모든 자료들을 검토하고 사용자의 활동을 주시 감독할 권한을 보유한다.

**4. 소셜 미디어 감독:**

학교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소셜 미디어 모니터링 시스템과 계약할 권리를 보유한다. 가주 교육법 49073.6 에 대한 준수로, 교육구는 다음을 이행할 것이다: “학생이 18 세가 된 후 1 년 또는 학생이 교육구, 카운티 교육부 또는 차터 스쿨에 더 이상 등록되지 않은 1 년 후, 어느 쪽이 먼저이든 소셜 미디어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파기하고 그 기록을 유지한다.”

**5. 예의:**

학생들은 전자 정보 서비스에서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예절의 규율들을 준수하길 바란다. 여기에는 아들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a) 욕설, 비속어 또는 기타 부적절한 언어 사용을 금지한다.
- b) 타인에게 모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다.
- c) 연방 또는 주 정부의 법규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 d) 개인 주소나 전화 번호를 밝히지 않는다.
- e) 전자 우편은 사적인 것이 못된다. 시스템 사용자들은 모든 메일에 접속할 수 있다. 부당한 사용이나 불법적 활동과 연관되거나 그것들을 지원하는 메시지는 당국에 보고되며 사용자는 사용 특전을 상실하게 된다.
- f) 다른 전산망 사용자를 방해하는 식으로 전산망을 사용하지 않는다.
- g) 전산망을 통한 모든 통신과 정보는 사적 재산으로 간주되므로 편집, 손상 는 삭제해선 안 된다.

**6. 무보증:**

교육구는 교육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명시 또는 함축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입는 어떤 피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기에는 교육구의 소홀 또는 사용자의 실수나 망각으로 인해 야기된 지연, 전달 실패, 혼란 전달 또는 서비스의 차단으로부터 일어나는 데이터 상실이 포함된다. 인터넷을 통하여 얻어진 정보의 사용은 사용자 자신이 기기에 수반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교육구는 습득한 정보의 정확성과 질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 모든 사용자들은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그 출처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교직원 및 학생들은 GUSD 소유가 아닌 자신의 테크놀로지 기기에 대해 전체적 책임을 진다. 이는 기기의 안전, 보안 및 유지를 포함한다. GUSD 는 사용료/정보 이용료, 업그레이드, 파손 및 대체비를 포함하여 개인 테크놀로지 기기의 사용과 관계된 어떤 채무 발생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교육구는 GUSD 구축망에서만 인터넷 콘텐츠(내용)을 여과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 이상의 인터넷 연결을 가진 개인 기기들에 대해, 학생들이 인터넷 접속을 위해 GUSD 구축망 사용이 강력히 제안된다. 인터넷 접근의 부적절한 사용은 징계 조치의 대상이다.

## 7. 보안:

- a) 컴퓨터 시스템의 보안은 특히 그것이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하는 경우 최우선 사항이다. 사용자는 타인이 자기의 암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암호는 시스템 보안을 위해, 그리고 사용자의 특전과 시스템의 지속적 사용을 위해 보호되어야 한다.
- b) 전자 정보 서비스 상에서 잠재적인 보안 문제를 찾아 낼 수 있다고 믿는 학생들은 교사나 행정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다른 사용자들에게 그것을 해 보여서는 안된다.
- c) 전산망 보호 장치의 우회, 소프트나 하드웨어의 구성 조작 또는 자신의 권한이 부여된 접근을 넘는 모든 전자 정보 서비스에 들어가려는 시도는 사용자 특전의 취소를 초래하고 후속 훈육 조치가 따르게 된다.
- d) 보안 상의 위험인으로 판별된 사용자 또는 교육구나 다른 컴퓨터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켰던 내력이 있는 사용자는 교육구에 의해 전자 정보 서비스 사용이 금지될 수 있다.

## 8. 훼손 및 괴롭힘:

- a) 훼손과 괴롭힘은 사용자 특전의 취소를 초래하며 다른 훈육 조치가 취해진다:
  - 훼손은 다른 사용자의 데이터 또는 교육구 전자 정보 서비스의 자원을 손상, 수정하고 파손하려는 악의적 시도로 정의된다. 여기에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옮기거나 만드는 것이 포함되며 이것들에 만 국한되지 않는다.
  - 괴롭힘은 다른 사용자를 끈질기게 추근거리거나 타인의 일에 간섭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여기에는 상대방이 원치 않는 전자 우편 발송이 포함되며 비단 이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 9. 사용 절차

- a) 학생 사용자들은 교육구 전자 정보 서비스 사용에 앞서 항상 그들의 교사들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생들은 서면 또는 학급의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
- b) 모든 사용자들은 컴퓨터 장비 사용에 있어서 균등한 권한을 가진다. 그러므로 사용자들은 게임을 한다든지 비학업적 활동을 위해 컴퓨터 자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사용자들은 교육구가 제공하는 종이 및/또는 잉크/토너 카트리지가 같은 공급물들을 낭비하거나 가져가서는 안 된다

## 10.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자료들:

사용자들은 사용자, 학부모, 교사 및/또는 행정인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던가 부적절하거나 혐오감을 준다고 느끼는 자료들을 접할 수도 있다. 만일 학생들이 우연히 그런 자료들을 접할 경우, 즉시 빠져나와 교사와 행정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한 자료 접속을 시도하지 않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이다. 우연히 접할 경우, 그 자료를 다른 사용자들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 11. 정보 테크놀로지 수색:

교육구의 전자 정보 시스템 사용의 한 조건으로서 교육구는 교육구 시스템의 장비에 사용되는 모든 자료(소프트웨어, 부속 장비 등)를 검토하고 교육구 캠퍼스에서 사용한 학생 개인의 기기를 수색하고 장비와 네트워크에 대한 특정 사용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사용자의 활동을 점검할 권리를 어느 때든 보유한다. 교육구의 모든 캠퍼스에서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적절한 사용은 사용 특정의 상실 및/또는 징계 조치를 초래할 수도 있다.

## 12. 학부모의 학교 통고:

학부모는 자녀에게 교육구 장비 및 여과된 인터넷 접속을 통한 인터넷 검색 기회가 주어지길 원치 않는 경우, 서면으로 교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 인터넷 안전 정보

2020-2021

### 학생 인터넷 안전에 관한

### 학부모 정보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업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학생들의 부적절한 인터넷 사용은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잠재적으로 해로우며 저희는 이 도전에 대해 귀하의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전국적으로 학교들은 인기있는 소셜 네트워킹 웹사이트에 게시된 전자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여 쓰여진 메시지의 결과로서 학생들의 부정적 행동이 증가함을 목격합니다. 다수의 사이트들은 학생들이 통상적으로 얼굴을 마주하는 대화에선 하지 않는 말을 다른 학생들과 주고 받으며 게시하는 즉석 메시지를 전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기는 증가하고 있는 듯 합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Facebook.com)은 가입자가 10억 명을 넘었다고 하며 세계적으로 학생들 간에 가장 인기있는 “메시지 교환” 장소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들 웹사이트들의 일부는 아동 약탈자, “사이버 불리” 및 사기꾼들에 의해 이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한 이들 웹사이트의 내용을 감시할 성인 책임자는 없으며 일부 학생들은 온라인 불링에 참여하거나 다른 학생들을 해치기 위해 사이트를 사용합니다. 소위 “사이버 불이”라는 학생들은 9세 및 14세 사이의 아동들로서 결과를 목격함없이 타인을 해치기 위해 온라인의 익명성을 이용합니다. 온라인으로 약자 괴롭힘을 당한 학생들은 자신의 인터넷 사용이 금지 당할까 사용이 금지 당할까 두려워 간혹 이러한 사건들을 보고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 밖에서 성인들이 청소년으로 가장하여 학생들의 채팅 룸에 접근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접촉은 간혹 비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의심하지 않는 학생들은 약탈자가 학생의 집 또는 학교 주소를 알아낼 수 있는 많은 개인 정보를 게시하여 약탈자의 쉬운 표적이 됩니다.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여러 소셜 네트워킹** 웹사이트 사용을 학교 컴퓨터로부터 차단하였습니다. 저희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이러한 부적절한 자료들을 계속 차단할 것입니다.

학부모는 자녀가 인터넷 상에서 무엇을 쓰고 있으며 상대방은 어떤 답을 게시하는지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웹사이트들은 공공 영역이므로 그곳의 게시물들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대부분의 게시물은 그렇지 않지만 일부는 부도덕적이거나 불쾌하거나 불법적인 것입니다. 원하신다면, 귀하께서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사이트들에 접속하여 조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비스는 무료이며 사용자는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단 등록한 후 귀하는 자녀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을 위해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귀하의 도시 이름을 입력하여 검색 결과를 범위를 좁힐 수 있으며 자녀가 웹사이트에 게시한 개인 정보, 메시지, 일기 및 사진 종류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조언 및 정보 출처

저희는 귀하께서 인터넷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자녀와 이야기 나누길 권고합니다. 자녀가 **Facebook, Instagram, Snapchat, Twitter**, 또는 그와 유사한 웹사이트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자녀가 귀하의 승인 하에 그러한 사이트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개인 및 신분이 노출될 만한 정보가 게시되지 않도록 자녀와 프로필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저희는 자녀의 인터넷 사용 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규칙 및 지침을 정하시도록 권장합니다. 일부 웹사이트는 인터넷 안전을 위한 지침을 학부모 또는 가족에게 제공합니다. 예: [www.common sensemedia.org](http://www.common sensemedia.org)의 [Common sensemedia.org](http://www.common sensemedia.org), <http://www.safekids.com>의 [SafeKids.com](http://www.safekids.com) 및 <http://www.webwisekids.org>의 [Web Wise Kids](http://www.webwisekids.org), 전화 866-WEB-WISE 또는 이메일 [webwisekids2@aol.com](mailto:webwisekids2@aol.com).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우리 학교 내에 계속하여 인터넷 안전을 제공할 것입니다. 학부모 역시 가정에서 인터넷 사용을 감독할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귀하의 지원 및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가주 교육법 학부모 통고 요건 2020-2021

가주 교육법, § 48980은 귀하의 편의를 위해 의역된 것으로 각 학부모나 후견인에게 다음의 가주 교육법 섹션 및 기타 관련된 법률 조항들에 관해 통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모든 섹션에 대한 설명이나 원문은 각 학교의 행정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법 § 221.5 – 경력 카운슬링:** 7-12학년생들에게 기회 균등의 원칙 하에 주어지는 직업 상담 및 학과목 선택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학부모에게 알린다. 이 조항은 또한 학부모에게 상담이나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알린다.

**교육법 § 32221.5 – 운동 선수를 위한 건강 보험:** 주 법에 따라, 교육구는 학교 운동팀들의 모든 구성원이 의료 및 병원 비용을 포함하는 사고 상해 보험이 있는지를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이 보험 요건은 교육구가 제공하는 보험이나 의료 및 병원 비용을 포함하는 기타 보험 혜택에 의해 충족될 수 있다. 일부 학생들은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지역, 주 또는 연방 정부가 후원하는 건강 보험 프로그램에 등록할 자격이 있을 수 있다.

**교육법 § 32255 – 동물에 대한 유해하거나 파괴적인 사용을 거부할 권리:**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들은 그들이 “동물들에 대한 유해하거나 파괴적인 사용”으로 생각되는 학급 활동의 참여를 거부 또는 자제할 권리가 있다. 대체 프로그램 또한 다루어진다.

**교육법 § 35183 & 35183.5 – 복장 규칙/갱 복장:** 교육구들에게 “갱 관련 옷차림”을 방지하기 위한 복장 규정 채택의 권한을 부여하며 또한 교육구들이 학생들의 전교 교복 착용을 요구하는 복장 규정 방침 채택의 권한을 부여한다. 교육구가 복장

규칙을 채택하거나 유니폼 착용을 요구하는 경우, 학부모는 적어도 6개월 전에 통고 받고 경제적으로 불우한 학생에 대해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나아가서 35183.5 조는 또한 학교가 수업일 활동 동안 옥외용 햇볕 차단용 복장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며 의상의 메모나 처방없이 수업일 동안의 선스크린 사용을 허용한다.

**교육법 § 35291 & 35291.5 – 훈육 교칙 :** 각 학교는 학교 위원회에 의해 수립된 훈육 규칙을 가진다. 교육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이 규칙들은 각 학교와 교육구 사무실에서 받아 볼 수 있다.

**교육법 § 32280 이하 – 포괄적 학교 안전안:** 글렌데일 통합교육구의 각 학교들은 재해 대비안 비상 시 절차를 포함하는 포괄적 학교 안전안을 수립한다. 각교무실에는 사람들이 읽어 볼 수 있도록 사본을 비치한다. 각 학교는 정기적으로 화재 및 비상 시 훈련을 실시한다.

**교육법 § 39831.5 – 학교 버스 안전:** 과거, 학교 버스로 통학하지 않은 학생의 학부모/후견인은 학생 등록 시 명시된 학교 버스 안전에 관한 정보를 받는다. 이는 유아원, 유치원 및 1-6학년 모두에 해당된다.

**교육법 § 46010.1 – 대외비 의료 서비스:** 현행 법은 학교 당국이 7-12학년 학생들이 학부모의 동의없이 내밀스러운 의료 서비스를 받을 목적으로 수업에 불참하는 것을 허용한다.

**교육법 § 46014 – 종교적 훈련:** 교육위원회는 학부모나 후견인의 서면 동의 하에 종교적 활동이나 교육에 참가하기 위한 학생의 결석을 허용할 수 있다.

**교육법 § 48206.3 – 일시적 장애: 개별 지도:** 일시적인 신체 장애로 인해 정규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거주지 교육구로부터 교육 제공을 받는다.

**교육법 § 48208 – 일시적 장애: 학부모에 의한 통고:** 일시적 신체 장애생의 학부모나 후견인은 유자격 병원이 위치한 해당 교육구에 학생의 존재를 알릴 책임이 있으며 그 학생에 대한 적절한 교육 제공은 그 교육구의 책임이다.

**교육법 § 48900.1 – 수업에 필요한 학부모 출석 :** 교육위원회 방침은 교사가 그에 의해 정학된 학생의 학부모 또는 후견인이 학생의 클래스에서 수업일의 일부에 참석하도록 하게 한다.

**교육법 § 48904 – 의도적 비행 책임:** 미성년자의 학부모나 후견인은 타인의 상해나 사망 또는 학교 재산의 파손을 초래하는 미성년자의 의도적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며 또한 학생에게 대여되었으나 의도적으로 반납되지 않은 학교 재산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학부모는 정부 법 53069.5 조에 명시된 최대 액수까지의 변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교육구는 피해액이 지불되거나 물건이 반납되거나 또는 금전 지불 대신의 자원봉사 근무 프로그램을 마칠 때까지 평점, 학위 또는 성적 증명서의 발급을 보류할 수 있다. 학생이 타 교육구로 전학하는 경우, 그 교육구 역시 이전의 교육구로부터 통고서를 받고 평점, 학위 또는 성적증명서의 발급을 보류할 수 있다. 받아들이는 교육구는 이들의 보류 결정을 학부모에게 통고해야 한다.

**교육구 § 48906 – 학생의 경찰 인계:** 학교 인사가 학생을 교정으로부터 내보내려는 목적으로 경찰에게 인계 시 학교 인사는 학생이 의심되는 아동 학대의 희생자로서 보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부모나 후견인에게 즉시 통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경찰에 보호되는 경우, 경찰은 학부모/후견인에게 통고한다.

**교육법 § 48980 (c) – 단축 수업일 및 학생 휴일인 교직원 개발일:** 학부모들이 단축 수업일 또는 학생 휴일인 교직원 개발일에 대한 통고를 받도록 요구한다(늦어도 한 달 전).

**교육법 § 48980 (k) – AP 시험료:** AP 과목을 택하고 과정 말에 AP 시험을 치를 계획인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은 AP 시험료 지불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교육법 § 49063, 가족의 교육권 및 사생활 법(FERPA), 5 CCR § 431(e) – 학부모와 학생의 개인 정보 보호 권리 통고:** 연방 및 주 법은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들에게 어떤 사생활권 및 서류 접근권을 허용한다. 교육구가 유지하는 개인적으로 판별이 가능한 모든 개인적 서류에 대한 완전 접근이 다음 해당 인에게 허용된다:

- 1) 17 세 및 그 이하의 학생의 학부모
- 2) 학생이 세금 목적상, 부양 자녀로 되어있는 18 세나 그 이상의 학생의
- 3) 16 세 나 그 이상의 학생 또는 고교 졸업 후의 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유자격생이라고 함)

필기, 인쇄, 타이프, 필름, 마이크로 필름 또는 기록 수단 어느 것으로 기록되었던 누적 기록은 학생의 발전 및 교육 진도 기록에 유지되어야 한다. 교육구는 이러한 기록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할 것이다. 학부모/후견인은 1) 학교가 관리하는 학생의 교육 기록 점검 및 검토 2) 학교에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기록의 정정 요구 및 3) 교육 기록의 정보 공개를 일부 통제할 권리가 있다. 교육에 관심이 있는 합법적인 학교 인사는 그가 전문적인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기록 검토가 공식적으로 필요한 경우 부모의 동의없이 학생 기록에 접근할 수 있다. 학생이 등록을 청하거나 의도하는 타 교육구의 관계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구는 학부모의 동의없이 교육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

학생 기록은 영구 기록(학생의 법적 이름, 생년월일, 등록일, 과목명, 성적), 의무적 임시 기록(시험 점수를 비롯한 학생의 발전 및 교육 진전 내력) 및 승인된 기록(3 년 이상된 표준 시험 점수, 일상적 징계 통고)으로 되어 있으며 교장이나 대리인은 학생 기록의 유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학부모나 유자격 학생들은 교장에게 서면 요청을 통해 개인 학생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교장은 서류 해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관이나 적절한 유자격 직원이 있을 때에 맞추어 예약을 한다. 학부모가 학교 측이 유지하고 있는 어떤 정보의 정확성이나 적절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들은 비공식적으로 교장에게 교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학부모, 성인 학생 및 교장에 문제되는 정보의 교정이나 삭제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경우, 학부모는 교육법 49070 조에 개요된 절차에 따라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학교 기록에 대한 모든 이의 제기는 교육 서비스 부서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학교 기록에 이의를 제기하는 학부모는 기록이 1) 부정확 함, 2) 근거없는 개인 결론 또는 추론, 3) 관찰자의 능력 영역 밖에서의 결론 또는 추론, 4) 관찰된 시간과 장소가 명시된 지명된 사람의 개인적 관찰에 근거하지 않음, 5) 오해의 소지 또는 6) 학생의 사생활 또는 기타 권리 위반을 보여주어야 한다. 학부모는 서면으로 교육구가 미국 가족 교육권 및 사생활 법(FERPA)의 비준수에 대해 미 교육부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Family Policy Compliance Office, U.S. Department of Education, 400 Maryland Ave., SW, Washington, D.C. 20202-4605.

학교 기록과 관련된 교육구 방침 및 절차는 각 학교의 교장으로부터 가용하며 요청 시 검토할 수 있다. 학생이 새로운 교육구로 이전 시 새로운 교육구의 요청에 따라 기록이 전달될 것이다. 학부모 또는 유자격 학생은 요청 시 복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장 당 25 센트의 요금으로 기록의 사본을 받을 수 있다. 학생의 교육 기록 접근에 대한 학부모의 요청은 기록 담당자에게 서면 양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학교는 기록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도록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로 5 일을 갖게 된다.

**교육법 § 49073 – 디렉토리 정보 공개:** 연방법 인, 가족 교육권 및 사생활 법 (FERPA)은 글렌데일 통합교육구가 귀 자녀의 교육 기관들로부터 개인 식별 정보의 공개에 앞서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는 귀하의 서면 동의를 얻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귀하가 교육구 절차에 따라 교육구에 반대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서명 동의없이 적절히 고안된 “디렉토리 정보”에 공개할 수 있다. 이 디렉토리 정보의 주된 목적은 교육구가 특정 학교 및/또는 교육구 발행물에 귀 자녀의 교육 기록에 있는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을 교육구에 허용하는 것이다.

포함 예제:

- \* 제작에서 자녀의 역할을 보여주는 연극 광고지
- \* 앨범
- \* 우등생 명단 또는 기타 시상 목록
- \* 졸업 프로그램들
- \* 스포츠 활동지

공개될 경우, 일반적으로 유해하거나 개인 정보(사생활)의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 정보인 디렉토리 정보는 또한 학부모/후견인의 사전 서명 동의없이도 외부 단체들에 공개될 수 있다.

외부 단체로는 졸업 방지 제작사 또는 앨범 제작 출판사들을 포함하나 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추가로, 2 가지의 연방법은 계정된 1965년 초등 및 중등 교육법(ESEA) 하에 지원을 받는 교육구가 학부모/후견인이 자신들의 사전 서면 허가없이 자녀의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음을 교육구에 알리지 않은 한 요청 시, 신병 모집관에게 학생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제공할 것을 요구 한다.

귀하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자녀의 교육 기록으로부터 디렉토리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_\_\_\_\_(insert date)\_\_\_\_\_까지 서면으로 교육구에 통고해야 한다. 교육구는 디렉토리 정보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지정하였다:

- ✓ 이름
- ✓ 주소
- ✓ 전화번호
- ✓ 이메일 주소
- ✓ 생년월일
- ✓ 학업 전공 분야
- ✓ 공식 인정된 활동 및 스포츠 참여
- ✓ 스포츠 팀원의 체중 및 신장
- ✓ 출석일
- ✓ 수여받은 학위 및 상
- ✓ 가장 최근에 출석한 학교

교육구는 또한 전자 시스템에 소통을 위해 사용된 귀 자녀의 학생 신분 번호, 사용자 신분 증명 또는 기타 고유 개인적 식별을 공개할 수 있으며, 제공된 이것은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 만이 알고있는 개인 신원 확인 번호(PIN), 비밀번호 또는 기타 요소없이 교육 기록에 접속을 위해 사용될 수 없다. 귀 자녀의 사회보장 번호는 이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

디렉토리 정보는 자녀의 시민권 여부, 이민자 신분, 출생지 또는 출신국을 나타내는 기타 정보들을 포함하지 않는다.

교육구는 귀하의 동의 또는 법정 명령없이 이와같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군대에 정보 제공 불허:** 11, 12학년의 디렉토리 정보는 또한 군대, 정부 구성원 신규 채용관 및 징병 서비스 시스템에 제공될 수 있다. 본 문단 및 앞서 열거된 기관들에 신상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원치 않는 학부모는 삽입지에 포함된 양식 9를 작성하여 2020년 10월 2일 이전에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법 § 49407 – 치료 책임:** 아동이 다치거나 아플 때 그리고 그것이 학교 측의 소견으로 어느 정도의 치료가 요구된다고 생각하나 학부모 또는 후견인이 연락이 안되는 경우, 학부모 또는 후견인이 사전에 응급 조치 외의 어떤 의로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이상 학교는 비상 의료 조치(준의로 서비스)를 취하고 관련 정보를 알린다. 학교는 그러한 응급 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교육법 § 49500 – 무료 및 할인 급식:** 매 수업일 동안 영양적으로 풍부한 무료 또는 할인가 급식 제공을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의 부모에게 알린다. 모든 학교 사무실에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으며 작성된 신청서는 사무실에 제출하거나 직접 영양 서비스 부서로 우송해야 한다.

**교육법 § 51101 – 학부모 및 후견인의 권리:** 학부모와 후견인은 자녀의 교육에 참여할 권리와 함께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학교에 의해 계속 통지 받는다

**교육법 § 51512 – 전자 청취 및 녹음 기기:** 이러한 기기의 사용은 수업 과정을 방해하고 학교 훈육을 저해하므로 학생을 포함하여 그 누구도 교장 또는 교사로부터 사전 승인없이 학급에서의 기기 사용은 금지된다. 학생이 아닌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그는 경범죄를 범하는 것이며 학생인 경우 적절한 훈육 조치를 받게 된다.

**교육법 § 51513 – 개인 신념을 질의하는 자료:** 성별, 가족생활, 윤리 및 종교에 관한 학생 또는 그의 부모의 또는 후견인의 개인적 신념이나 종교적 실행에 대한 질문이 들어있는 테스트, 질문서, 설문조사 그러한 것을 실시한다는 통고를 그들에게 하고 그들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유치원 또는 1 학년부터 12 학년까지 그 어느 학생에게도 실시되지 않는다.

**GC § 54950-54963 – 브라운 법안: 일반 공개 공공 회의에 요구되는 통고 및 회의 안건: 정규 회의:** 단어 20 개 또는 그 이하의 회의 안건을 회의 72 시간 이내에 게시한다. **특별 회의:** 고려되거나 논의될 사항에 대한 간단한 일반적인 설명을 포함하여 입법 기관의 위원 및 언론 매체에 24 시간 전에 통고를 제공해야 한다. **긴급 회의:** 심각한 비상 상황을 제외한 작업 중단 또는 방해 활동의 경우, 1 시간 전에 통고한다. **비공개 회의 안건:** 비공개 회의에서 고려해야 할 모든 항목은 **회의에 대한 통지 또는 회의 안건에 설명해야 한다.**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의 주제를 구두로 발표해야 한다. 비공개 회의에서 최종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비공개 회의 종료 시, 그 조치를 보고해야 한다. **회의 안건 예외:** 응급 상황 또는 회의 안건 게시 후 위원회가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 절차 허가로 위원회는 회의 안건없이 진행할 수 있다.

**교육법 § 56301 – 특수 교육; 아동 찾기 시스템:** 각 교육구는 예외적인 필요를 가진 학생을 식별하도록 요구한다. Foothill SELPA 의 지침 하에 있는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장애 학생을 식별하고 거주지를 파악하며, 평가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법규와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아동 찾기 및 대중 인식 활동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조정, 문서화 및 보고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 학부모 및 가족 여러분의 주의를 요망합니다!



### 자녀가 학교에 있는 동안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우선 귀하는 식수, 구급약 및 기타 비축물들을 갖추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가족의 비상 시 물품들을 점검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가정의 비상사태 대비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818-243-3141로 거주 지역의 미 적십자사 지부에 연락하십시오.

- **귀 자녀의 학교는 계획안을 갖고 있다.** - 모든 교직원은 학교의 구체적인 비상 계획안을 사용하여 훈련되고 대피 연습을 마쳤으며, 학생들은 자신의 교사의 지시를 따를 것이 중요하다.
- **학교와 귀하의 비상 연락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한다.** - 귀하의 비상 연락 정보(집 주소, 집/직장/휴대 전화번호, 귀 자녀 픽업이 허가된 사람들의 이름)는 변경이 있을 때마다 최신화하여야 한다.
- **지역 뉴스를 경청한다.** - 학교 비상사태에 대한 정보는 지역 언론 매체에 의해 방송될 것이다. 교육구의 웹 사이트의 첫 페이지는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비상사태의 경우, 대중에게 비상 사태 “경계 경보”를 게시하는데 사용된다.
- **자동 전화 알림에 주의를 기울인다.** - 교육구 및 학교들은 전체 전화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비상사태 및 일상적인 메시지를 보낼 것이며, 모든 학부모 또는 후견인은 자녀의 학교에 제공한 전화번호로 비상사태 전화를 받을 것이다.
- **자녀의 학교에 가거나 전화하지 않는다.** - 실제 비상 사태 동안, 교직원은 비상 사태에 대응하며 학생들의 필요를 다룬다. 비상 사태 시에 학교에 전화를 하는 것은 비상사태 시 통신을 위해 사용해야 할 전화 통신을 방해할 것이다. 학교 또는 교육구 직원들로부터 지시받지 않는 한 자녀의 학교로 가지 않는다. 학교 주변의 교통은 교정 출입함에 있어 비상 사태 대응 능력을 방해할 수도 있다.
- **자녀와의 재회** - 상황이 허락하면, 학생들은 학교의 비상 계획안에 설명된 “재회 절차”에 따라서 방출될 것이다. 이 절차는 각 학생이 질서 정연하게 지정된 부모, 친척 또는 부모에 의해 권한이 부여된 다른 사람에게 방출될 것을 보장한다. 학생을 픽업하는 개개인은 사진이 부착된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되며 학생을 데려감에 안전과 책임 보장에 대해 서명한다.
- **대체 픽업 장소** - 일부 비상 사태 시, 학교의 비상 계획안에 설명된 대로 자신들의 학교로부터 “교정 외부 대피 장소”로 학생과 교직원을 이동시켜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될 수도 있다. 예상할 수 없는 비상 사태의 특성 상, 대피 장소는 사태의 발생 시에 한하여 발표될 것이며, 발생 시 학부모들은 자동 전화 연락, 교육구 웹사이트 및 지역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통고될 것이다.
- **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들** - 비상 사태 후에 학부모, 후견인 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자신들의 아동을 데려갈 수 없는 경우, 아동을 학부모, 후견인, 허가된 대리인이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교직원의 감독 하에 남아 있을 것이다.

귀 자녀의 학교가 수업일 동안 연락될 수 있는 학부모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최근의 비상 연락 정보를 갖추고 있도록 하십시오. 비상 시 학부모 연락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 학교의 재회 대비안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귀 자녀의 학교 사무실에 연락하십시오.